

본 자료는 出版 前 File이므로 인쇄형태
의 보고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引用時에는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研究

1998. 3

李 愚 澤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會計問題는 매우 技術的이고 專門的이어서 일반적으로 難解한 영역의 과제로 알고 있다. 더욱이 회계가 課稅標準을 산정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稅務會計로 이어지면 세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難解性은 더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세무회계는 몇몇 전문가나 소수 학자들간의 제한된 논의로 그쳐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액의 실체를 결정하는 세무회계야말로 법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회계영역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인들은 기업회계보다 세무회계에 더욱 관심을 가져 왔고 조세당국 역시 법인세의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세법에서 기업회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서 일반적으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론적 실무적으로 집적되어 있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하여 學問的, 實務的, 租稅政策의 次元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많이 제시되고 있어 조세정책당국에서 조세입법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企業會計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개발 시대에 제반 租稅政策이 稅法에 投影되면서 각종의 租稅惠澤이 세법에 삽입되었고 기업은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세무회계 위주로 과세소득의 산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까지 이어져 지금까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에서 損益의 歸屬年度와 資產·負債의 評價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優先適用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論題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1996년 3월 기업회계기준이 대폭 개정되면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세법의 규정들이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고 계속적인 기업회계의 변경이 세법에 영향을 주면서 세법에서 기업회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와 방법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논리적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WTO 체제 출범 및 OECD의 가입 등으로 앞으로 회계의 국제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세소득의 산정에 기업회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土壤에 적합한 세무회계를 구축하기 위한 理論과 實務를 整合한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써 학계의 이론적 개념적 정비, 실무계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적용관계, 조세정책 당국의 조세입법과 조세행정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각국의

세법규정과 기업회계와의 관계를 방대한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그것들과 비교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세무회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한 실제 稅務調整 資料와 會計事例들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현실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외의 이론적 실무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대한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학교 이우택 교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본 보고서의 분석 내용이나 결론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힌다.

1998년 2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金 仲 秀

目 次

I. 序論	1
1. 研究의 意義	1
2. 研究方法	2
가. 比較研究	2
나. 實體的 研究	3
다. 批判的 研究	4
3. 用語 및 概念의 定義	6
가. 企業會計와 企業會計基準	6
나. 課稅所得의 算定規定과 稅務會計	7
다.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一致性 또는 基準性	8
라. 稅務會計와 稅效果會計	8
II. 主要 國家 企業會計의 發展과 現況	9
1. 美國	9
가. 美國 企業會計의 發展과 現況	9
나. 美國 企業會計의 特徵	16
2. 英國	19
가. 英國 企業會計의 發展과 現況	19
나. 英國 企業會計의 特徵	35
3. 獨逸	39
가. 獨逸 企業會計의 發展과 現況	39
나. 獨逸 企業會計의 特徵	41
4. 日本	42
가. 日本 企業會計의 發展과 現況	42
나. 日本 企業會計의 特徵	46
III. 各國의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와의 關係	49
1. 美國	49
가.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와의 關係	49
나. 課稅標準 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論議	53
2. 英國	60

가.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와의 關係	60
나. 課稅標準 算定과 企業會計 適用에 관한 論議	65
3. 獨逸	66
가.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와의 關係	66
나.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 適用에 관한 論議	68
4. 日本	70
가.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와의 關係	70
나.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 適用에 관한 論議	72
IV. 課稅所得 算定에 관한 우리나라 稅法規定과 企業會計와의 關係 ...	95
1. 우리나라 企業會計의 生成 發展과 現況	95
가. 企業會計의 生成과 發展	95
나. 우리나라 企業會計의 特性和 問題點	101
2. 課稅所得 算定에 관한 稅法規定	113
가. 法人稅 課稅體系의 發展과 現況	113
나. 課稅所得 算定에 관한 우리나라 稅法規定의 特徵	117
V. 課稅所得의 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問題點 및 改善方案	121
1. 課稅所得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論議와 問題點	121
가. 課稅所得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論議	121
나. 課稅所得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規定의 問題點	125
2. 課稅所得의 算定과 企業會計 適用의 改善 方案	147
가. 一般的 基本的인 改善 事項	147
나. 具體的 改正 方案	150
VI. 要約 및 結論	155

表 目 次

<표 5-1>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분석	141
<표 5-2> 세무조정항목 및 금액 비교	142
<표 5-3> 세무조정항목수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	142
<표 5-4> 세무조정금액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	142
<표 5-5> 표본기업의 세무조정을	143
<표 5-6> 일본상장기업의 세무조정을 분포상황	144
<표 5-7> 법인별 세무조사 현황	146

I. 序論

1. 研究의 意義

課稅所得의 산정에 있어서 企業會計를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오래되고 뿌리깊은 論題가 되어 왔다. 이 문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一致論爭으로 외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어 왔고 기업회계가 오랜 기간 잘 발전하여 왔고 세법체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정비되어 있는 선진 외국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다양한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관련되는 논리도 상당히 精練되어 있어 양 회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 회계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 구조와 내용에 관한 심층적 학문적 연구가 크게 부족하여 문제의 핵심도 제대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12월 22일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損益의 歸屬年度와 資產·負債의 評價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간 세무회계 우위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은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문제는 세삼 회계계가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세법개정 당시 조세 당국에서는 단순히 손익의 귀속연도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¹⁾ 손익의 귀속연도뿐만 아니라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도 기업회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는 회계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까지 세무회계우선 思考를 중단시키고 기업회계 우선으로 급변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²⁾ 더욱이 1996년 3월 기업회계기준이 대폭 개정되면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세법의 규정들이 더욱 혼란스럽게 되면서 세법에서 기업회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와 방법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논리적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WTO 체제 출범 및 OECD의 가입 등으로 앞으로 회계의 국제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세소득의 산정에 기업회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세소득의 산정과 기업회계와의 관계는 흔히 일반적으로 세무회계로 통칭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세무회계는 실정법인 세법상의 회계규정을 중심으로 논하기 때문에 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와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세무회계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세법의 규정이라는 변수와 기업회계라는 두 개의 변수를 논의하게 된다.

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는 국가마다 그 생성 발전과정이 다르고 현재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세무회계라는 용어만을 가지고 외국의 세무회계와 우리나라의 세무회계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1) 財政經濟院, 『'94간추린 改正稅法』, 1995, pp. 222-246.

2)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회계저널』, 한국회계학회, 제6권, 제2호 1997b. 12, p. 200.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세무회계는 세무회계라는 용어나 개념을 단순 비교하고 그 주요 구성 인자인 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의 상황에 대하여는 심층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무회계문제를 논의하려면 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라는 변수를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때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기업회계를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의 문제점과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의존할 수 있는 한계와 그 정도를 제시하려고 한다. 동시에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기본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研究方法

가. 比較研究

본 연구는 비교연구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세무회계문제를 논의하려면 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의 발전과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무회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기업회계원칙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공표문 이외는 회계기준의 설정 주체와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에 있어서 기업회계에서의 공통점은 매우 적다.³⁾ 일반적으로 회계제도의 발전을 규명하는 데는 회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회계전문직, 그리고 재무보고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정국가의 회계제도는 그의 사회적 구조, 정치적 상황, 그리고 경제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회계제도의 환경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환경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교연구는 부득이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연구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이며 자연과학에서의 실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학, 법률학, 경영학 등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비교론이 전개되고 있다. 회계학 특히 우리나라의 회계학은 주로 외국의 이론과 기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 외국의 회계이론이나 실무를 우리나라의 것들과 비교·연구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유사점과 상위점을 기술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⁴⁾ 비교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규명함으로써 그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나라의 회계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단순히 어떤 사건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 아닌 발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자극하게 한다. 또한 비교는 국가간 회계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간 회계제도를 유형화할 수 있도록 한다.⁵⁾

3) Stephen A. Zeff, *Forging Accounting Principles in Five Countries: A History and an Analysis of Trends*, Stipes Publishing Company, 1971, pp. 313-321.

4) 大雄令純, 『比較會計論』, 白桃書房, 1985, 권태은 역, 법문사, 1990, p. 35.

5) Young Hang Cha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Accounting System of Five*

이와 같은 비교연구에서는 그들간에 유사점과 상위점이 생기는 이유를 환경조건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환경조건의 변화로부터 회계의 발전과 정체를 예측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회계가 당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회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제도는 영미식과 대륙식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본래 역사적 지리적으로 그리고 인문사회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가부장적 농경민족으로서 유목민적인 영미보다는 독일·프랑스 등 대륙계통에 잘 어울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제도와 인습은 대륙식 실정법 체계에 익숙하여져 있고 회계제도 역시 대륙계의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한 현대 사회제도의 형성이 시작된 조선조 말에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일본의 문물제도가 유입되었고 이러한 일본의 문물은 대륙식의 것들이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제도는 자연히 대륙식으로 채색되어 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해방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6·25사변을 계기로 미국의 문물이 무방비상태로 휩쓸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제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환경과 국민의 관행과 의식에 대한 검증할 겨를이 없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급변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회계제도는 미국의 회계이론과 기법을 배경으로 도입되어 하루아침에 대륙식의 사고에서 영미식의 사고로 대체되는 급변을 맞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특히 회계학 분야는 짧은 기간에 급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실무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미식과 대륙식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회계가 대륙식과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국가와 영미 국가들의 회계환경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불가피한 연구방법이 될 것이다.

나. 實體的 研究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실체(reality)를 파악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체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하여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학문 분야로서 時間과 空間을 초월한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은 모든 사회현상을 回顧와 展望을 통하여 與件과 效果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사회현실은 항상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역사적인 과정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⁶⁾

사회과학이 사회현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으로 전제할 때 회계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역사적 규명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 사실이란 특정의 장소와 공간에 있어서 다르다. 다시 말하면 회계현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리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회

Countri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UMI dissertation Information Service, 1989, pp. 24-25.

6) 李恒寧, 『法哲學概論』, 박영사, 1994, pp. 44-45.

계문제 역시 역사적 검토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된다. 특히 회계는 일반적인 관습과 관행이 形象化된 것이므로 어떤 연구분야보다 역사적 추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회계문제의 역사적 추적은 역사적 史實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계에 대한 實體(reality)의 파악이 가장 중요한 접근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회계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회계제도로 존재한다. 회계제도는 관습이나 관행과 같은 회계사실을 胚胎하고 있는 現象的 構圖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문제의 비교연구는 회계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회계사실을 剝製한 채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회계제도만을 비교하여서는 본질을 벗어나는 피상적 논의로 그칠 수 있다. 이러한 구도 아래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회계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 특히 각국의 회계사실을 최대한 추출하여 현재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계제도의 형성과 그 발전과정과 연계하여 논의하려고 하였다. 오늘의 회계문제는 과거의 역사적인 회계사실을 배경으로 겉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므로 회계사실의 역사적 규명을 위하여 각국의 회계발전과 그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게 된다.

다. 批判的 研究

본 연구는 전체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세법규정과 기업회계 적용의 문제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한 특정의 결과(specific consequences)와 그의 상세한 효과(precise effects)의 분석과 함께 회계를 대하고 追問(interrogate)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계와 관련한 認識論的 입장에서 분석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회계는 회계가 일반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보다 더욱 다르고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회계적인 사실(facts)은 신의 계시와 같은 것이 아니어서 같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같은 사상으로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많은 소리내는 사람이 있고 “사실들”은 복합적인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⁷⁾ 따라서 회계문제를 특정의 부문만 떼어 내서 논의하는 것은 그 본질을 벗어나 논의가 무용하게 될 수 있다.

비판적 사회연구는 현존하는 實務와 慣行(practices), 그들의 歷史的 特殊性(historical specificity), 그리고 나타내 지고 있는 構造的 現象(structural manifestations)을 검색해 내기 위하여 외형적 실체와 현행 지배적 개념들의 裏面을 탐구한다. 이러한 접근은 동적 사회과정과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이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외관의 이면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현상을 역사적 배경속에서 파악하며 특히 사회구조를 정치적 경제적 역학관계로 본다. 특히 사회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관습(praxis)을 중요시하며 관습의 형성과 변동에 의하여 사회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⁸⁾

7) Wai-Fong Chua, and Pieter Degeling, "Interrogating an Accounting-Based Intervention on Three Axes: Instrumental, Moral and Aesthetic",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18, No. 4. pp. 291-1993.

8) Lee Harvey, *Critical Social Research*, London: Unwin Hyman Ltd., 1990, pp. 3-8; 李成圭, 「비판적 회계학 연구에 대한 고찰」, 『會計學論叢』 第5號, 1996, pp. 181-236.

회계기준의 발전은 특정한 과학적 이론보다는 이론, 실무, 그리고 각종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영향에서 비롯되는 요인들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발전하므로 각국의 회계기준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환경상의 차이 때문이다.⁹⁾ 회계에 있어서 회계실무 또는 회계관습은 회계문제를 설명하는 기본요소로서 역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관습과 역사성은 결국 그 사회 전체(totality)와 연결되어야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외관의 현상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구조내에서 운동하고 있는 실질에 논의의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비판적 사회연구방법의 패러다임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¹⁰⁾

이러한 연구방법으로서의 비판적 연구방법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비판적 연구는 학제간 연구 관계에서 사회의 재생과 변형을 가능케 하고 문화의 의미, 개인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문제를 형성하는 방법엔 차이가 있지만 비판적 이론가들은 그들이 당면한 사회, 정치적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이데올로기 비판과 비권위적 비판료적인 정치역학(politics)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¹¹⁾ 비판은 회계의 근원을 가리키고 회계를 산출하는 지배적 사회체계 순환을 끊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엔 지배적인 사회체계를 재생하고 구체화하는 회계를 제시한다.¹²⁾ 법과 회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회계와 법간에는 복잡한 지적 제도적인 相互養生(cross-fertilization)관계에 있기 때문이다.¹³⁾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연구방법을 택하고 지금까지 외국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문헌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각국의 기업회계의 발전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문헌적인 연구와 함께 현재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행(practices)과 그 實體(reality)를 파악키 위하여 실제적인 기업의 세무조정계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회계실질에 근거한 會計基準의 制定과 이를 稅法에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9) Kenneth S. Most, *International Conflict of Accounting Standards*, The Canadian Certified General Accountants' Research Foundation, August 1984, p. 7.

10) 일본의 회계학은 이론과 실무를 연계시키고 회계를 사회제도의 하나로 파악하는 비판적 회계학이 독자적으로 확립되어 왔으나 영미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비판적 회계제도론, 정책론이 시작되어 일본 회계학이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金石雄, 「日本式 批判會計學에 관한 研究」, 『東義大學校 産經論集』 第13輯, pp. 201-248).

11) D. Hel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80, p. 16.

12) Jesse F. Dillard, "Accounting as a Critical Social Science,"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Vol. 4. No. 1. 1991, pp. 8-28.

13) Michael Power and Richard Laughlin, "Habermas, Law and Accounting",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21, No. 5, 1996, pp. 441-465.

3. 用語 및 概念의 定義

會計나 稅務와 같은 社會科學은 公正하고 精교하게 다듬어진 개념과 여기에서 도출되는 기술적인 언어가 많이 발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나 개념들을 엄격히 구분 사용하지 않으면 당해 사물을 만족할 만하게 관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明皙한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¹⁴⁾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개념적 구조 틀이나 용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논제의 본질에 대한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무익한 논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 논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념과 용어가 혼동됨으로써 자칫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한다.

가. 企業會計와 企業會計基準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기업회계기준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됨으로써 논의의 내용과 본질을 애매하게 하여 정확한 의미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

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기업회계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유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과세소득이 給付能力(擔稅力)의 척도로서 적정하게 산출되는 전제조건으로서 企業利益은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되는 會計處理의 基準」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업이익」이라고 할 때 企業會計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업회계란 각 기업의 개별적·구체적 경영사정에 대응하여 타당하다고 선택된 회계방법에 따라 이익계산을 위한 회계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즉 「본래 기업이익은 당해 기업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선택된 회계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그의 선택적용에 관하여는 계속성을 전제로 하는 한 탄력성이 인정되는 것이다.»¹⁵⁾라고 할 수 있다.

당해 기업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것의 계속적인 적용이란 「기업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다시 「적정한 회계처리」란 적정한 경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회계를 의미한다. 이 경우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후에 과세관청의 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권위있는 지지를 가진 기준」으로 인정되어 이것이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한 會計處理의 基準」에 상당한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¹⁶⁾

상기와 같이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公正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처리의 기준」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公正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처리의 기준」이란 특정의 회계

14) Paul H. Ligby, *Conceptual Foundations of Business Research*, John Wiley & Sons, New York, 1965, p. 18.

15) 日本企業會計審議會, 『稅法と企業會計との 調整に關する意見書』, 1966.

16) 武田隆二, 『法人稅法 精說』, 森山書店, 1996, pp. 38-39.

처리기준을 한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概念的이고 抽象的 性質의 것으로 「객관적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기호나 조문에 의하여 나타낸 것이 「企業會計基準」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처리의 기준」에 관하여 특정의 회계처리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한 주체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는 권위있는 지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주체에 의하여 인정된 회계기준이 곧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企業會計」,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處理의 基準」, 「企業會計基準」 등은 엄격한 의미에서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개념인데 이것들이 혼용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한 회계문제를 논의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체계적인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 課稅所得의 算定規定과 稅務會計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세무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선 세무회계라는 용어는 “회계적 측정방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세표준을 채용하는 세목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의 산정·과락에 관한 재무적 정보의 측정 및 전달을 위한 회계이다.”¹⁷⁾ 이러한 정의를 통하여 설명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같은 재산과세에 있어서는 회계적 이론과 기법의 원용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의 과세표준의 산정방법문제를 세무회계라고 하여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소득과세 특히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고도의 회계이론과 기법이 필요하다. 법인기업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적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만큼 이를 파악하고 측정하는 방법도 복잡다기 하고 따라서 회계적 이론과 기법을 토하여서만이 가능하다. 이처럼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회계영역과 관련이 적은 세목과 회계영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세목이 있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법인소득과세에 관련한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기업회계와의 관계를 다루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세무회계로 표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무회계라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적 의미가 지나치게 강하여 세무회계가 갖는 본질적인 기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회계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회계로서 과세의 공평과 효율성, 그리고 제반 조세정책을 반영하게 되므로 세무회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요인을 함유하면서 전개된다. 그런데 세무회계라고 하는 경우 단순히 기업회계와 비교하는 개념 또는 계산기술적인 측면만 강조되면 세무회계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분하여 세법의 계산규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7) 富岡幸雄, 『稅務會計學』, 森山書店, 1978, p. 13.

다.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一致性 또는 基準性

본 연구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 그 용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는 一致化 與否 問題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一致性의 問題로 대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에 대한 개념은 uniformity¹⁸⁾, conformity¹⁹⁾, congruence²⁰⁾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Massgeblichkeitsprinzip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의 세무회계에 대한 基準性原則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一致論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일치론 보다는 基準性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치성이라는 용어는 수평적 관점에서 본 양회계의 관계로서 관행과 관례를 존중하는 미국 사회를 반영하는 용어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정법 국가로서 수직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기준성원칙을 사용하여 主·從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일치성의 용어보다는 기준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치성과 기준성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양회계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따라야 하는 경우와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를 따라야 하는 경우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양회계의 일치를 논의하지 않고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에 대한 세무회계의 기준성,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를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회계에 대한 기업회계의 역기준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면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회계의 단순한 일치문제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일치성, 기업회계에 대한 세무회계의 기준성, 세무회계에 대한 기업회계의 역기준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라. 稅務會計와 稅效果會計

세무회계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회계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세무회계는 회계분야의 한 부분으로서 흔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로 하여 접근된다. 세효과회계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회계를 말한다. 즉 기업회계와 세법규정과의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

18) Harold. E. Arnett, "Taxable Income vs Financial Accounting; How Much Uniformity Can We Stand?",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9, pp. 483-494.

19) William L. Raby and Robert F. Richter, "conformity of tax and financial account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75, pp. 42-48.

20) Axel Haller, "The Relationship of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in Germany: A Major Reason for Accounting Disharmony in Europ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1992, 27, pp. 310-323.

부담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재무제표상 표시하기 위하여 개발된 회계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와 세법규정과와의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회계문제인데 반하여 세효과회계란 기업회계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데서 발생한 차이를 조정하는 회계방법이므로 양자는 순서상 선후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만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완전히 일치시킨다면 세효과회계방법은 필요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효과회계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의 존재를 전제로 제시된 회계처리방법인 것이다.

II. 主要 國家 企業會計의 發展과 現況

세법규정과 기업회계의 적용관계를 追問하려면 우선적으로 기업회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에서 기업회계의 적용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의 계산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세법이 기업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기업회계의 현황을 검토하는 것은 본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1. 美國

가. 美國 企業會計의 發展과 現況

1) 1930년 이전의 미국회계

기업회계의 발전은 주식회사 제도의 발전과 연계되어 있다. 미국에서 최초의 자본시장의 형성은 1792년 뉴욕의 wall가에 유가증권매매업자들이 정기적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유가증권을 매매하기 위해 회합할 것을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²¹⁾ 이로부터 근대 자본 시장의 종자가 뿌려지고, 장래의 재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회계사의 용역이 필요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회계직으로서 공인회계사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은 1896년이다. 따라서 미국의 회계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의 회계는 사실상 영국의 회계를 도입하여 발전시켰기 때문에 미국 회계의 발전은 영국의 會計士와 영국의 會計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영국의 미국 사회에의 영향은 여러 면 즉 言語, 測定單位, 慣習 등에서 인지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직업적 회계업무의 본격적인 개시는 19세기말 영국의 會計士들이 종종 미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鐵道會社, 釀造會社 및 會計士가 고객이 投資하고 있는 기

21) Previts G. J. and Merino B. D. *A History of Accounting in America*, John Wiley & Sons, Inc., 1979, pp. 22-24.

財産의 각 計算書를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미국에는 會計文獻이 거의 없고 監査技術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會計專門職은 영국에서 발전한 회계의 기초 위에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²⁾

1886년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최초의 職業會計士團體로 美國公共會計士會(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ccountants: AAPA)가 설립되었다. 同會는 英國會計士協會와 비슷한 규약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래서 1909년 AAPA는 회계용어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와 감사의 주제에 대하여 직접 표시한 직업회계단체의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²³⁾ 비록 직업회계사로서 강력한 전국적인 권위는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PA는 1909년 회계용어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Accounting Terminology)를 구성하고 회계나 감사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게 된 것이다²⁴⁾.

1916년 AAPA는 美合衆國會計士會(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IA)로 되었다. 1916년에는 會計學者들이 美國大學 會計學教授協會(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Instructors in Accounting)를 설립하였고, 이는 후에 美國會計學會(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AA)로 개칭되었으며, 1926년에는 The Accounting Review誌를 창간하였다.

2) 會計原則의 形成 第1段階 (1930-1959)--會計研究公報(ARB) 時代--

가) 會計原則 形成背景

회계원칙은 회계가 준거해야 하는 지침으로서, 또 공인회계사 감사의 판단기준으로서, 그리고 회계와 관련된 제법령의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논거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유하고 있다. 동시에 회계원칙은 회계 고유의 논리체계로서 사회적 제도이다.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환경요인을 가지며 형성되고 발전한다.

미국의 회계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으로부터 연원되고 있다. 이러한 회계원칙의 형성은 1930년대로부터 미국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와 미국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AA) 2개의 회계단체를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다. 그 발전 과정은 1950년대까지와 196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를 회계원칙 형성 제1 단계라고 한다면 1960년대 이후를 제2단계라고 부를 수 있다.²⁵⁾

미국에서 회계원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의 주식시장 공황을

22) Michael Chaterfield,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이정호 역, 『회계사상사』, 1985, pp. 216-223.

23) 그러나 회원의 수가 31명으로 출발하여 10년이 되어도 45명에 그쳐 회계전문직으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24) Stephen A. Zeff, *Forging Accounting Principles in Five Countries: A History and An Analysis of Trends*, Stipes Publishing Company, 1972, pp. 112-114.

25) M. Moonitz, *Obtaining Agreement on Standards in the Accounting Profession*, AAA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No. 8, 1974.

계기로 자본증권의 발행 및 매매와 관련하여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증권이 널리 대중에게 소유되어 있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가능한 한 완전히 공개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된 데에 기인된다. 1933년의 증권법(Securities Act)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증권거래에 관한 연방규제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로 이관되었다. 1937년 동 증권거래위원회는 공개법인을 위한 회계실무 지침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회계기준과 실무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계원칙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회계연속공개서(Accounting Series Release:ARS)이다. 한편 1939년에 이르러 미국공인회계사협회는 회계절차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원칙과 실무에 관한 공식적 공개서를 발행하게 된다.²⁶⁾ 당시 증권관리위원회는 자본증권을 대중에게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나 상장된 회사는 독립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첨부한 재무제표를 각각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SEC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GAAP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독립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요청한 것이다.

나) 會計原則의 形成

미국에서 회계원칙의 형성은 미국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AIA, 나중에 AICPA로 변신)가 1930년 증권거래소와의 법인특별위원회(The Special Committee on Corporation with Stock Exchange)를 구성하고 뉴욕주식거래소 상장위원회(The Committee on Stock List of the New York Exchange)와 협력하여 회계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의한데서 시작된다.²⁷⁾ 이는 기본적으로 외부 압력의 결과로서 회계단체들에 의하여 주도된 회계원칙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AIA의 會計原則

미국회계사 협회(AIA)는 회계절차위원회에 의하여 51개의 ARB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제43호로서 제1호부터 제42호까지를 재편집하여 개정한 공보가 포함되어 있다.(Restatement and Revision of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ARB No.43, 1953). 연구내용은 주로 事例別 斷片的인 문제해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AAA의 會計原則

AAA는 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로 하여금 다음의 회계개념 및 기준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의 노력에 의해 1936년부터 1957년간에 4개의 회계원칙서를 각각 완결한 형태로 공표하고 또 『1948년 회계원칙』

26) Leonard M. Savoie, "The Objectives of Corporate Financial Accounting- The Firm's View, in James Don Edwards and Homer A. Black, et, *The Modern Accountant's Handbook*, Don Jones-Irwin, 1976, pp. 3-20.

27) Patrick R. Delaney, James R. Adler, Barry J. Epstein, and Michael F. Foran, *GAAP-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John Willey & Sons, 1985, pp. 2-3.

에 대해서 8개의 보충보고서를 공표하였고 또 저명한 단행연구서(monograph)·시리즈를 간행하여 왔다.

AAA가 공표한 4의 회계원칙서는 다음과 같다.

A Tentative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Affecting Corporate Reports, 1936.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41.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48 Revision.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57 Revision.

또 『1948년 회계원칙』에 관한 8개의 보충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No.1 *Reserves and Retained Income*, Dec. 1950.

No.2 *Price Level Changes and Financial Statements*, Aug. 1951.

No.3 *Current Assets and Current Liabilities*, Oct.1951.

No.4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able Income*, Aug. 1952.

No.5 *Accounting Corrections*, Dec. 1953.

No.6 *Inventory Pricing and Changes in Price Levels*, Dec.1953.

No.7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1954.

No.8 *Standards of Disclosure for Published Financial Reports*, 1954.

또 단행연구 시리즈로는,

W. A. Paton and A. 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1940.

A. C. Littleton,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1953 등이 있다.

다) 兩 會計團體의 研究方法 比較

AAA가 주관하는 회계원칙형성의 연구방법은 전반적 방법(over-all approach) 또는 개념적 방법(conceptual approach)을 택하고 있다. 회계 및 보고실무의 개선은 회계실무를 떠받치고 있는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구조틀(framework)을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AAA의 조사연구계획은 서로 관계되는 일관된 포괄적 회계원칙을 형성하고 그의 일반적 승인을 가져오는 시도를 하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절차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의 실무와 자주 충돌하지만 실무를 향상시켜 주는 수준을 설정하게 해준다.

따라서 AAA는 1936년의 회계원칙의 형성과 공표를 출발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상세히 하면서 포괄적인 회계원칙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즉 AAA는 즉각 결론을

구하는 것보다도 재무회계 및 보고에서의 점차적인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AICPA의 회계원칙 형성방법은 단편적 방법(piecemeal approach) 또는 사례적 방법(case-by-case approach)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본래 실용적인 것으로 그 목적은 문제에 봉착한 실무 회계사를 직접적 도우는 것이었다. 그 주요 이유는 전반적인 회계원칙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더라도 문제해결에 성공을 거두기 어렵고 시간만 지연시키게 된다는 생각으로 포괄적인 연구계획에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AICPA는 필요성이 있는 문제를 고찰하고 가능하면 어느 인정된 절차에 의하여도 명백히 뛰어나고 있는 다른 선택적 처리를 권고하는 것을 택하려고 하였다.²⁸⁾ 이러한 조사 연구방법에 기초하고 ARB는 일정 질서 하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또 이전의 ARB와 일관된 다음의 ARB를 채택한다는 입장도 아니었다. 1953년에 ARB가 제43호로서 개정되어 재편성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가지의 문제에 관하여 각각 독립의견을 표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AICPA와 AAA의 회계원칙을 형성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고 있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놀랄 정도로 닮아 양자는 서로 보충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제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ICPA와 AAA는, 회계원칙을 발견하여 형성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권고 그것 자체에 관해서는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²⁹⁾

3) 會計原則 形成 第2段階 (1960-1972)--會計原則審議會(APB)時代--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회계원칙의 연구 및 형성 단계를 제1단계라고 한다면 1960년대 이후의 단계를 제2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2단계의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會計原則審議會(APB)의 發足과 主要 研究

미국공인회계사 협회는 1957년 AIA에서 AICPA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년 10월의 연차대회에서 회계원칙을 새로이 연구할 것을 제기하였다. 곧 AICPA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종래의 회계절차위원회가 해소되고 1959년 4월 새롭게 회계원칙심의회(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가 발족되었고 동년 9월, 회계조사연구부(Accounting Research Division: ARD)가 활동을 개시하였다.

AICPA는 회계원칙의 형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부족하였던 연역법(deduction)을 채용하였으며 1961년 들어서서 공간된 회계조사연구서(Accounting Research Study: ARS)는 이러한 방침 하에 작성된 것이다. 또한 조사연구성과가 유용한 것으로 되기 위하여

28) History of the Accounting Procedure Committee—from the Final Report, *Journal of Accountancy*, Nov. 1959, P.70.

29) R. K. Storey, "Accounting Principles: AAA and AICPA", *Journal of Accountancy*, June 1964, pp. 47-55.

공식견해의 발표까지 조사연구 및 APB의 입장에 대해서 널리 공표하고 도달한 결론만 아니라 그 기초에 있는 분석과 추론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조사연구계획은 회계사의 실무경험과, 전문가의 조사연구 능력, 그리고 대학 교수의 논리적 방법이나 개념적 내용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기왕의 조직적인 노력과는 별개의 연구체제를 운영하였다. 이는 현재에 있어서도 회계원칙의 형성을 위한 최량의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⁰⁾

AICPA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조사연구계획을 추진하고 APB는 그 성과 위에 체계적인 공준과 회계처리기준을 형성할 것을 지향하고 1961년부터 1972년까지 활동하였다. 이것이 AICPA의 회계원칙형성 제2단계이고 그 성과로서 15개의 회계조사연구서(Accounting Research Study: ARS) 외에 31개의 의견서(APB Opinion)와 4개의 공표문(Statement)을 출간하였다.

나) AAA의 會計原則論

AICPA가 제2단계에서 회계공준론의 연구를 기초로 한 통일적인 회계원칙의 형성을 위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동안 AAA는 제1단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제2단계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회계이론의 검토와 여기에 입각한 회계원칙의 형성을 더욱 더 강화하려고 한다. 즉 AAA는 제1단계에서와 같은 통일적인 GAAP의 성문화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7년 회계원칙』에서 기업실체·계속기업·화폐적 측정 및 실현 등 4개의 기초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회계원칙의 이론적 기반으로 중요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래서 1953년의 회계개념 및 기준위원회(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의 一般部會가 검토해야 하는 제개념으로서 기업실체·대응개념·실현·중요성·계속성·객관성 등 6개의 개념에 대해서 각각 배경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³¹⁾ 이는 『1957년 회계원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연구부회가 검토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1954년 실현개념·실체개념·대응개념에 대해서 연구위원회(Concepts and Standards Research Study Committee)가 마련되고 각각 연구성과가 공표되었다.

또 AAA는, 1964년 들어서 『1957년 회계원칙』에 대해서 5개의 보충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그 중, 자산의 측정기준에 관하여 2개의 보고서를 1964년에 공표하고 있다.³²⁾ 그 제1호는 개념 및 기준위원회의 장기자산 부회의 보고서이고, 고정자산의 현재원가에 의한 측정 필요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2호는 같이 재고자산 측정부회의 보고서로서

30) ibd., pp. 53-54.

31) AAA, Report of the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General, *Accounting Review*, Apr. 1964, pp. 425-431.

32) AAA, Accounting for Land, Buildings, and Equipment, Supplementary Statement No.1, *Accounting Review*, July 1964, pp. 693-699.

AAA, A Discussion of Various Approaches to Inventory Measurement, Supplementary Statement No.2, *Accounting Review*, July 1964, pp. 700-714.

이는 제1호와 같이 재고자산의 측정기준으로서의 교체원가의 개념을 제창하고 있다. 더불어 시가주의 회계가 권고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AAA는 1966년에, 회계를 정보시스템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사고로 『基礎的 會計理論』을 공간 하였다.³³⁾ 이것은 회계원칙 그 자체라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의 배후에 있는 회계이론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연구로서 이 공간을 계기로 회계이론이 정보이론적 회계이론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AAA는 1969년이래 일련의 『회계조사연구서』(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를 발행하였다. 이것은 AICPA의 ARS와 같이 여러가지의 회계문제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행함으로써 회계이론의 연구나, 회계원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외 각종의 위원회가 설치되고 보고서를 공표함에 따라 재무회계만이 아니고 관리회계의 분야에도 더욱 더 회계교육 측면에 관해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시켜 가고 있다. 이 당시 미국회계학회의 주요 연구로서는 「基礎的 會計理論」(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SOBAT)과 「會計理論 및 理論受容」(Statement on Accounting Theory and Theory Acceptance: SOATATA)이 있다.

4) FASB에서의 會計原則의 形成

가) 背景

1970년대에 접어들어 회계원칙 형성활동은 AICPA의 APB로부터 재무회계기준심의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로 그 역할이 이양된다. 그 배경은 다음의 3개를 들 수 있다. 즉 APB와 SEC와의 관계의 변화이다. 본래 SEC는 GAAP의 형성을 AICPA에 위임하고 APB의견서의 입장을 지지하여 왔다. SEC는 상부, APB는 하부구조적인 관계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었다.³⁴⁾ 그런데 APB의견서 제2호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를 둘러싸고 SEC의 지지가 없었고 의견서 제6호부터 벗어나고 있는 「할부판매의 이연세」의 처리와 관련하여 APB의 요청에도 관계치 않고, SEC는 ASR 제102호를 발표하는 등의 대립이 생겼다.³⁵⁾ 이로 인하여 AICPA의 APB의 회계원칙 형성에 대해서 반성과 의문이 제기되었다. 둘째, 반대세력으로 인하여 APB 활동이 곤란하게 되었다. 즉, 1960년대 후반에는, 세배분(Tax Allocation), 콩그로머럴기업의 출현에 동반한 기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지분풀링의 문제 등, 많은 중요한 회계문제가 미해결로 남겨 있었다. 당시 APB는 비전문종사, 자주적 위원회로서 스탯의 보조결여, 불충분한 조사연구설비 등과 함께 회계원칙의 형성활동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³⁶⁾ APB에게는 강력한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

33)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

34) C. T. Hongren, *Accounting Principles : Private or Public Sector ?*, *Journal of Accountancy*, May 1972, P. 39.

35) M. Moonitz, *Obtaining Agreement on Standards in the Accounting Profession*, 1974, p. 51. 小森曠一 역 『アメリカにおける 會計原則發達史』 1979,, 同文館, pp. 81-82.

36) 『上掲書』, p. 127.

제, APB 회계원칙이 강제력이 없어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APB는 AICPA의 내부기관이며 AICPA는 회계사의 私的會員組織이다. 따라서 APB에 의해 형성되는 회계원칙을 회원의 피감사회사에 대해 강제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아 APB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AICPA로부터 조직적으로 독립되고 객관성을 가지는 권위있는 조직이 넓은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여 나가는 것이 요망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71년 3월 AICPA의 M. S. 암스트롱 회장은 새로운 회계원칙의 형성에 관한 연구와 그 형성과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기초하여 F. M. 우드를 위원장으로 하는 회계원칙설정연구(Study on Establishment of Accounting Principles)위원회가 1972년 3월에 설치되었다.³⁷⁾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AICPA 이사회에서 승인되고 그 권고에 따라서 APB를 해산함과 동시에 새롭게 AICPA란 별도의 조직으로서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이 1973년에 설립되었다. 이 재단에 FASB가 설치되고 회계원칙의 공표와 그 해석에 대해서 책임을 맡게 되었다.

나) FASB의 公表文

FASB는 1973년 들어서 현재까지 공식견해로서 124개의 회계기준공표문(Statements of Accounting Standards)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공표문에 대한 해설로서 36개의 해석(Interpretation)을 공표하고 있다. FASB는 그의 공식견해를 발표하기 앞서 또 공개초안(Exposure Drafts)나 의견모집(Invitations to Comment)을 공표하고 또 필요에 따라 각종의 조사보고서를 공간하고 있다.

나. 美國 企業會計의 特徵

1) 英國會計의 繼受

미국의 회계는 사실상 영국의 회계를 도입하여 발전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會計士와 영국의 會計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영국의 영향 또는 기초가 미국회계의 발달로 이어졌다면 그러한 영국적 요소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시대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도상에 있는 영국의 회계기술과 형식을 계승하게 되었다. 식민지시대 초기에는 복식부기는 보급되지 않았으나 식민지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인이 전문적으로 출현하게 되었고 그 영향을 받아 회계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직업적 회계업무의 본격적 개시도 19세기말 영국의 會計士들이 종종 미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鐵道會社, 釀造會社 및 會計士의 고객이 投資하고 있는 財産의 各 計算書를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현재의 「8大」(big eight) 會計事務所 중 4개는, 영국에서 이민 온 勅許會計士들이 설립한 것이었다. 영국의 會計士들은 토박이 미국의

37) Recommendations of the Study on Establish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Official Releases), *Journal of Accountancy*, May 1972, pp. 66-71.

회계사보다 여러 가지 전문직 경쟁에서 미국의 회계직업인들보다 우세하였고 美國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會計事務所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초 증권거래법의 제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식의 회계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지였으나 이러한 배경에는 영국에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발전되어 온 회계가 뒷받침되어 미국 회계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회계를 이해하는데는 영국의 회계가 전수된 부분을 전제로 하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自主的 會計規制의 發達

회계기준의 설정방법과 절차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대륙계통의 국가에서는 상법상 회계규정이 기업회계를 주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같은 영미법계에 속하는 영국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가 출발된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개략적인 것만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문제들은 자주적 규제로서 민간단체에 의하여 제정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적 틀을 싫어하는 관행에 따라 회계의 대부분은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래서 미국의 회계는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으로서 인식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경제활동의 측정과 관련된다. 그러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기록되는 시기, 그러한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공시 그리고 요약된 활동들을 재무제표상에서 작성하고 표시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은 특정 시점에 있어서의 인정된 회계실무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관습, 규칙, 절차 등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적용에 관한 광범위한 지침 뿐 아니라 자세한 실무와 절차도 포용해야 한다.³⁸⁾

이러한 논리에 따라 미국의 회계는 정부기관의 개입보다는 민간회계단체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지난 30년간 발표된 회계원칙으로서 자격을 가진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회계집단인 미국회계학회(AAA)와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³⁹⁾ 미국 회계의 자율적인 규제와 발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3) 理論과 實務의 整合的 發展

AAA의 회계원칙 형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전반적 방법(over-all approach)내지 개념적 방법(conceptual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AAA의 조사연구계획은 서로 관계되는 일관된 포괄적 회계원칙을 형성하고 그의 일반적 승인을 가져오는 시도를 하고 출발하였다. 한편 AICPA는 단편적 방법(piecemeal approach)또는 사례적 방법(case-by-case approach)으로 회계원칙의 형성에 기여하여 왔다. 주로 실무 회계사를

38) Patrick R. Delaney, James R. Adler, Barry J. Epstein, and Michael F. Foran, *GAAP-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John Willey & Sons, 1985, pp. 2-3

39) Sanders, Hatfield, Moore, Stephen Gilman, A.C Littleton 등의 예외도 물론 있다.

직접 지원하면서 개별적인 회계문제들을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 회계계의 양대 산맥인 AAA와 AICPA는 서로 상이한 입장, 즉 이론적 개념적 입장과 실무적 개별적 입장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회계이론과 기술의 개발에 노력하여 왔기 때문에 회계이론과 회계실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4) 會計概念構造의 發展

회계개념구조는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이 회계규준이 정부의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나라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재무회계기준설정을 법률에 의하기보다는 민간단체에 의한 일반적인 규칙제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 또는 재무보고의 개념적 구조가 권위있는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구조는 미국에서 특유한 회계체계를 이룬다.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회사법에서 회계규정에 대한 메타기준으로 True and Fair View이 회사법에 들어오면서 회계기준의 기본이 되었고 이를 회계사단체들이 확장하여 회계기준을 형성하여 왔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상법에서 회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회계기준으로 삼아 왔던 것과 비교할 때 회계에 관한 기준을 실정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적 현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구조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것도 미국에서는 「직업적 회계인 및 그 집단이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권위에 의해 회계원칙을 설정하고, 해석하고, 그 작업을 회계고유의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유지하려는 제도형태가 확립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념구조는 이러한 전문가 회계체제하에서의 불가피한 제도장치로서 성립된 것이다.

5) 會計基準 制定 節次의 合理性

미국 회계원칙의 형성과 회계이론의 연구가 두 개의 회계집단인 AAA와 AICPA에 의하여 진행됨으로써 회계원칙에 대한 개념적 그리고 실무적 접근이 균형있게 접근되어 미국의 회계발전에 기여하게 되었고 따라서 미국의 회계기준의 제정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기본적으로 회계는 실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를 무시한 회계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한편 회계실무는 회계이론과의 접목에 의하여 회계실무를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회계실무를 발전시킨다. 따라서 회계이론의 담당주체로서 회계학과 회계실무의 담당주체인 회계사단체의 협업적인 연구자세는 미국의 회계기준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회계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무에 대해서 회계사와 연구자인 대학교수가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긴밀하게 협동하였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회계의 개별적인 특수한 문제가 검토되고 다른 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一貫된 유용한 개념적

짜임새가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미국회계의 특징을 들 수 있다.

특히 美國 會計基準 制定에 있어서는 ① 회계기준 제정전에 研究팀(task forces)에 의하여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토의를 위한 광범위한 研究報告書(Discussion Memorandum)가 작성되고, ② 모든 제정과정이 참여한 위원뿐 아니라 일반대중 누구에게도 公開되며 필요한 경우 資料 또는 會議錄의 寫本을 입수할 수 있고, ③ 어떤 기준을 제정할 때 時間的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하여 豫想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계기준제정의 適正節次(due process)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英國

가. 英國 企業會計의 發展과 現況

1) 初期 英國會計의 形成

가) 官廳會計記錄

회계는 이미 고대 바빌로니아의 記錄이나 고대 이집트의 徵稅記錄에서 실증되는 바와 같이 기원전 4000년에 회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고 있다.⁴⁰⁾ 당시 회계의 필요는 주로 왕실의 貢物을 바칠 때, 그 공물을 왕실의 군대나 재판소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할 때, 그리고 잔여의 왕실재산을 기록하는 실무로부터 생겼다. 그래서 당시 회계의 수준은 「재고조사」 또는 「창고」회계의 극히 초보의 형식이었다.⁴¹⁾

그리스의 쇠퇴와 함께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로마 역시 왕실의 재정과 국가수입의 계정기록을 하기 위하여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원전 40년 영국이 로마에 의하여 정복되면서 로마로부터 영국지사가 파견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영국적인 사회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300여년이 경과하면서 비로소 영국적인 사회가 태동하고 도시의 출현과 함께 영국의 상업이 비로소 활발하게 태동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초기의 회계는 고대문명에서 사용된 회계기술을 토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회계였으며 이 시대의 회계는 매년의 수입과 지출의 계산, 즉, 官吏에 의한 會計責任의 設定(charge)과 會計責任의 解除(discharge)를 내용으로 하는 관청 기록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⁴²⁾

40) A. C Littleton, "The Antecedents of Double Entry", *The Accounting Review*, Vo. II, June, 1927, p. 141.

41) Richard Brown, *A History of Accounting and Accountants*, Frank Cass & Co., Ltd., 1968; Vernon. K. Zimmerman, *British Backgrounds of American Accountancy*, 1954, (小澤康人, 佐佐木重人 共譯, 『近代アメリカ會計の發達史 -イギリスの影響力を中心に-』. 同文館, 1993)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나) 莊園과 길드 會計

영국에서 장원이란 하나의 경제단위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단위이고 사회적 단위이다. 영국의 봉건제도는 장원단위로 구성된 사회였으며 장원은 영주에 의해 통치된 작은 국가이었다. 영주는 국지적인 분쟁을 지휘하거나, 徵稅, 그리고 자신의 장원내에서의 완전한 司法權力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장원에 사는 사람들은 복잡한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원내에서의 권리의무가 바르게 설정되어 이행되도록 많은 부분에서 정확한 기록을 필요로 했다. 그와 같은 일반적인 기록을 위하여 감독관이 정하여져 있었다. 감독관은 마을의 농업생활 전반에 대해서 회계기록 책임을 지고 있었다. 감독관의 일은 莊園會計士가 맡아 함으로서 회계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장원경제는 대부분 자급자족에 의함으로써 이웃과의 교역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10세기와 11세기 대부분 장원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농업의 장원과 공업의 길드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전문화된 직업 즉 제분업자 또는 대장간이 탄생되기 시작하였고 펜제조, 양조업, 어업, 목수직, 피제품업, 또는 비누업에 종사하거나, 식육의 생산·가공업, 로프의 제조업, 염색업, 또는 제조업 등이 등장하였다. 14세기까지의 장원농업경제가 양호하게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길드는 잉글랜드의 촌락생활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길드의 발전과 형성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경제의 큰 변화가 영향을 주었다.

길드가 활발하게 발전함에 따라 회계기록을 필요하게 되었고 길드의 수입은 동업조합을 통괄하는 「幹部」(warden)라는 회계담당자에 의해 명백히 기록되었다. 영국회계는 무역, 상업, 인구, 필수품, 경제·사회이론의 큰 변화 가운데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다) Luca Pacioli 複式簿記의 영향

複式簿記는 Pacioli의 *Summa*가 출현한 1494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발달되고 활용되고 있었다. 이미 1250년에서 1440년 사이 북부 이탈리아에서 복식부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複式記入法은 試行錯誤를 되풀이 발전하면서 개량된 방법이 특정 商業分野 및 都市에서 다른 商業分野 및 都市로 전파되어 갔던 것이다. 즉 당시의 복식부기는 「自然發生的」(spontaneous)인 발달과정을 가지게 된 것이며 이것이 현대회계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체가 된다.⁴²⁾

Luca Pacioli가 1494년에 *Summa de Arithmetica, Geometica, Proportioni et proportinalita*(算術, 幾何, 比 및 比例 總覽)를 출판하였다. 이는 주로 商業上의 필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Pacioli의 창조물이라기보다는 당시의 簿記指導書를 참고로 하여

42) Richard Brown, *op. cit.*, pp. 41-44.

43) 이정호, 『전계서』, p. 44.

집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Pacioli의 *De Computis*에서 商人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現金과 信用, 우수한 簿記擔當者, 企業의 狀況을 즉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會計制度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복식부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商人은 事業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자기의 企業과 개인적인 資産과 負債를 포함한 모든 財産目錄을 작성해야 하고 재산목록의 항목들은 流動性(mobility)과 價値(value) 있는 것부터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야 하는 등 현대 회계의 중요요소를 지적한 것으로 이러한 Pacioli의 복식부기는 영국의 회계의 출발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2) 英國式 會計基盤의 形成

가) 株式會社 類似形態의 出現

(1) 重商主義와 獨占利益의 擴大

중상주의는 주식회사와 그 밖의 현대적인 기업형태가 성숙되어 갔던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번창함으로써 회계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중상주의는 무역으로 상업을 신장하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경제이론인 동시에 정치적 정책이었다

중상주의의 敎義에 의하면 원래 국가는 투자자에게 독점특허권을 주어 특정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또한 해외의 특정지역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에 독점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무역과 산업을 융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외무역을 강조하는 뜻은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도록 하여 무역수지의 흑자를 이루어 국가재산을 풍부히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있었다. 수입물은 보통 원재료이고 수출물은 가공제품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정책은 자연히 잉여생산물을 수출하여 그것과 교환으로 필요한 외국산품을 수입하는 식으로 더욱 복잡하게 되어 갔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의 商業은 Pacioli의 베니스에서와 같이 전형적인 冒險投機(venture speculations)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企業이 존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法人化할 필요가 있었다. 法人化는 처음에는 國王의 勅許에 의하여서만 수여되는 特權이 있으며 항상 獨占을 전제로 하였다.

商業界를 지배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職業길드는 이미 1394년에 法人化되고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消防이나 金融 등의 諸活動에 대하여 地方公營企業이 나타났고 이들은 거의 200 同業組合(livery companies)형태를 이루며 여러 가지의 公共서비스를 獨占하였다.

(2) 株式會社의 發展

株式會社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는 3개의 概念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첫째, 각 기업은

獨立하여 존재하고, 기업 스스로의 權利로서 財産을 소유하는 實體이며 출자자와 기업은 별개의 실체라는 이론적 근거에 두고 있다. 둘째, 企業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은 企業의 諸活動에 대하여 有限責任을 진다. 기업이 소유주와 별도로 존대한다면 소유주도 기업자산에 대한 간접적인 청구권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은 所有主의 생명과는 관계없이 계속하여 存續한다.⁴⁴⁾ 그런데 이미 中世社會에 있어서 중요한 3개의 組織이었던 敎會, 都市 및 同業길드는 각각 영구적인 存續性을 가진 독립된 實體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회사의 발전 요소를 근거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성하여 기업들이 무제한의 활동범위를 가지게 되었다. 또 17세기의 후반에는, 많은 非法人企業이 株式會社처럼 행동하며, 법적인 권리없이 讓渡可能한 株式을 발행하고 있었다.

南海會社(South Sea Company)는 이들 모험사업 중 가장 큰 것으로 會計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주식 투기의 조장과 가공의 배당약속으로 막대한 주식투기를 통하여 열광적인 투기에 휘말려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되었다. 이 投機狂亂의 최종적인 결과로 1720년 Bubble Act(泡沫會社規制法)가 제정되어 ① 과도한 株式投機, ② 사기적인 株式會社의 設立, ③ 非法人 기업의 法人格 사용, ④ 會社 勅許狀을 범위 밖의 事業經營에 利用하는 행위⁴⁵⁾등을 규제하게 되었다. 1720년 南海泡沫會社事件(South Sea Bubble's collapse)은 1929년의 大恐慌과 같이 會計監査의 개선에 대한 요구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 會社法의 制定과 財務諸表의 발달

南海會社(South Sea Company)의 투기사업이 실패하여 투자자에게 많은 손해를 가져왔고, 그 결과 1720년의 Bubble Act를 제정하여 이후 100년간 새로운 주식회사의 설립을 금지시켰다. 결국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으로 남해회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반동으로 주식회사제도가 규제됨으로써 오랫동안 주식회사가 휴면속에서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후 다시 會社法(Joint Stock Companies Act)이 1844년 제정되면서 법인조직을 일반에게 허가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기업회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회사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財務諸表樣式은 주로 19세기 영국 회사법의 성립과 함께 한다.

회사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의회는 이탈리아의 複式簿記보다는 영국의 전통적인 책임회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⁴⁶⁾ 법인설립은 일종의 特權으로 인정되어, 그 대가로 주식회사에는 특정의 公的義務가 부과되었다. 회사의 발기인이나 회사임원은 투자자의 자

44) A.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90*(New York: American Institute Publishing Company 1933, pp. 242-244.

45) A. C. Littleton, p. 248.

46) A.C. Littleton, *ibid.*, pp. 133-134.

본을 책임지는 受託者(steward)로 간주되고, 따라서 회사자산의 사용내역을 공표할 의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영국은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규정을 입법화하기 시작하였다. 1844년의 회사법에서는 監査받은 대차대조표를 주주에게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56년의 회사법에서는, 이전의 會計 및 監査에 관한 會計關係規定을 본문에서 삭제하였으나, 법인의 책임이라는 영국적인 관점을 반영한 貸借對照表의 모형이 정하여졌다. 이처럼 責任受託·履行報告書(charge and discharge statement)와 報告書는 貸借對照表科目 들을 집합하여 집계하고 의무와 그 이행을 배열하는 재무제표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會計原則의 出現

영국에서 회계이론이 처음으로 중요시되게 된 것은 産業革命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工業技術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① 평가기준으로서 원가주의에의 집착, ② 자본과 이익구분의 중요성의 증대, ③ 계속기업개념의 발달 등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⁴⁷⁾ 대부분의 이론적 발전은 이익산정을 精密化하려는 노력에 집중되었다. 이익은 여전히 貸借對照表의 資本의 部에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였으나, 자산평가는 점차로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 갔다. 또한 투자자 및 채권자가 회계자료에 의존함에 따라, 재무제표의 구조에 관한 諸法則이 필요하게 되었고 計定分類가 도입되었다. 이들 慣習의 몇 가지(繼續性, 期間性, 歷史的 原價 및 保守主義) 등이 19세기의 製造業들이 채택하고 이것이 현대적인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비록 통일된 회계원칙으로 집대성된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慣習이 널리 實務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어 회계원칙의 출현을 촉진하게 된 것이다.

3) 現代 英國 會計制度의 確立

영국에서의 회계제도는 법적규제와 자치적 규제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일찍이 영국에서는 회사법에서 회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회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Common Law의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회사법에서 회계에 관한 규정을 두되 자세한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기본 골격만을 정하고 있다. 대신 기업내용의 공시나 증권시장에 관한 규제는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시티(런던의 국제금융센터)의 자주규제기관 및 직업회계사의 단체가 담당하여 왔다. 즉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회계문제는 사적부문(private segment)내부에서의 자주규제 방식을 택하여 온 것이다.⁴⁸⁾ 따라서 영국의 회계제도를 검토하려면 이러한 법적 규제와 자주적 규제의 양면을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47)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rev. ed.,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1970, p. 33.

48) 田中 弘, 『イギリスの會計制度-わが國會計制度との比較検討-』, 中央經濟社, 1996, pp. 1.-137.

가) 法的 會計制度

(1) 會社法の 沿革

회계에 관한 영국의 회사법은 1985년 법에서 정리되어 있다. 지금까지 영국의 회사법은 1948년법을 기본 법률로 하여 이후 1967년법, 76년법, 80년법, 81년법을 제정하면서 이들 개정법은 1948년의 기본법률에 대한 수정법으로서 제정한다는 변칙적인 형태를 취하여 왔다. 1985년 회사법은 1948년 회사법에서부터 1981년 회사법까지의 제법을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하여 다시 체계화함으로써 변칙적인 상태를 해소하였다. 그후 1985년법은, 1989년 회사법(85년법에 대한 개정법)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

1967년법 및 1976년법은 정보공개확대, 감사인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80년법은 EC 제2호지령 국내법화, 자본유지와 분배가능이익의 요건을 성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1981년법은 EC 제4호지령을 국내법화 한 것이다. 또 1989년법은, 기업집단재무제표나 감사인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그간 영국은 Common Law의 법체계를 취하면서 전통적으로 회사법에서 직접적으로 상세한 회계규정은 설정하지 않고, 기본적 골격만을 규정하고 기업내용의 개시에 관하여는 실무관행 및 직업회계사를 중심으로 한 자주규제에 맡겨 왔다. 그런데 1981년법에 의해 재무제표의 양식, 내용,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제정법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회사법은 다시 회계에 관한 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추세에 있다.

(2) 회사법상 회계관련 규정

영국 회사법상 회사가 공표하는 기업내용개시 보고서에는 연간보고서(annual report)와 연차신고서(annual return)의 2가지가 있다.

연간보고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주주, 회사 채권자 기타 주주총회의 통지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송부되고 동시에 주주총회에 제출된다(1985년 회사법 제238조(1), 제241조(1)).

연차신고서는 마찬가지로 이사가 작성하지만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에 회사등기관(registrar of companies)에 신고하는 것(동법제242조(1))으로 Companies House(London, Cardiff 및 Edinburgh에 설치)에 보관되어 일반공중의 열람에 사용된다.

(3) EC加盟과 會社法の 改定

영국의 회계에 관한 開示法은 회사법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모든 유한책임회사에 적용된다.

영국은 Common Law의 법체계를 가지면서 전통적으로 회사법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그 골격이 되는 테두리를 정하는 데 그쳐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중세적 Common Law 법체계에서는 산업계의 급하고,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고 독일, 프랑스 등의 나폴레옹法典型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EC에 가맹함으로써 회사법의 확충·정비를 진행하게 되었다.

영국 투자자는 1844년의 회사법에서 회계방법의 개시를 의무 지움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아 왔다. 회사법의 규정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이익 및 배당 결정에 사용하는 회계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법이 회계 규정을 만들지 않는 대신에, 채택한 회계방법의 개시를 의무지울 수 있고, 경영자 및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이 부과되었던 것이다.⁴⁹⁾

1981년 회사법은, EC 제4호지령을 국내법화 한 것으로서 이는 대륙법계의 상세한 Rule Book에 Common Law적 사고를 접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ommon Law를 전통으로 하는 영국에서, 대륙법에 고유의 상세한 규정을 가지는 EC 제4호지령을 재빨리 국내법화 한 것은 「경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회사법은 1981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더욱 복잡케 되었다. 즉 여전히 기본법률을 1948년법으로 하면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1967년, 1976년, 1980년 그리고 1981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개정됨으로써 변칙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칙적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회사 제법을 정리·통합하는 작업을 진행되어, 198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85)이 된 것이다.⁵⁰⁾

1988년 12월 EC 제7호지령(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지령)과 제8호지령(감사인의 규제에 관한 지령)을 국내법화 하기 위하여 회사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989년 11월에, 1989년 회사법(Companies Act 1989)으로서 제정되었다.

이 회사법 개정에 따라 1988년 9월에 CCAB가 공표한 Dearing Report(The Making of Accounting Standards : Report of the Review Committee under the Chairmanship of Sir Ron Dearing : Dearing Report)에서의 諸 提案을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가 강구되었다.

(4) 證券去來所의 開示規定

영국에는 미국의 SEC에 상당하는 규제기관이 없다. 따라서 상장회사나 상장 신청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법이나 회계기준의 개시 요건을 전제로 하여 증권거래소가 규정을 만들어 필요한 경우 개시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영국 및 아일랜드공화국 유일한 증권거래소인 런던국제증권거래소(International Stock Exchange of the United Kingdom

49) R. K. Storey,, "Accounting Principles: AAA and AICPA", *Journal of Accountancy*, June 1964, p. 14.

50) 그러나 1985년법은 구법을 정리·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법률상의 표현을 현대풍으로 고친 점 점을 제외하고 구법의 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은 아니었다.

and the Republic of Ireland)는, 정규 상장회사 및 상장 신청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상장인가규정(Admission of Securities to Listing: 표지의 색에서 Yellow Book이라고 불린다)」이라고 하는 규칙집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칙집의 중(Section5)에 상장 후의 지속적인 정보개시요건(Continuing Obligations)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증권거래소는 이 규칙집에서 영국 국내에서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는 SSAP를 준수하도록 요망하고,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또는 영미 어느 나라의 회계기준이든 선택하여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ection 5, 21(a), Section 8, 3(a)).

나) 自主的 會計規制

(1) 自主的인 會計歷史와 ICAEW의 設立

영국에서 전문회계가에 대한 수요는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확대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회계는 산업혁명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운하와 철도라는 새로운 수송수단이 발달하여 원재료나 제품을 싸고, 빠르고, 간단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장규모가 커지고, 새로 개발된 기계가 사용되어 비용절감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당시 회계사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확대되면서 부정직하고 무능한 회계사가 양산되었고 신뢰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계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회계사들은 자기의 명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만으로 협회를 설립하고 직업윤리기준을 만들려고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눈사태와 같이 Society나 Association을 자칭한 회계사 단체가 탄생한 것이다. 그후 각종의 Society나 Association 이 난립되어 양 단체간에 반목으로 여러 가지 폐해가 빈발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하는 Royal Charter가 1880년 3월 24일에 수여되고 새로 설립된 단체는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ICAEW)로 칭하게 되었다.

그런데 새롭게 결성된 ICAEW는 입회 조건이 엄격하였기 때문에 이에 가입할 수 없는 회계사들 약300명이 모여 1885년 새로 Society of Accountants and Auditors (Incorporated)⁵¹⁾ (이하, SAA와 한다)를 결성하여 점차 회원을 늘려 갔다. 다시 회계업계가 ICAEW와 SAA로 양립된 것이다. 그후 양 단체간의 대립과 이해충돌로 수차례의 통합논의가 있어 오다가 1957년 11월에 SAA가 해산하고 1897년이래 60년만에 ICAEW와 SAA가 통합하게 되었다.

51) 1908년에, Society of Incorporated Accountants and Auditors로 개명.

(2) ICAEW의 活動

(가) 自治的 自主規制-會計原則勸告書(Recommendations on Accounting Principles)

ICAEW는 1940년대의 초부터 1969년까지의 약30년간에, 29호에 미친 회계원칙 권고서(Recommendations on Accounting Principles)를 설정하였다. 이 회계원칙 권고서는 최량의 회계실무지침으로 권고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의 회계실무나 회원(회계사)의 감사실무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회사의 회계담당임원 및 감사인인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존중하는 생각이 강하고, 회계원칙에 관해서도 이러한 회계전문가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던 것을 집대성하고, 이것을 하나의 지침으로서 성문화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 설정된 회계원칙을 적용하는지 어떤지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인의 판단에 맡겨 온 것이다. 기업 활동은 복잡하고도 다양하고, 더구나 아직 경험한 것이 없는 새로운 상황에 부단히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서의 판단이 현재에 있어서도 최선이라고는 제한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는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성문화된 회계원칙은, 성문화의 시점에서는 최량의 실무의 지침이어도 장래도 그렇다고 하는 보증이 없고, 또 특정 회사의 특정 상황에서 채택되어야 하는 최선의 실무라고 제한할 수도 없다. 더구나, 성문화된 회계원칙은,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서는 회계실무 지침으로서 전혀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하고도 다양한 기업활동의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을 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인도 전문가로서 최선의 판단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영국이 전통적으로 구속적인 회계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권고서」의 형식을 채택해 온 것은, 회계직업인인 전문가로서의 판단력을 극히 높게 평가하여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몇 가지의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 왔다. 예를 들면 회계실무에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함으로써 회사간 비교가 곤란하고,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나 표시원칙·지침 및 지침이 되는 회계원칙에 준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유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정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나) 強制的 自主規制-會計實務基準書(Statements of Standard Accounting Practice: SSAP)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 그때까지의 「권고서」방식이 정보의 공개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이 강제력을 갖는 「회계실무기준서(Statements of Standard Accounting Practice: SSAP)」를 설정·공표하게 되었다. 이 회계기준은 당초 ICAEW 안에서 마련된 1위원회가 설정을 담당하였지만 기준설정 활동은 다른 주요한 회계 단체의 참가·협찬을 얻어 全英의인 회계사 단체합동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of Accountancy Bodies : CCAB)가 결성된 후에 완성되었다.

영국의 회계기준이 종래 권고서 방식을 철회하고 강제적인 회계기준으로 돌아선 배

경에는 1960년대의 기업합병운동을 들 수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의 주요 회계단체가 단결하여 강제적 회계기준의 설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중소기업을 주로 하여⁵²⁾왔었는데 1950년대 말부터 미국기업이 대량으로 영국산업계에 유입되면서 영국의 중소기업의 생존에 큰 위협을 주게 되었다. 그 외 유럽의 통합운동이 박차를 가하면서 영국의 기업들도 이에 따라 변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유럽은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 통합운동이 구체화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 기업의 직접적 진출과 유럽의 통합을 계기로 영국기업도 대형화하지 않을 수 없어 대형 합병이나 매수를 계획하게 되었고 국가도 기업의 대형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회사 재무제표나 회계정보가 다른 회계규칙에 따라 작성되어 있어 재무정보의 이해와 분석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합병이나 기업매수에 관여한 투자자 중에는 큰 손실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⁵³⁾

(3) CCAB의 結成 및 ASC의 活動

영국의 각회계사 협회는 각각의 입장에서 독자의 권고서나 의견서를 발표하여 오다가 1970년대에 접어들어 회계사단체합동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of Accountancy Bodies : CCAB)라는 전영적 조직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 ASC)를 설치하고 강제력을 부여한 회계기준(SSAP)을 설정하였다.

강제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회계기준의 설정과정도 대폭 공개되고, 테마의 선택 단계부터, 예비적 조사, 연구결과의 공표, 토의자료의 공표, 예비적 초안의 단계에서의 의견 청취, 사전 협의, 취지서의 공표, 초안 공개, 공청회 개최와 같이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완되었다.

ASC는 경우에 따라 강제적인 회계기준보다도 권고서 내지 지침적인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기도 하여 1983년 이후 「회계실무권고서 (Statement of Recommended Practice : SORP)」 및 「ASC승인 (업종별)회계실무권고서 (franked SORP)」를 설정할 방침을 내세우고, 1986년 5월에, 「회계실무권고서에 관한 취지서(Explanatory foreword)」와 SORP 제1호 「연금제도 회계 (Pension scheme accounts)」를 공표하였다. SORP 및 업종별 SORP는 강제력은 부여받지 않았지만, 이것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다만, 회사가 이러한 권고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실, 이유 및 영향 액은 개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종래 ICAEW가 공표하여 온 회계원칙권고서(Recommendations on

52) 1959년 당시 종업원 500명 이상의 제조업은 전체의 4.8%밖에 없었다고 한다.

53) 특히 합병시 자주 이용되는 TOB(주식공개매입)에서 사회에 공표되는 TOB의 문서 중 회사 장래이익의 견적액에 있어서 TOB에 관여하는 쪽과 회사측과 다른 회계원칙이 채택됨으로써 투자자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Accounting Principles) 또는 다른 회계사 협회가 공표하여 온 동종의 의견서는, 회사법이나 SSAP 또는 SORP가 이것에 반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여전히 권고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도, 최선의 실무(best practice)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④ 會計基準의 不完全性, 可變性, 非網羅性의 認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회사는 회계기준을 준수하기만 하면 무한정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기준이 불완전하거나, 특정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거나, 기준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거나, 기준이 그 당시의 유행과 사고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도 설정된 기준에 따라야 하고, 또 이에 따르면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기준에 대한 범의식 또는 범적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래 영국에서는 Private Sector가 설정하는 회계기준은 설정 당초부터 완전한 것, 불변인 것, 또는 망라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회계기준에 관한 취지서(Explanatory foreword to the Statement of Standard Accounting Practice)에서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⁵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정신(spirit)과 배후에 있는 논거(reasoning)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회계기준은 엄격한 규칙의 체계적인 법전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회계기준은, 각각의 상황에서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 행사하는 판단을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온갖 상황이나 장래의 변화, 또 예외적 또는 바디라인 상의 경우의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규칙집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 상황, 즉,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는,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당한 이유(justifiable reason)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기준이 지시하는] 처리를 수정하든지 별도의 처리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 ICAEW의 감사 statement(The Effect of Statement Standard Accounting Practice on Auditors' Report, 1971: Statement on Auditing, U.17)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회계기준으로부터 이탈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또, 이사가 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도 감사인으로서……당기준에 따르는 것은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을 나타내는데 방해하게 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회계기준의 불완전성, 비망라성이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회사법의 회계규정 중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을 나타내는데 방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54) 田中 弘, 『전계서』, pp. 75~76.

회계기준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 경우 이탈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①-④)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계기준에 대한 법적확신을 높이는 일방, 회계기준을 맹목적으로 준수하여도 즉,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이사나 감사인의 면책이 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단히 교묘한 check and balance를 회계규제 중에 채택함으로써 영국에서는 자주규제에 잠재하는 문제점, 즉 예고이즘의 문제와 규제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⁵⁵⁾

영국 회계사고의 근간은 관습법(Common Law)적 사고로서 성문화 된 회사법이나 회계기준은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이라는 회계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으로서 처음부터 시대의 변화에 의해 불적용화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연한 것이면서, 각각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단순히 명문화된 형식적 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면을 중요시 하여 당해 규정이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자, 감사인 모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⁶⁾

4) 英國 會計基準의 設定 主體 및 方法

영국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영적인 회계사단체인 CCAB-ASC 체제에서 회계기준을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1990년 8월 새롭게 FRC, ASB 및 FRRP라는 3개의 조직이 트로이카 체제 내지 트라이앵글 체제로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회계기준의 설정·운용에 관여하게 되었다. 현행의 회계기준 설정주체는 FRC와 ASB이다.

가) CCAB-ASC體制下에서의 基準의 設定

(1) 基準 設定의 內容

영국에서는 Private Sector인 CCAB가 설정하는 회계기준을 회사가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 ①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의 원칙을 명문규정
- ② 감사인의 자격의 법정
- ③ 법정 감사인에 의한 감사 실시
- ④ 감사보고서의 작성·공표(한정의견의 표명, 위반사실의 공표)

55) 田中 弘, 『전계서』, pp. 77-78.

56)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회계전문인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판단이 무시된 채 조문식으로 형식화된 기업회계기준만이 유일한 회계감사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춤으로써 감사자에 면죄부를 주거나 실질에 맞지 않는 감사가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⑤ 회계사협회(ICAEW, ICAS, ICAI, ACCA)의 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와 징계

⑥ 증권거래소와 상장회사와의 사이에 회계기준 준수에 관한 협약
영국의 회사법은

①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정상태(state of affairs) 및 경영성적(profit or loss)에 대해서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true and fair view)」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다.(1985년 회사법 제226조)

② 이에 따라 모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동법 제384조(1)) 감사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ICAEW, ICAS, ICAI 및 ACCA의 회원에 한정된다.(동법 제389조(I)(3))

③ 감사인은 감사를 행하고(동법 제237조(1))

④ 감사보고서(auditors' report)를 작성한다.(동법 제235조(1)) 이때 회사의 재무제표가

㉞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동법제235조(2))

㉞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에 대해서 진실하고도 공정한 개관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부(동법제235조(2)(a)(b))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會計基準의 設定 過程

1970년부터 회계기준에 대한 강제적용이 시행되면서부터 기준설정 공개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① 테마의 선택

ASC의 장기 계획에 의해 기준화하는 테마의 선택 및 우선 순위가 정해 지지며 이 테마선택을 위하여 ASC에 계획소위원회(The Planning Sub-Committee)가 설치된다. 테마 선택시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망을 특별히 배려하기 위해 외부 기관(ASC조언 위원회 등)과 협의하기도 한다.

② 조사연구

일반적으로 CCAB의 구성 단체에 설치된 조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자, 회계사 그룹 또는 회계사 사무소 등에 조사 연구를 위탁한다. 이 단계에서는 외국의 회계기준이나 문헌의 조사, 현행 실무의 조사, 문제점이나 있어야 할 제 방법의 세밀한 조사 등의 작업이 행해진다. 조사 결과는 공표되기도 한다.

③ 작업위원회의 구성

각각의 테마마다 공개초안(exposure draft : ED)의 기초를 담당하는 작업위원회(working party)를 편성한다.

④ 토의자료 또는 취지서의 공표

기준안을 정리하기 전 여러가지 각도·입장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의자료(discussion paper) 또는 취지서(statement of intent : SOI)가 공표 된다. 토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널리 각계의 의견을 구할 목적으로 작업위원회가 공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논을 활발히 하기 위해 ASC의 잠정적인 결론이나 작업 위원회의 결론을 나타내기도 한다. 취지서는 ASC가 공표하는, 이른바 「관측 기구」이다. 취지서는, 장문의 토의 자료 대신에 발행되기도 하며, 테마가 복잡한 경우에는 작업위원회가 편성되기 전에 발행되기도 한다.

⑤ ASC와 작업 위원회의 사전협의

작업위원회는 초기단계에서 ASC에 초안의 기술적인 내용과 의견 조희계획을 표시하고, 승인 또는 수정을 요구한다. 의견조희를 위하여 통산성, CCAB 각 단체, 각종 이해관계자그룹과의 협의, 공청회, 기자회견 등이 계획된다.

⑥ 예비적 초고의 기초

작업위원회는 제외국의 기준설정기관(미국의 FASB 등)이나 IASC의 기준설정 계획의 유무, 그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과 의견을 교환한다. CCAB 각 단체의 의견도, 이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청취한다.

⑦ ASC에 의한 초안의 검토

예비적 초안이 작성되면 먼저 ASC의 검토를 받는다. 이 초안은 각 회계사 단체의 기술위원회, 회계사 사무소 등에 (약1,000부)송부되어 주로 회계사 의견을 청취한다.

⑧ 공개초안의 공표

ASC나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예비적 초안을 개정하고, ASC의 재검토를 받는다. 공개초안은 ASC의 이름으로 공표되고, 공개기간은 원칙으로서 6개월. 초안을 공표 하려면, ASC 전위원(1989년도 21명)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초안은 각 회계사 단체 외에 주요한 기관이나 회사에 직접 송부되고, 동시에 각 회

계사 단체의 기관지에 게재된다.

⑨ 공청회의 개최

공개기간의 종료경에 공청회를 열기도 한다. 기준화하려는 테마가 점차 복잡하고 이해대립이 심하여 짐에 따라 공청회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⑩ 보내 온 코멘트의 검토

작업위원회는 보내 온 코멘트를 검토하여 요약하고 작업위원회의 의견을 ASC에 전달한다. 공개초안에 중요한 변경이 가해질 때는, 수정해 그 개정 초안을 공표 한다.

⑪ CCAB 각 단체 이사회에 초안송부

ASC는 승인한 기준안을 6개의 CCAB 구성단체의 이사회에 송부하고 이것을 확정기준으로서 승인하도록 권고한다.

⑫ CCAB 각 이사회에 의한 비준

통상의 경우 각 이사회는 다른 5개의 단체의 이사회가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확정기준으로서 공표하는 것을 승인한다. 실제로는 ICAEW 이외의 5개의 이사회가 먼저 심의를 행하고, ICAEW의 이사회에는 다른 5개의 이사회 심의 결과가 보고된다. 확정기준으로서 공표되려면 6개의 단체의 이사회가 비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의 공표는, 지금까지 ICAEW가 11의 단계에서 각 이사회가 비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해 왔다. 또 1980년부터는 공표된 기준의 배후에 있는 사고, 공개초안과의 상이, 중요한 코멘트를 받았던 것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이유, 다른 기준서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적 입문서(technical release :TR)가 동시에 발표되었다.

(3) 基準設定 過程에 대한 批判

상기와 같은 회계기준 설정 과정에 대하여 그 Process의 공개와 각계 의견의 반영방법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즉 ASC의 공개문서에서는 의견청취 Process 및 ASC 활동내용의 공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1978A, Par. 4. 2.).

- (a) ASC의 회합을 공개로 하는 것.
- (b) ASC의 회합 후에 기자회견을 열 것.
- (c) 공청회를 열 것.

- (d) 정기적으로 (계간으로도 월간으로도 격월간으로도)공보를 발행할 것.
- (e) 회계기준서의 배후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실무상의 Guidance를 나타내기 위해 소책자를 발행할 것.
- (f) 비공식의 Guidance를 행할 것.

나) Dearing Report의 改革案과 1989년 會社法 및 새로운 基準 設定體制

CCAB와 ASC는 1990년 7월 다음의 회계기준서 및 공개초안을 발표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체제의 막을 내렸다⁵⁷⁾. 이는 ASC의 전신인 ASSC가 ICAEW내에 설립(1969년 12월)된 이래 20년 7개월, CCAB-ASC체제의 발족(1976년 2월)이래 14년 5개월만의 일이었다.

- 기준서 제25호 「Segmental reporting」
- 공개초안 제54호 「Cash flow Statements」
- 공개초안 제55호 「투자 회계(Accounting for investment)」

CCAB-ASC체제가 종국을 맞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① 설정하는 회계기준에 대한 법적 확신이 점차 저하되고, 기준으로부터의 이탈 혹은 기준을 경시한 실무가 횡행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AB도 ASC도 이것에 대해 유효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② 1980년대 중반 정부·통산성이, 금융·증권의 자유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투자가 보호정책을 내세우고, Private Sector의 자주규제에 법의 그물을 씌우고, 또한 자주규제 기관에 법적권한의 부여방식을 채택하고, 회계사 업계에 대해서도 「법 하에서의 자주규제」를 구하도록 한 것 등의 2가지 점을 들 수 있다.

1987년 11월 CCAB는 Sir Ron Dearing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때는 이미 정부에서도 회계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ASC도 회계기준에 대해 법적 뒷받침(legal backing)을 용인하게 되었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회계문제에 개입하기 전에, 자신들의 태세를 재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의향에 거슬리지 않도록 CCAB는 재검토 위원회의 책임자(후의 FRC 회장)에 정부 전직 고관인 Dearing을 내세운 것이다.

Dearing 위원회의 보고서 「회계기준의 작성 - 재검토위원회보고서(The Making of

57) ASC는 새로운 기준 설정 기관인 ASB가 발족하는 직전에, 본문에 소개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 공개초안 제50호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Accounts)」
- 공개초안 제51호 「고정자산과 재평가회계(Accounting for fixed assets and revaluations)」
- 공개초안 제52호 「무형자산의 회계(Accounting for intangible assets)」
- 공개초안 제53호 「기업취득회계에서의 공정가치의 회계(Accounting for fair values in the context of acquisition counting)」

Accounting Standards - Report of the Review Committee under the Chairmanship of Sir Ron Dearing CB)」가 1988년 9월에 CCAB에 담신형식으로 11월에 공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조 및 회계기준 설정과정의 개선에 관한 의견은 회계기준의 설정이 단지 회계전문가 내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증권거래소, 재계가 강력한 지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 보고서가 공표되자 한때는 이러한 제안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각방면에서 검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9년 11월 제정된 1989년 회사법(Companies Act 1989: 1985년법에 대한 수정법으로서 제정)에서 Dearing Report 제안의 핵심을 이루는 트라이앵글 체제에 법적 근거가 주어짐으로써 제안에 따라 대부분 개혁이 실현된 것이다.

나. 英國 企業會計의 特徵

1) 現代 會計發展의 主導

영국의 기업회계는 고대 그리스 로마 등의 회계를 계승하여 중세에 이르러 莊園會計, 敎會會計, 길드會計 등 영국 고유의 회계로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이태리에서 발전한 루가파치오리의 복식부기를 받아들여 회계발전의 앞장서 왔다. 16세기와 17세기의 영국 사회는 주식회사 형태인 법인조직의 활발한 출현으로 중상주의정책과 함께 산업화를 강화하였고 특히 모험사업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산업사회의 기업경영이 계속기업과 유한책임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면서 이를 감당할 회계개념과 기법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주식회사의 남발로 인한 南海泡沫會社 사건 이후 상법에서 회계에 관한 강제규정이 삽입되기 시작하면서 1856년의 회사법에서는 受託責任·履行報告書(charge and discharge statement)로서의 현대적 회계가 정비되었다.⁵⁸⁾이처럼 영국은 일찍이 산업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이에 필요한 회계이론과 기술을 연마하여 영국 고유의 회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회계는 다시 미국에 전수되어 현대 회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2) 大陸法律과의 融合과 商事裁判

중세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영국사회는 교회법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경제활동 활발하게 됨에 따라 한 지방에 한정 되었던 상업은 나라전체로 확대되는 등 교회법적 영향은 쇠퇴의 징조를 나타내었다.

중세의 시대가 경과하면서 영국의 상업은 일변하였고 또 14세기의 말부터 15세기를 통해 국내에 한정되었던 상업은 국제적인 상업으로 발전하여 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58) Richard Brown, *A History of Accounting and Accountants*, Frank Cass & Co., Ltd., 1968, pp. 41-44.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영국 상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이를 위하여 대륙법적 생각이 영국에 도입될 필요가 있었다.

16세기 상관습법과 해사법은 새롭게 도입된 해사재판을 통해 발전하였다. 이러한 법률들은 근대 상법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대륙에서 이미 발전하고 있었던 법률의 지식으로부터 도입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대륙의 법률은 영국의 법률체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현대 법률의 중요한 모든 조항은 당시 영국 고유의 법률과 대륙에서 초래된 법률과의 혼합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영국 법률과 대륙 법률이 장소나 시대의 차이를 극복하고 관련원칙의 기본적 동일체를 溶解하여 국제상업의 보편적 요건의 기초를 형성한 것이다.⁵⁹⁾

영국의 회계문제는 주로 상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하여 왔고 이러한 상사재판은 대륙계통의 상사관련 법규가 영국에 도입시행된 것이었다. 따라서 영국의 회계는 재판을 통한 형성과 대륙법적 상사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에 그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당시 영국의 法曹職은 「고전과」 신경제이론을 영국의 商業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융합시키고 명쾌하게 概說하고 解釋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것이었다. 영국의 법률전문가는 경제학자가 채용한 이론을 실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였고 이때 「법률학의 대상은, 윤리적 또는 정치적 분석에 의한 이상적 결과가 아니고, 인간의 본질이나 역사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루어진 실제적 결과이다.」⁶⁰⁾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법조계는 영국적인 회계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특징을 간과할 수 없다.

3) 法的 規制와 自治的 規制의 兩面性과 그의 調和

영국의 회계는 법적 규제와 자주적 규제의 양면성을 가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여 왔다. 법적규제로서는 Common Law의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회계규정을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회계규제가 출발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는 대략적이 테두리를 정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기관보다도 오히려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시티(런던의 국제금융센터)의 자주규제기관 및 직업회계사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회계제도는 법에 의한 국가규제와 자치에 의한 자주규제로 양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간의 법적 규제부분보다는 자주적 규제에 의존했던 입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즉 현대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국가 권력의 사적부문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회계문제에 있어서도 법률과 권력의 개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

59) Frederic R. Sanborn, *Origin of the Early English Maritime and Commercial Law* (New York: The Century Co., 1930, pp. 400-401(小澤康人, 『前掲書』, p. 56).

60) Frederic Pollock and Frederic Maitland, *The History of English Law Before the Time of Edward I* (London: Cambridge Press, 1895), Vol. I, p. xxiii.(小澤康人, 『前掲書』, p. 56)

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자치·자주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법·국가규제를 통하여 회계제도를 전체적, 효율적 체계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회계제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1985년 및 1989년의 양회사법의 제정과 1990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조치를 보면 회계제도에 있어서 법·국가규제의 범위가 일찍이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¹⁾

4) 地方政府 및 公企業會計의 發展

이태리 상인들이 복식부기 “창안자”로 인정받는데 반해 영국기업은 현대 재무보고실무에 대한 先導者(instigator)로 여겨질 수 있다. 즉 산업혁명의 결과 사람과 재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수송망 개발과 소규모 공장 단위를 대규모 생산제조공장으로 점차 대체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적 혁신을 탐구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회계기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19C 중엽부터 지방정부당국은 물, 가스, 전기 및 지하철 같은 “상사용역” 제공에 대해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에 필요한 회계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⁶²⁾

따라서 영국의 회계발전은 중세의 엑스체커파이프롤이나 장원만을 가지고 설명될 수 없다. 초기 재무보고 발전에 대한 검토와 관련한 중요한 “기업” 조직은 공익기업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런 기업들은 물, 가스, 전기, 수송(철도, 지하철 및 버스)과 같은 중요한 공공재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조직들은 손익을 커버하였고 그들의 역할도 다양하여 금전을 모으고, 지불하고, 차입하고, 상환하고, 지방세를 부과하고 회계장부를 만들고, 그들을 감사하는 등 회계와 관련된 정부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수탁(stewardship)의 책임(charge)과 해제(discharge)라는 회계활동이 필요하였고 이와 관련된 회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⁶³⁾

5) 基準設定의 民主的 合理性

영국에서 회계기준이 처음으로 중요시된 것은 산업혁명의 시대로서 공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에 맞는 회계이론과 기술이 필요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것이 최초 영국 회계기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후 영국의 회계기준은 주로 자치규제에 의한 체제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의 기준 설정 과정은, 1970년 당시부터 몇 차례 개정되고, 점차 공개의 정도가 높아져 왔으며 현재의 설정 과정은 1983년부터 실시해 온 것이

61) 田中 弘, 『イギリスの會計制度-わが國會計制度との比較検討-』, 中央經濟社, 1996, pp. 1-137.

62) John Richard Edwards, "Companies, Corporations and Accounting Change, 1835-1933: A Comparative Study",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 23. No. 89, 1992, pp. 59-73.

63) R. H. Jones, Accounting in English Local Government from the Middle Ages to c.1835, in R. H. Parker and B. S. Yamey ed., *Accounting History- Some British Contributions-*, Clarendon Press(Oxford), 1994, pp. 376-403.

다.

영국 회계기준의 특징은 우선 기준설정과정에서 많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정책 당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폭 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설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① 테마의 선택시 재무제표 이용자로부터의 요망을 특히 배려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 충분히 협의한다.

② 연구테마가 결정되면, 학자, 회계사 그룹 또는 회계사 사무소 등에 조사 연구를 위탁한다. 이 단계에서는 외국의 회계기준이나 문헌의 조사, 현행 실무의 조사, 문제점이나 있어야 할 제방법의 세밀한 조사 등의 작업이 행해진다. 조사 결과는 공표되기도 한다.

③ 작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의 테마마다 공개초안(exposure draft : ED)의 기초를 담당하는 작업위원회(working party)를 편성한다.

④ 토의자료 또는 취지서를 공표하여 기준안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각도·입장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를 위하여 토의 자료(discussion paper) 또는 취지서(statement of intent : SOI)가 공표 된다.

⑤ ASC와 작업 위원회는 사전협의를 하고 초안의 기술적인 내용과, 의견조회계획을 표시하고, 승인 또는 수정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통산성, CCAB 각 단체, 각종 이해 관계자그룹과의 협의, 공청회, 기자회견 등이 계획된다.

⑥ 예비적 초고의 기초를 위하여 제외국의 기준 설정기관(미국의 FASB 등)이나 IASC의 기준 설정 계획의 유무, 그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과 의견 교환을 행한다.

⑦ ASC가 처음으로 초안을 검토하고 회계사 단체의 기술 위원회, 회계사 사무소 등에 (약1,000부)송부되어, 주로 회계사의 의견이 청취된다.

⑧ 공개초안을 ASC의 이름으로 6개월 동안 초안을 공표한다.

⑨ 공개 기간이 종료하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

⑩ 작업 위원회는 보내 온 코멘트를 검토하고, 그 요약과 작업 위원회의 의견을 ASC에 전달한다.

⑪ ASC는 승인한 기준안을 6개의 CCAB 구성 단체의 이사회에 송부하고, 이것을 확정기준으로서 승인하도록 권고한다.

⑫ ICAEW는 다른 5개의 단체의 이사회가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확정공표기준을 승인한다.

이처럼 영국의 회계기준 설정절차는 모든 이해당사자와 회계전문가 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주체의 선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확정안이 결정될 때까지 신중하고 합리적인 적정절차를 두고 있어 이론과 실무를 정합하여 제정되므로 수용성이 높은 회계기준을 형성하는데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3. 獨逸

가. 獨逸 企業會計의 發展과 現況

1) 商法上の 會計處理基準

독일은 전형적인 실정법 국가로서 商人 즉 法人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商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문제도 상인에 관한 계산문제로서 일찍이 상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모든 상인에 대한 회계업무를 통괄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의 경우와 특히 다르다.

독일의 상법에서는 상업에 영위하는 자를 商人이라 하고 (상법전제1조제1항) 소득세법 제 5조에서는 完全商人(Volokaufleute)이라 하여 소재지관할법원의 상업등기부에 상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일체의 자연인, 인적상사회사(OHG, KG) 및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완전상인에 속하는 주식회사(AG),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등기된 조합은 形式商人(Formkaufleute)이 된다 (상법전제 6조제2항).

상법전제 238조 제1항에 의하면 일체의 상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그의 장부상에 상거래나 재산상태를 正規簿記의 原則(Grundsätze ordnungsmässiger Buchführung: GoB)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할 의무가 있다. 독일에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별도의 GAAP가 발전되지 않고 商事上 計算에 관한 사항을 商法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회계를 전개하여 왔다. 그후 수차례의 상법개정을 통하여 상법의 계산규정을 발전되어 왔고 최근 1985년도 상법 개정에서는 지금까지의 상법상의 계산규정을 별도의 會計補充規程을 두고 여기에서 체계적·전체적으로 상업계산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회사(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는 상법전제 264조에서 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말에 정규의 부기의 원칙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결산을 행하여 연도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독일의 상법은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회계를 전개하여 왔던 것이다.

2) 正規簿記의 原則의 尊重과 그 內容

독일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정규부기의 원칙(GoB)으로서 상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일체의 기업이 회계처리에 있어서 따라야 할 회계에 관한 기준이 되어 왔다. 이는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으로 불리는 것에 해당되며 그 처리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미국의 GAAP에 대응할 정도로 매우 방대하고 자세하다. 특히 독일에서는 1985년 12월 19일 貸借對照表法(BilanzrichtlinienGesetz)에 의하여 獨逸商法(Handelsetzbuch) 第3編에 대로 도입된 會計補充規定을 가지고 있어 株式會社와 有限會社 등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본문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⁶⁴⁾

64) 이형규, 『獨逸會社法』, 한국조세연구소, 1996, p. 233.

가) 正規簿記 原則의 尊重

상법전제 264조에 의하면 일체의 상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그의 장부상에 상거래나 재산상태를 正規簿記의 原則(Grundsätze ordnungsmässiger Buchführung: GoB)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즉 상법전제 264조 제1항에서는 「자본회사⁶⁵⁾의 법정대표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일체를 이루는 부속명세서를 추가하여 연도결산서(제242조)를 확정하고 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에서는 「자본회사의 연도결산서는 正規의 簿記의 原則을 준수하여 자본회사의 재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의 실질적 관계에 합치하는 상황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상인은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기장을 하고 또한 그 내용은 진실되어야 한다는 진실성의 원칙도 함께 담고 있다.

나) 項目分類에 관한 一般原則

상법 제265조에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항목을 분류하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속성의 원칙: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작성 형식과 항목분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② 비교성의 원칙: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전년도와 비교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명료성의 원칙: 자산 또는 부채는 명료하고 일목요연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구분계산의 원칙: 복수 영업부문이 있는 경우 결산서상 항목분류규정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항목을 다시 세분하는 것도 인정된다.
- ⑤ 구분변경의 원칙: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 항목의 분류 및 명칭은 자본회사의 특수성에 맞도록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
- ⑥ 중요성의 원칙: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 숫자의 분류 및 명칭은 명료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할 수 있다.

다) 貸借對照表

상법 제266조에서 제273조에 걸쳐 대차대조표의 항목분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계정식 작성을 하도록 하고 차변항목과 대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모의 규정을 두고 소규모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267) 기타 개별적인 규정으로 총당금, 자기자본 등의 표시, 준비금항목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65)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를 말한다.

라) 損益計算書

상법 제275조에서 제278조에 이르기까지 손익항목에 대하여 그 분류와 기재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손익계산서는 총원가법 또는 매출원가법에 의하여 보고식으로 이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양식과 같은 기재방법과 배열순서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마) 評價規定

상법 제279조에서 제283조에 이르기까지 평가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들이다. 특히 상법의 평가규정과 세법상의 감가상각규정이 다르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법과 세법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바) Konzernabschluss 및 Konzernlagebericht

독일의 상법은 특히 기업집단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보고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법 제290조에서부터 제315조에 걸쳐 Konzernabschluss 및 Konzernlagebericht를 작성할 의무자, 연결의 범위, Konzernabschluss의 내용 및 형식, 연결제원칙, Konzern에 편입된 제자산과 부채의 평가규정 및 그 차액의 처리, Konzern부속명세서, Konzernlagebericht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獨逸 企業會計의 特徵

독일의 소득세법 제5조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장 및 정기적으로 결산을 해야 하는 영업자는 사업연도말에 있어서 商法上の 正規의 簿記의 原則에 따라 표시되는 사업용재산을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商事貸借對照表의 稅務貸借對照表에 대한 基準性的 原則」의 근거법조문이 되고 있다. 즉 법인세를 산정하는 세무대차대조표는 상법상의 상사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므로 기업회계는 상법상의 회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기업회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의 계산규정이 회계기준이 되며 이는 곧 미국의 GAAP에 상당한다.

독일의 회계체계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GAAP로서의 회계체계가 아니고 企業法과 商法上の 實定法 體系를 취함으로써 미국에서의 회계이론과 기법의 발전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일찍이 기업이 준수할 회계기준은 기업법과 상법상의 회계기준에 의하였고 세무회계에서도 이러한 상법상의 회계기준에 일치하려는 소위 「기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⁶⁶⁾ 이는 「질서를 존경하는 상인의 관습」

66) Holzer. H. P.,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In West-Germany," *The Accounting Review*, vol. 34, July 1959, p. 340.

에 따른 것으로 독일은 미국과는 다르게 GAAP가 따로 발전되지 않았고 상법에서 이익계산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설정해 줌으로써 實定法國家 답게 상법이 주도하는 회계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회계가 商法の 규정에 의하여 발전된 이유는 독일의 회계문제는 주로 기업의 破産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로부터 脫退시 적정한 지분을 보장받기 위한 법률적 판단 즉 裁判上の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회계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⁶⁷⁾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수주의적 원리와 정규의 부기의 원칙에 의하여 전개되는 특성을 가진 독일회계의 기본은 利害調整機能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회계는 자연발생적인 GAAP형태를 가지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情報提供機能을 중요시하고 있어 미국과 독일의 회계규준은 그 정신과 방법에 있어서 다르다.

최근 1985년도 상법 개정에서는 지금까지의 상법상의 계산규정을 별도의 會計補充規程을 두고 여기에서 체계적·전체적으로 상업계산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GoB의 원천은 (一) 優秀한 商人의 商慣習이 되어 있고 또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適正한 會計實務, (二) 法律 및 判決(상법, 세법, 판결), (三) 官廳의 諸通達, 民間 專門家團體의 勸告나 意見, (四) 會計問題에 관한 會計理論이나 科學的 論議 등이다.⁶⁸⁾ GoB는 매우 방대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미국의 GAAP에 못지 않을 만큼 방대하고 상세하다.

4. 日本

가. 日本 企業會計의 發展과 現況

1) 戰前의 企業會計基準 設定 運動

오늘날과 같이 현대적 회계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회계제도가 확립되는 데에는 戰前(제2차세계대전전)의 회계기준설정운동을 거쳐 전후의 「企業會計原則」이 설정되기까지 몇 단계의 시대적 구분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즉 이 기간 중 1930년대는 재무성에 의한 산업합리화 독려에 의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주어졌고 1937년 중일전쟁 촉발 이후에는 주로 해군과 육군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40년에서 1945년간의 회계규제는 일본 재벌의 이익추구를 제한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모든 경제자원의 국가적 총 동원의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에 강력한 회계통제권이 주어 졌다. 이 과정에서 육군성에 의하여 군수산업의 회계의 통일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이 추진되었다. 후에는 재무성이 기업회계통제의 중심으로 대체된다. 일본의 회계기준은 정부, 통제회, 개별기업 등의 협력에 의하여 2단계로 협조가 이루어져 왔

67) R. Borkowsky, 松尾憲橋, 鈴木義夫 共譯, 『ドイツ會計學說史』, 森山書店, 1981, p. 4.

68) Wöhe, Bilanzierung und Bilanzpolitik, 6 Auflage, Verlag Franz Vahlen, 1984, S. 157-158, 井上康南, 『西ドイツ法人稅會計論』, 白桃書房, 1988, p. 21.

다.⁶⁹⁾

일본에서의 회계기준설정의 움직임은 1934년(昭和 9년) 商工省 臨時産業合理局 財務管理委員會의 「標準貸借對照表」의 공표에서 시작된다. 동 위원회는 그후 자산평가 등의 규칙초안의 공표를 거쳐 1934년(昭和 9년)에는 「재무제표준칙」, 다시 1936년에는 「재산평가준칙」,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제조원가계산준칙」을 정하여 공표했다.⁷⁰⁾ 그런데 이들 기준은 당시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産業(기업경영)·合理化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中日戰爭·태평양전쟁 중에는 국가의 경제통제를 목적으로 육해군 및 企劃院 재무제표준칙통일협의회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이 제정 공표되었다. 그러나 戰前 및 戰中에 공표되었던 이들 제기준은 국가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내용적으로는 영국이나 독일의 회계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⁷¹⁾

2) 戰後 美國 會計基準의 導入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점령군이 일본에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이하 GHQ라 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해 11월 최고사령관 각서 「持株會社の解體에 관한件」에 따라 재벌해체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GHQ는 재벌과 관계가 있는 회사 및 기타 주요회사 등 1,200여 회사를 「제한회사」(회사해산제한령에 근거를 둔 회사)로 지정하고 이들 회사의 재무상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당시 미국은 1933년 證券法을 제정하고 1934년 및 1947년 3월 證券去來法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바 GHQ는 同法에 기초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될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을 당시의 재무제표표준양식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무상황조사의 주된 자료가 되는 각 회사 재무제표의 용어·양식에 통일성이 없었고 재무제표 숫자의 기초가 되는 회계처리기준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많았고 제출대상회사도 재벌회사 및 제한회사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증권시장에서의 기업내용공시를 위한 재무제표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GHQ는 부득이 재무제표의 작성방법의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1947년 12월, 「工業會社 및 商事會社の財務諸表作成에 관한指示書」(Instruction for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of Manufacturing and Trading Companies)(이하 「지시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GHQ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작성은 이 「지시서」에 의할 것을 관계 각 회사에 요구하였다.⁷²⁾

69) Junichi Chiba, Japanese Experience of Corporate Accounting Control C. 1939-1945, *Accounting, Business and Financial History*, Vol. 6, No. 2, 1996, pp. 163-182.

70) 黑澤清, 『日本會計制度發達史』, 財經詳報社, 1990, p. 190.

71) 權泰殷 譯, 『比較會計論-아시아諸國의 경우-』, 法文社, 1990, p. 80.

72) 「지시서」는 GHQ 경제과학국조사통계과의 헤슬러씨(Hessler, William G.)와 經濟科學局 囑託인 村瀬玄씨에 의해 겨우 3주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村瀬玄, 「日, 英, 米, 三國における會計原則制定の由來」 『企業會計』 第6卷 第1號 (1954. 1), p. 112; 日本公認會

「지시서」서론에서 「서양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습관에 따라 공업 회사 및 상사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지시」라고 하여 미국의 기준(SEC규칙 S-X)을 채용한 점이 많고 종래 일본의 기준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⁷³⁾

1948년 6월 각의의 승인에 따라 「기업회계제도대책조사회」가 經濟安定本部에 설치되었다. 1949년 7월 기업회계제도대책조사회는 중간보고로서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준칙」을 공표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기업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그 통일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회계제도 특히 1930년대의 회계기준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기업회계원칙」은 이후 「재무제표규칙」의 제정과 상법 및 세법의 개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회계기준법의 제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기업회계원칙은 회계기준법의 정신, 즉 법적 제도적 근거 하에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제기준을 상세히 구체화하고 이것을 사회일반에 공표하여 대상회사 등에 권고하려고 기도하였다.⁷⁴⁾

「기업회계원칙」은 그 설정목적에 따라 ① 법령은 아니지만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회계기준, ② 공인회계사 감사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③ 제법령의 제정 개폐에 있어 존중해야 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되어 있다.

3) 「企業會計原則」의 商法·稅法改正에의 影響

미국 GHQ의 「지시서」에 의하여 설정된 일본의 「기업회계원칙」은 그후 상법 및 세법의 개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미국식 기업회계가 「기업회계원칙」을 통하여 일본의 법령에 계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원칙의 개정은 경제안정본부 企業會計基準審議會(전의 기업회계제도 대책조사회)에 의해 1951년 9월에 공표된 「상법과 기업회계원칙과의 조정에 관한 의견서」(이하 「상법조정 의견서」라 한다) 및 「기업회계원칙과 관계 제법령과의 조정에 관한 連續意見書」(이하 「연속 의견서」라 한다)등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기업회계원칙」은 세법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50년 샤푸프의 권고에 기초한 세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賦課徵收制度의 폐지, 申告納稅制度의 전면적 채용이라는 조세제도 면에서의 근본적 개혁이었는데, 특히 「기업회계원칙」의 사고방식을 대폭 수용한 세법개정이었다.⁷⁵⁾

1952년 6월, 기업회계기준심의회는 「세법과 기업회계원칙과의 조정에 관한 의견서(소위원회보고)」(이하 稅法調整意見書라 한다)를 공표하여 「기업회계원칙」과 세법과의 사이에 아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분명히 하고, 세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세

計士協會編, 『會計・監査資料』(同文館, 1977), p. 219.

73) 권태은, 『전개서』, pp. 81-83.

74) 黒澤清, “企業會計制度の發展と企業會計原則の役割”, 『企業會計』 第30卷 第12號, 1978.11, p.11.

75) 武田昌輔, 「稅制」 『會計ジ-ナル』 第12卷 第2 號(1980.1, 臨時増刊 「戰後會計制度史」), p. 28.

법조정건의서는 조세목적에 위한 회계원칙의 적용,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과의 구분 등을 세법에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후 1959년·1964년·1965년에 「기업회계원칙」 및 상법에 따른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66년 10월 大藏省企業會計審議會(기업회계기준심의회는 大藏省에 이관된 후 명칭을 변경함)는 세법조정건의서를 공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조정문제 검토의 입각점을 기업회계원칙의 입장뿐만 아니라 가능한 세법상의 과세소득계산의 원칙도 고려에 넣어 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업회계원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서술하고(前文 2), 총론으로서 세법상의 적정한 기업경리의 존중, 기업의 회계실무에 있어 계속성의 중시 및 기업회계원칙에서의 문제, 그리고 각론으로서 회계방법 선택의 자주성, 중요성의 판단의 탄력성 등이 취급되고 있다. 세법조정건의서는 「과세소득이 기업이익에 기초를 두고 산출되는 이상, 기업이 채용하는 회계방법이 부적당한 것이 아닌 한, 기업이익을 과세소득의 기초로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서술하고, 납세자가 계속적으로 건전한 회기관행에 의해 기업이익을 산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은 당해 기업이익에 기초하여 산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둘 것을 세법에 요망했다.

1967년의 세법개정은 이 의견서의 취지를 받아들여 법인세법에 「...당해 사업년도의 수익액 및 전항 각호에서 언급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의해 「기업회계원칙」의 취지가 대폭적으로 세법에 반영되게 되었다.

4) 商法の 企業會計原則에의 影響

일본의 기업회계원칙은 당초 상법 및 세법의 개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나 특히 1955년 경에 이르러 반대로 「기업회계원칙」이 상법과 세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기업회계원칙」은 1954년에 수정되고, 18개의 注解가 붙게됨과 동시에 상법과 세법의 개정 결과로 생긴 용어의 부적당, 그리고 字句의 不統一點 등이 개정되었던 것이다.⁷⁶⁾ 이어 1963년 11월에 기업회계원칙이 强行法規인 상법의 규정과 달라 다시 기업회계원칙을 일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65년대에 들어와 기업의 粉飾決算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1969년 12월 法制審議會商法部會로부터 「주식회사감사제도개정요강안」이 공표되었다. 여기서는 공인회계사 감사를 상법감사에 넣어 상법감사를 강화하는 것을 개정 중점의 하나로 하였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회계기준을 일치 시킴으로써 상법감사와 증권거래법감사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기업회계심의회는 상법의 계산규정과 「기업회계원칙」과의 조정문제에 대한 심의를 하여 1969년 8월에 먼저 수정을 위한 試案을 공표하고, 이에 손질을 가해 동년 12월에 「수정안」을 공표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상법개정의 국회심의가 늦어져 1974년까지 5년 정도 보류되어 있었다.

76) 상세한 것은 黑澤清의, 『解説企業會計原則』 (中央經濟社,1954)을 참조.

1974년 4월 마침내 상법이 개정되고 재산목록제도가 폐지되어 「공정한 회계관행」의 斟酌規定, 자회사주식의 평가에 대한 低價法採用禁止規定 등이 만들어졌다.

나. 日本 企業會計의 特徵

1) 短期間 內 會計制度의 轉換

일본은 敗戰前까지만 해도 모든 사회제도는 大陸法系 국가로서 실정법 위주의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회계제도 역시 종래 대륙계통의 獨逸의 영향을 많이 받아 商法上의 계산규정에 의한 회계 즉 「正規의 簿記의 原則(GoB)」에 의하여 주도되었었다. 그러나 敗戰 이후 美軍政 治下에서 많은 사회제도를 개혁하였고 이 과정에서 美國式의 사회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상법의 계산규정에 의하여 수행되던 회계가 이제는 상법이 기업회계원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이어 세법에서도 기업회계원칙을 상당히 받아들임으로써 기업회계가 기업의 회계기준으로 위치를 자리잡게 되었다. 그후 1962년의 상법 개정에서는 기업회계원칙을 대폭 수용하게 되었고 이때 實踐規範으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기업회계원칙과 強行法規로서의 상법과의 調整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1969년에는 「商法監査」와 「證券去來法監査」가 일원화됨에 따라 상법상의 계산규정과 기업회계원칙과의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대두되었다.⁷⁷⁾ 이를 계기로 여러 가지 회계연구들이 제시되어 오늘날의 일본 會計制度가 확립하게 되었다.

2) 稅務會計의 優位

샤프권고에 의한 세법개정 뒤 소득 계산기준은 행정청 통칙 등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즉 1950년(소화 25년) 법인세 기본통칙 제정, 1951년(소화 26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의 산정방식」(대장성 주세국)의 공개 등, 1960년(소화 35년)까지의 기간동안에 행해진 감가상각 관계통칙, 원가차액 조정통칙, 채권상각 특별계산 통칙, 압축기장, 이연비용등 통칙, 할부판매 등 통칙, 고정자산 취득가액 통칙, 반품 등 통칙, 청부손익 통칙, 재고자산평가 통칙 등의 일련의 통칙이 정비되었다. 이들은 재무회계 원리의 도입이라고 하는 의미로 세법의 近代化와 精密化를 실현하였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확정결산주의의 기초에 있어서 재무회계 실무에 대한 간접강제의 작용을 초래하여 재무회계에 대한 세무회계의 지배를 한층 더 강화하는 기능을 내재하고 있었다.⁷⁸⁾

전후 일본은 기업회계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기업회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기업회계보다는 세무회계가 우선하는 회계환경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패전 후 일본의 전후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 등이 세법조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업계에서는 세무회계에 대한 영향력을 우선시 하였고

77) 嶋村剛雄, 『會計制度史料譯解』, 白桃書房, 1985, pp. 2-3.

78) 井上久彌, 「企業課稅原理と會計基準の交錯」, 『企業會計』, '90 vol. 42 No. 5, p. 15.

둘째, 일본사회는 미국의 사회처럼 기업회계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회계풍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는 압력이 미국처럼 강하지 않아 기업회계의 위력은 미국보다는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3) 活潑한 會計研究의 展開

일본 회계는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맞으며 변천하여 왔다. 원래 대륙법계 국가로서 일본의 회계도 기본적으로 독일처럼 상법회계에 의존하였고 주요 회계기준도 상법의 계산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었다. 이런 가운데 世界大亂中 또는 戰爭直後 전시 재원조달과 전후 복구를 위하여 세법 독자적 회계규정이 주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패전후 미국의 샤프사절에 의한 세계개혁권고에 따라 미국식의 회계사상이 대신 들어서면서 대륙식 독일회계에서의 탈피와 세무회계보다는 기업회계를 우선하는 미국식의 회계가 우월된 자리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에 일본의 회계제는 급속한 전환을 강요받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많은 회계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갑작스런 회계제도의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충격을 흡수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와 관련된 각 단체들에서 활발하게 회계연구를 전개하여 왔다는 점은 일본의 회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의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격변기의 일본 회계를 정비해 나간 회계단체들로서는 日本會計研究學會, 日本會計士協會, 證券管理委員會의 會計審議會, 稅制調査會 등을 들 수 있고 이들 단체들은 활발한 회계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일본에서 적용 가능한 재무회계의 이론과 실무를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당면하여 논의가 되던 회계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서들이 발간되면서 일본의 회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작업이 충분히 진행된 것이다.⁷⁹⁾ 그 중에서도 새로운 회계제도가 商法 및 稅法과 충돌하는 부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꾸준히 조정하려는 연구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⁸⁰⁾

이러한 연구결과 현재의 일본식 회계이론과 실무를 개발하여 자연스럽게 일본의 회계제도가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를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일본의 세무회계와 우리나라의 세무회계와 다른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찍이 企業會計審議會(전신인 기업회계제도대책조사회, 또는 기업회계기준심의회 등)가 증권행정의 책임자인 대장대신의 자문기관으로서 동 대신에게 건의한 의견서를

79) Kyojiro Someya, *Japanese Accounting - A Historical Approach*, Clarendon Press Oxford, 1996, pp. 11-21.

80)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 사항들을 처리할 개념적 구조 틀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회계정책과 제도화 과정에서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하여 회계발전이 뒤지고 있는 것이다.

통하여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발표하여 왔다. 1951년 9월 「商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의 발표를 시발로 하여 1990년 5월 「선물·옵션거래 등의 회계기준에 관한 의견서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견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왔다.⁸¹⁾ 이중 세무회계와 관련된 주요 의견서는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1960년대의 것이지만 이들 의견서는 지금도 세무회계문제에 있어서 계속 인용되는 심층적인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 ① 「商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1951. 9.)
- ② 「稅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小委員會報告書)」(第1次報告書: 1952. 6.)
- ③ 「企業會計原則과 關係諸法令과의 調整에 관한 連續意見書」-第一次 意見書(1960. 6.)
- ④ 「企業會計原則과 關係諸法令과의 調整에 관한 連續意見書」-第二次 意見書(1962. .)
- ⑤ 「稅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第二次 報告書)(1966. 10.)
- ⑥ 「企業利益概念과 課稅所得概念과의 關聯에 관한 意見書」(1967. 2.)

한편 일본 회계학회를 중심으로 會計研究學會에서도 계속 연구보고서를 공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忠佐 市, 1973)

- ① 【特1】 「企業利益과 課稅所得과의 差異 및 그 調整에 대해서」(1965. 7.)
- ② 【特2】 「企業利益과 課稅所得과의 差異 및 그 調整에 대해서」(1966. 5.)
- ③ 【特3】 「稅務會計의 基本問題에 관한 研究-稅法所得計算原理의 解明과 批判」(1967. 5.)
- ④ 【特4】 「課稅所得의 計算에 관한 研究」(1968. 5.)
- ⑤ 【特5】 「稅法上の 充當金.準備金 등에 관한 研究」(1969. 5.)
- ⑥ 【特6】 「公正妥當한 會計處理의 基準에 관한 研究」(1970. 11.)
- ⑦ 【特7】 「商法과 稅法과의 관련 등에 관한 研究」(1971. 9.)

이들의 연구는 일본회계의 개념구조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하기 위한 연구로서 회계기준과 회계정책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개념적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자주 인용되고 있는 심층적 연구들이다.

8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大雄令純 著, 權泰殷 譯, 「比較會計論」, 1990, 법문사, pp. 80-109 참조 요.

Ⅲ. 各國의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와의 關係

1. 美國

가.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와의 關係

1) 稅法 規定의 變遷

가) 課稅所得 算定에 關한 會計規定의 生成

기업회계의 적용과 관련이 되는 미국의 연방소득세는 비교적 최근에 확립되었으나 그 이전 17, 18세기 식민지시대에 노동자, 숙련공, 수세공품장 등이 가진 숙련 재능에 대한 과세로서 기능세(faculty tax)가 있었다.

미국의 소득세는 유럽에서와 같이 전시 재정을 급박하게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출발하였다. 즉 1812년의 영미전쟁(the War 1812~1815)에서 소득세의 제정이 제안되었는데 제정되기 전에 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크게 중요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전쟁(the Civil War 1861년~1865년)의 발발로 전례없는 재정 수입이 필요하였고,⁸²⁾ 이를 위하여 1861년 최초의 연방 소득세 법안이 상정 통과되어 1862년 시행되었다⁸³⁾.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차소득 및 과세자산의 명세표를 제출하여 과세받도록 되었다. 이를 위하여 납세자는 자기장부를 기록하는 관습이 이루어지고 이는 곧 세무회계 탄생의 계기를 마련되었고 과세소득의 개념도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세무회계도 남북전쟁의 전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가 과세물건으로 채용되면서 그 기초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⁸⁴⁾

나) 所得稅法의 確立과 企業會計와의 相互影響

미국의 소득세제는 당연히 영국 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⁸⁵⁾ 그러나 식민시대에는 소득세는 존재하지 않았고 최초 연방소득세가 1861년, 남북전쟁(1861~1865)시 입법화되었으나 결함이 많아 본격적인 실시는 되지 못했다.

82) 當時의 政府의 歲出은, 1867년에는 67,000만 달러이었지만 1862년에는 45,000만 달러로 急增하고, 1863년에는 715,000万달러, 1864년에는 865,000万달러, 그리고 1865년에는 1,300,000万달러로 비약적으로 上昇 하고, 5年 전의 19倍에 달했다(Dubroff H., *ibid*, p. 3).

83) U.S. Statutes at Large by Authority of Congress, Act of August 5, 1861, ch. 45, § 49, 12 Stat., p. 309; Act of July, 1862, ch. 119, § 89, 12 Stat., p. 473.

84) Previts G. T. and Meino B. D., *A History of Accounting in America*, John Wiley & Sons, Inc., 1979. p. 65

85) Chatfield M.,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p. 203.

19세기의 제3·4반기 이후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재정은 불안정하였고 또 당시 재정수입 중주요재원은 간접세(관세)로서 소득세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1894년 남북전쟁시의 세제를 모델로 소득세제를 시행하였다. 당시 개인소득 및 법인소득에 과세하였으나 법률불비로 최고법정에서 헌법위반이 선언되어 좌절하였다.

1909년에는 헌법위반을 피하려는 법인소득세를 가장한 법인면허세가 제정되었다. 법인면허세는 기업경영을 위하여 법인형태를 이용하는 특권에 기초한 면허세이나 사실은 소득세제와 같은 것으로 1911년에 최고 법정에 의해 합헌으로 지지되었다.⁸⁶⁾ 이를 근거로 헌법 제16조의 개정을 통하여 1913년 10월 3일, 세입법(Internal Revenue Act)에 소득세의 절을 두고, 소득세 입법화에 성공하였다.

1913년 연방 소득세법의 본질적 사고는 현재 세제의 기초가 되고 있다. 한편 당시 회계실무 또는 기업회계의 발달에 의하여 회계학의 학문적 환경이 정비되었었고 이것이 연방 소득세의 회계규칙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발함에 따라 미국이 이에 개입하게 되었고 전비조달을 위하여 소득세율이 대폭 증가하는 등 조세정수조치들이 세워졌다.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 미국이 참전하면서 납세의무자는 더욱 증가하여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증가와 과세소득 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회계사들도 증가하였고 따라서 연방소득세법의 회계규칙이 정비되었다.

고세율과 누진소득과세 그리고 조세정책적인 제반 세법조항들은 새로운 세무회계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회계관습이나 회계원칙의 영향을 벗어나고 있었다.⁸⁷⁾ 그것은 1954년 세입법에서 자본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에 자극을 주기 위한 가속상각법(accelerated method)을 채용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동 가속상각법에 의한 조세절약은 산업금융의 주요 원천이 되었고 이는 무이자외채의 정부 대부금과 같은 효과를 가짐으로써 성장기업에서는 공공연하게 인정되었다⁸⁸⁾. 결국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보다 세무회계에 의한 결산을 택함으로써 세무회계 기업회계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실무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조세상의 이점을 받아들여려고 하였다.

다) 所得稅法에 대한 企業會計의 干涉

1909년의 국세 법안은 연방 정부가 위헌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패막으로 법인면허세의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법인소득세였다. 그래서 법문안도 매우 애매하여 당시의 미합중국 법무장관 Wickersham George S.는, 법률가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법인의 현금 수령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계사에 있어서는 용어의 정의가 없고, 또 손익의 결정방법의 규정도 바람직한 회계원칙에 준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는 법안이었다. 그래서 뉴욕 거주 회계사들은 순소득 산정을 위

86) Flint v. Stone Tracy co., 220 u. s. 107, 1911.

87) Chatfield M., ibid., p. 208.

88) Sidney Davidson, "Accelerated Depreciation and the Allocation of Income Taxes", *The Accounting Review*, Apr., 1958 pp. 173-80.

한 회계연도의 결정, 순소득의 개념과 범위, 수입과 지출의 범위와 인식기준, 감가상각 방법 등에 있어서 법안에 미비점이 많다는 것을 연서로 작성하여 의회의 각 멤버 및 법무장관에 서간을 보내고 수정을 요구했다.

동법은 법안의 불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시행되었지만 현금주의에 따라 「실제순소득」을 산정하도록 한 불합리성은 재고되어 결과적으로 재무성은 통달(regulation)을 통하여 법률과 상반되는 발생주의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재무성의 통달에 의한 회계규정의 탄력적 운용은 세무회계에 있어서 회계관행을 인정한 것으로 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1913년 Wilson Woodrow는 당시의 관세제도가 간접세로서 자유경쟁 및 소비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관세절하법안을 채용하고 그에 따른 세입감소를 소득세에 의해 조달하기로 하는 소득세법안을 제출하였다.

회계사들은 1909년의 법인세 제정 때 회계를 무시한 세법규정의 문제에 대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1913년의 소득세의 시행에는 막대한 관심을 보였다. 공인회계사들은 새로운 소득세법의 기초로서 많은 납세자에게서 납세신고서의 작성을 의뢰받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법률용어 및 과세규정에 주목하고 의회에 여러 가지 회계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시 의회에서도 회계사단체들의 조언에 경청하여 회계사들의 권고를 받아들였다.⁸⁹⁾

1913년의 소득세법에 잠재하여 있는 기본적 사고는 대부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회계사의 직업회계로서의 지위향상도 1913년의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의 시행을 맞이하여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사는 정부와 납세의무자와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어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직업 회계인에게 세무절차를 맡길 수 있는 관행이 인정됨으로써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서의 작성을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⁹⁰⁾

라) 現行 所得稅法 規定

미국의 경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이하, GAAP회계라고 부름)와의 관계를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그 출발점은 1918년 법인세법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규정을 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한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Sec. [446(a)]

일반원칙--과세소득은, 납세자가 자기의 장부에서 정규적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기초에 둔 회계방법에 따라서 산정되어야 한다.

Sec. [446(b)]

(예외--만일 납세자가 이용해 온 회계방법이 정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그 회계방법이 이익을 명료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의 계산은 세입국장관이

89) Editorial, "A Federal Income Tax", *The Journal of Accountancy*, XV, January, 1913, p. 60

90) "Income Tax in the U.S.", *The Accountant*, XLIX, Dec., 1913, p. 861

이익을 명료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상기 미국의 세법규정을 분석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소득의 기초는 납세자가 정규로 채용하고 있는 회계실무를 중요시하고, 그 실무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방법에 기초를 둔 것이라면 납세자의 회계방법에 따른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과세소득 산정을 회계실무에 위임한 것이며⁹¹⁾ 이는 곧 세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GAAP)에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⁹²⁾ 즉 세법은 과세소득 산정의 기초에 GAAP회계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둘째, 과세소득의 산정을 통상 기업이 이용하는 회계방법에 따른다는 규정은 과세소득의 결정이 회계전문가에 위임한 것을 의미하고, 회계전문가 단체에 의하여 전개된 회계원칙 및 개념은 세무목적 및 재무제표목적의 이익결정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⁹³⁾.

셋째, 여기서 GAAP에 "따른다"(under the method of accounting)는 의미는 회계기준을 이용하되 그에 따른 문제점은 과세자 즉 세법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그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참작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이용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뜻은 Sec. [446조(b)]에서 납세자가 (1) 정규적으로 사용한 회계방법인지, (2) 계속 사용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계방법이 납세자의 이익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과세자의 판단에 의한다고 유보한 것이다.

넷째, 미국의 과세표준과 관련한 회계기준의 수용관계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에 의하되 그것이 납세자의 소득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납세자의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포함하는지 또는 단순히 기업회계상의 이익의 산정에 관하여서만 적정반영여부를 논의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섯째,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GAAP가 세무회계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 세무회계는 GAAP회계와 동일하지 않다. 세무회계는 GAAP회계에 의거하며 세무회계의 방법에 근거를 부여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독자적 계산 규정이나 처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GAAP회계와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둘러싸고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91) Lasser, J. K. and Peloubet, M. E., Tax Accounting V. Commercial Account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 April, 1949, p. 281.

92) Arnett, H. E., Taxable Income vs Financial Accounting; How Much Uniformity Can We Stand?,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9, p. 483.

93) Leslie, M., The Tax Accounting v.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ocedure, *The Journal of Accountancy*, February, 1951, p. 221.

2) 企業會計基準과 租稅法律主義와의 關係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세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과세표준 역시 중요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 즉 회계방법이 세법에서 독자적으로 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상기 미국 세법규정을 요약하면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처리가 그의 소득을 명확히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장부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 납세자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처리란 바로 기업회계를 의미하고 이는 곧 기업회계를 의미한다.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방법과 기준을 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에 따라 계산된 이익을 전제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업회계가 본래 하나의 行爲規範에 불과하지만 租稅法律이라는 強行法規의 수준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가 과연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조세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하여 완벽한 세법적 장치를 요구하는데 하나의 행위규범이 그대로 강행법규에 대치하여 적용되려면 사회적 신뢰와 함께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회계는 사회적 수용성과 함께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을 정도로 권위가 있으며 이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실질적인 요인이 된다.

나. 課稅標準 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論議

1) 企業會計의 稅務會計 基準性

미국의 회계원칙은 1909년 법인세에 대한 연방세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수백 년간에 걸쳐 學界와 實務界의 끊임없는 협조와 연구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으로 확립되어 미국의 법인세법에서 기본적인 계산규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세법상의 회계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회계의 이론과 기법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과세소득의 계산시 회계기준과 세법의 규정이 다른 경우 또는 양자가 2이상의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신고조정에 의하여(Reg. 1.446-1(a)(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도록 세무조정방법이 인정되어 왔다.

美國에서 GAAP가 활발히 전개된 상황은 慣習과 判例法이 우선하는 英·美 특유한 현상으로서 大陸法系인 獨逸, 日本, 韓國과는 차이가 있는 특징적 현상이다. 독일이나 일본,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GAAP가 형성되지 못하여 대신 商法이나 稅法 등 實定法에 의존하여 회계업무가 실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의 차이를 무시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논하게 되면 그 본질을 벗어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⁹⁴⁾

94) 국제회계연구에 있어서 국제간 비교가 어려운 것은 특정의 회계규범이나 규정이

2)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一致論爭

美國會計學會(AAA)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세 목적을 위한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무당국 또는 법원은 납세자에 의하여 계속 사용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수정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회계원칙이 세법의 지시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회계보고방법이 세법의 명령에 의하여 규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견지하였다.⁹⁵⁾ 즉 세법과 GAAP와의 독립성을 전제하지만 과세소득과 기업이익간의 차이가 축소되고 과세소득의 정의도 GAAP상 순이익에 가능한 접근시키는 것이 정부, 기업 및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므로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하여 왔다.

美國會計士協會(AIA)도 1953년 12월 10일 의회에 대한 권고서에서 입법에 있어서 세법규정을 GAAP와 일치시킬 수 있게 하기를 권고하였다. 즉 기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발전해 왔고 이러한 기준들은 기업계에서 매우 잘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들은 투자자나 채권자들 그리고 미래의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유용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GAAP를 세무회계의 기초적인 기준으로 채용하면, 현재 및 여러 해에 걸쳐 존재해 온 혼란이나 불안정성은 크게 감소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공정세제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고, 신고서의 작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등의 논리로⁹⁶⁾ AIA는 기업회계의 세무회계에 대한 基準性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1950년대 미국의 會計學會나 會計士協會 등에서는 기업회계가 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업회계의 세무회계 基準性이 우세하여 세무회계 독자적인 목적과 기능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위기였다.

3) 傳統的 「企業會計 基準性」 論議에서의 轉換

미국 회계학회나 회계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基準性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변화하게 된다.

없어서라기보다는 회계와 관련한 기본적 개념들과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Haller, 1992) 외국의 실무나 제도를 소개하는데 있어서 사회구조적으로 다른 관련부문과 연계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95) A.A.A.,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able Income", Supplementary Statements No. 4, August 1952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52, pp. 427~430).

96) AIA, "Divergences Between Rules of Tax Accounting an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December 1953, *The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1954, pp. 94.

가) 稅法規定 影響力의 增大와 企業會計의 逆基準性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를 주장하는 논란은 회계학회나 회계사협회 등에서 주장되어 왔으나 몇몇 개인들은 세무회계원칙은 회계사들이 준수하는데 익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⁹⁷⁾ 그들의 주장은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와 달리 확실성을 위한 요구가 강하고 이것은 세무회계원칙을 정의하는 일련의 법실체에 의해 충족되므로 좀더 나은 비교가능성과 일치성을 희생하는 법규정을 기꺼이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전문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연방 과세정책의 목적과 기업회계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GAAP와 세법상이익의 차이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거의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다.⁹⁸⁾

1960년대에 이르러 기업회계의 세무회계기준성에 대한 재검토와 변경을 재촉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과세소득의 개념은 사적부분의 회계목적과는 다른 공공정책목적에 의하여 규정되고 과세소득은 내국세입법규정, 재무성예규,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통제되는 實定法 概念(statutory concepts)이기 때문에 양회계의 차이에 대한 實質的인 點檢(a realistic examination) 결과 더욱 많은 一致性(greater conformity)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목표(dubious objective)로 규정하게 되었다.⁹⁹⁾

미국에서 기업회계·세무회계와의 관계에서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의 영향을 받아 수정되는 소위 逆基準性의 문제는 1939년 처음 승인된 LIFO재고조사법의 도입을 들 수 있다. LIFO법을 채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記帳要件」을 두게 되었고 기업이 LIFO법을 채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조세상 이득은 곧 회계사들로 하여금 거의 모든 사례에서 LIFO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理論的 合理化(theoretical rationalization)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회계사들이 추구한 조세상의 이득은 재무제표의 가치를 덜 유용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고 조세액의 절감은 회계실무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¹⁰⁰⁾ 또 다른 사례로서 기업합병시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의 세무상 처리문제를 들 수 있다. 합병시 영업권 상각액의 손금불인정은 회계사들로 하여금 매수개념보다 지분풀링개념을 따르도록 하였고 회계사들은 GAAP와의 일치를 내세워 조세상각을 위한 새로운 내용연수의 제정을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만일 세무회계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합병회계는 다시 매수법으로 전환되면서 영업권의 상각과 손금계산에 대한 이론이 활발하게 개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逆基準性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회계사들이 연방소득세과세와 기업회계를 위하여 일치되는 소득개념이 사용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장요건으로 한다면 정부로 하여금 기

97) Whitney B. Sanders, "Tax Accounting vs. Management Accounting," *Miami Law Quarterly*, 1957, p. 239.

98) Arthur M. Cannon, "Tax Pressures on Accounting Principles and on Accountants' Independence,"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52, pp. 419-428.

99) George E. Lent,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able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2, p. 479.

100) Harold. E. Arnett, "Taxable Income vs Financial Accounting; How Much Uniformity Can We Stand?,"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9, pp. 483-484.

업회계기준의 제정에 더 강력한 목소리를 제시할 것이다. 이는 곧 회계가 정부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되고 통제되는 결과가 되어 기업회계의 발전은 사실상 붕괴되고 말 것이다.¹⁰¹⁾ 따라서 세무회계를 GAAP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과세목적을 위한 기장요건을 더욱 확대하게 할뿐이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려는 논의를 버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주장되었다.¹⁰²⁾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주장은 결국 기업회계의 변경여하에 따라 조세액의 크기에 변화를 주므로 회계전문가나 정부는 회계기준위원회로 하여금 내국세법을 수정하는 의회입법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회계기준이 중국적으로 조세규정을 결정한다면 회계이론에서의 각 변경은 자동적으로 과세소득과 소득세의 산정을 변경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반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¹⁰³⁾

1970년대 이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조정논의가 「記帳要件」으로 변질되면서 세무회계상 유리한 회계방법이 「기장요건」을 매개로 기업회계를 규정하고 나아가 정부와 세무당국에 의한 회계원칙 설정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개입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하여 「一致 不必要論」이 대두되었다.

이처럼 「기장요건」이 가지는 회계실무 및 회계원칙 설정 자체에 대한 세무회계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GAAP회계와 세무회계를 분리하는 논리가 전개되었고 이는 곧 세무회계목적과 GAAP회계 목적과의 상위에 근거한 양회계의 이익 결정 방식의 차이를 강조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GAAP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문제는 후퇴하고 양회계의 독자성과 고유의 목적이 강조되는 방향이 잡힌 것이다. 세법의 목적은 정부세입을 조달하는데 있고, 재무제표의 목적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양회계는 인위적으로 일치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논리가 강조된 것이다.

나) 企業會計 一致性과의 分離立法

미국에서 세무회계가 크게 대두된 것은 1971년의 租稅立法에서 投資稅法을 再導入하고 法人의 超過負擔稅를 폐지하여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세입법이 시작되고서부터이다. 특히 經濟再建立法(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 ERTA)에서는 미국 경제상 기업을 위하여 가장 방대한 租稅減免措置가 이루어져 세무회계는 더욱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되었다. 기업에서는 조세혜택을 위하여 이에 따름으로써 기업회계는 이론에 맞지 않으면서 변동적으로 허울 좋은 가면속에서 방황하는 混濁物이 되었다는 批判까지 받았다.¹⁰⁴⁾

101) *ibid.*, p. 491.

102) Arnett, J. E., *op. cit.*, p. 485.

103) William L. Raby, Robert F. Richter, Conformity of Tax and Financial Account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75, pp. 43-44.

104) Pamela G. Townsend, "Tax Accounting in an Era of Tax Reform",

이처럼 레이건 行政府 執權 이래 조세가 經濟政策의 주요 戰略手段으로 이용됨에 따라 租稅法, 즉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현실적으로 미국 회계학계에서 세무회계에 대한 인식은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 특히 1986년의 租稅改革立法에서는 稅法上 特惠規定에 의하여 免稅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 한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새롭고 강력한 代替的最低限稅(Alternative Minimum Tax: AMP)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GAAP상의 이익개념과 聯邦所得稅法에서 정의하던 所得體系間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왕에 기업회계상 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간의 차이를 永久的差異와 一時的差異로 구분하고 그 稅效果를 移延法人稅로서 처리하던 企業會計慣行에 큰 변화를 초래하여 독자적인 세무회계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하게 되었다.¹⁰⁵⁾ 이는 종래 세무회계를 가급적 기업회계에 일치시키려는 「基準性的 原則」이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다) 稅效果會計의 導入

(1) 導入 背景

과세소득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함으로써 결정되고 기업회계상의 이익은 GAAP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GAAP는 과세소득결정에 관한 규칙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은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기간 귀속 차이」(timing differences) 혹은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s)로 개념화되고 구분된다. 소득세보고 목적상 특정 항목을 과세소득에서 비용으로 제외시킴으로써 재무보고와 소득세보고에서 영원히 차이가 발생하는 永久的 差異가 있으나, 소득세에 대한 회계의 주요대상은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期間的差異에 따른 稅效果 配分會計에 대한 이론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것이 있다.¹⁰⁶⁾

1950년대까지만 해도 회계학계와 회계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회계를 무리하게 一致化시킴으로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고 기업회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양회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차이로 인한 공표재무제표상의 법인세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稅效果會計에 더욱 중요성을 부여하게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세효과회계는 그 자체 財務報告 會計上 하나의 회계절차이면서 세무회계와 GAAP

Management Accounting, March 1987, p. 29.

105) David M. Maloney and Robert H. Sanborn, "Interactions Between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Caused by the Tax Reform Act of 1986", *Accounting Horizons*/December 1988, p. 21.

106) Lee J. Seidler and D. R. Camichael, ed, "Accountants Handbook", 6th edition volume 2, Ronald Press, 1981, pp. 133~134.

회계의 연결고리로서 세무회계 제도의 성립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회계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¹⁰⁷⁾

(2) 導入 課程

(가) APB Opinion No.11 이전의 법인세회계

1930년대 들어오면서, 법인세율이 높게 됨에 따라 회계상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한 원인으로는 缺損金の 移越控除를 인정한 조항이 제정된 것을 들 수 있다. 1944년에 발표된 ARB No.23은 法人稅期間配分會計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써 법인세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증권거래위원회의 회계연속통칙(Accounting Series Release : ASR) No.53은 법인세의 비용성을 부인하고 법인세의 기간배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후 한국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의 개발확충을 추진하기 위해서 긴급설비에 대한 가속상각의 특전이 부여됨으로써 稅效果를 고려하지 않으면 적정한 당기순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그 차이는 현저하게 되었다¹⁰⁸⁾. 따라서 1952년에 발표된 ARB No.42는 기업회계목적과 세무회계목적이 다름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다르게 계산될 경우 이를 이연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53년과 1954년에 발표된 ARB No.43, No.44에서는 전시 긴급시설에 대한 상각과 가속상각으로 인한 법인세의 경감에 따른 세효과를 인식하고 이 차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법인세비용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이연법인세에 의하여 부채로 계상토록 하였다

(나) APB Opinion No.11의 法人稅會計¹⁰⁹⁾

法人稅期間配分會計에 대한 이상의 의견들은 Black 교수에 의해 1966년 5월에 발표된 ARS No.9에 종합되어, 그해 12월에 발표된 APB Opinion No.11의 주요골자를 이루게 되었다.

107) 이러한 期間間 所得稅配分會計는 1944년 "Accounting for Income Taxes"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23), 1953년 "Restatement and Revision of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3), 1945년 "Declining-Balance Depreciation",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3), 1962년 "New Depreciation Guide Line and Rules", (APB Opinion No. 1)에 이어져 오다 1968년 'Accounting for Income Taxes', (APB Opinion No. 11)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실행되고 있다.

108) 中瀨雄通, "連結財務諸表における稅效果", 『企業會計』, 1976, p. 59.

109) AICPA, APB Opinion No.11, 1967.

APB Opinion No.11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상 차이로 발생하는 一時的 差異에 대한 稅效果를 기간배분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법인세기간배분회계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기간배분에 대해 기업의 회계처리실무상 빚어졌던 이견과 혼란들이 통일되고 법인세기간배분이 일반적인 회계처리관행으로 정착되었다.

APB Opinion No.11은 법인세공제전 순이익에 부담시키는 법인세비용과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액간의 차이원인을 期間歸屬差異(timing difference)와 永久的 差異(permanent difference)로 구분하고 있다. 기간귀속차이는 세법상의 과세소득계산에 영향을 주는 회계기간과 기업회계상의 법인세공제전 순이익계산에 영향을 주는 회계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서, 어느 회계기간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 후 반대의 영향이 미래의 다른 회계기간에 발생해서 그 영향이 상계·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영구적 차이는 과세소득과 법인세공제전 순이익간의 차이로서 차이발생 이후 기간에 그 반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차이이다.

이중 법인세기간배분의 대상이 되는 차이는 기간귀속차이이다. 본 의견서에서는 기간귀속차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①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는 연도보다도 나중에 속하는 연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 ② 기업회계상 본 비용발생 연도보다 앞선 연도에서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③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는 연도보다도 앞선 연도에서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 ④ 기업회계상의 발생연도보다도 나중에 속하는 회계연도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SFAS No.96 및 SFAS No.109의 法人稅會計¹¹⁰⁾

FASB는 오랜 기간동안의 검토결과, 1987년 12월에 SFAS No.96 “法人稅會計”를 발표했다. SFAS No.96은 資產·負債法에 의하고, 이연된 세효과의 부채성 또는 자산성을 강조한다. APB Opinion No.11이 이연법인세를 이연항목으로 인식하는 이연법을 채용한 것과 비교해서 볼 때 그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연법인세는 부채 또는 자산이기 때문에, 세율이 개정될 때에는 이연법인세액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SFAS No.96의 一時的 差異는, APB Opinion No.11의 기간귀속 차이인 비용·수익의 기간귀속에 관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이외에 자산·부채가액의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어, 一時的 差異는 기간귀속 차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110) FASB, SFAS No.96, 1987.

이어서 FASB는 1992년 2월에 SFAS No.109 “法人稅會計”를 공표하고, Opinion No.11 또는 SFAS No.96의 내용 중 일시적 차이의 범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 공시사항 등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자체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를 무리하게 접근시키려는 단순 논리보다는 법인세효과회계를 통하여 그 차이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양회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英國

가.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와의 관계

1) 稅法規定의 변천

가) 租稅法律主義의 成立過程

기업회계와 세법규정과 관계는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원리와 같이 한다. 최근의 조세관계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래 조세의 납부는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하는 부과과세제도에서 출발하였다. 세법규정의 적용과 기업회계와 관계도 그 시초를 규명하는데는 조세법률주의가 최초로 제도화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법률주의가 가장 먼저 주창된 것은 1215년 영국의 大憲章(Magna Charta)에서 찾을 수 있다. 대헌장 중에는 당시 貴族諸侯 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재판 등 세속적 봉건귀족의 권리를 옹호하고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최초로 조세법률주의 원리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이는 영국헌법의 효시라고 되었으며 다만 그 대상이 諸侯·騎士·敎會·市民 등에 한정되고 농민을 포함한 전 국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¹¹¹⁾

그후 1628년 의회는 權利請願(Petition of Right)을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조세·증여·공채·헌금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가 다시 강조되었다. 이어 1689년 「權利章典」(Bill of Rights)이 제정되어 의회의 승인이 없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규정을 명백히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가 확고하게 보장된 것이다.¹¹²⁾

111) 曹佐鎬, 『世界文化史』, 박영사, 1994, pp. 241-242.

112) 姜仁崖, 『實學派의 租稅思想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6, pp. 28-30.

나) 所得稅法의 現況

기업회계와 관련된 세법의 규정은 소득세법의 확립여부와 연계되어 논의된다. 일찍이 영국은 1760년부터 1780년에 걸쳐 시작된 산업혁명을 통하여 다른 나라보다 앞서 산업 자본주의를 출현시켰다. 동시에 의회제 민주주의 확립으로 소득세제도의 출현조건을 갖추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앞서 소득세제도를 갖추게 되었다.¹¹³⁾

영국의 소득세제도는 1799년, 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 Pitt)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 세제를 시행하기 전 소득세의 전형태로서 1798년 The Triple Assessment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세대상은 소득을 위한 지출행위에 대한 것으로 일종의 소비세적 형태를 띠고 있다. 과세방법은 3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의 납세자의 소득과 세액을 사정하였다. 그러나 동 세제는 각 납세자의 소득을 산정하면서 소비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어서 결합이 많고 조세불공평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1년 후 폐지되고 시행착오의 시련을 거쳐 1799년 소득세제도가 출현한 것이다.

최초로 도입하게 된 소득세제는 규칙이 불비하고 복잡하며 또한 징세조직의 미숙으로 납세자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의한 탈세가 횡행하는 등 조세불공평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조세수입은 목표액을 크게 하회하는 등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처음 시도하는 擬似所得稅制에 대한 일반대중의 반대가 뿌리깊고 지식층 작가 및 정치가 등도 이 세제에 배타적이었다. 그래서 1802년 5월 당시 재무부장관 Henry Addington은 프랑스와의 전쟁이 종료되면서 이를 폐지하고 대신 수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과세(assessed-tax), 소비세 그리고 관세를 증세하였다.

영국에서 처음 출현한 체계적 소득세제도가 프랑스와의 전쟁이 종료된 1802년 폐지되었지만 프랑스와의 전쟁이 재발되자 1803년 다시 소득세를 도입하게 되었다.¹¹⁴⁾ 1803년의 Addington에 의해 다시 제정된 소득세제도는 「資産, 專門職業, 商業 및 官職에서 발생하는 利益稅」(A contribution of the profits arising from property, professions trades and offices)로 호칭되었는데 이는 5개의 주요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된 것으로 이른바 스케줄(Schedule)에 의한 과세체계로 이러한 조세체계는 오늘날 영국세제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세제는 Pitt의 1799년 소득세제를 기초로 하면서 Pitt의 신고제도에서 노정되었던 결합과 징세상의 미숙으로 탈세와 조세불공평을 초래하였던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소득의 원천을 5개의 스케줄(Schedule)로 분류하고 그 원천별로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동시에 징세조직을 개혁하고 지방조직도 개편하였다.

그 후 동소득세제는, 전쟁의 격화와 함께, 1805년 및 1806년 개정되었으며 주로 세율 및 제공제의 개정이었다¹¹⁵⁾. 프랑스와의 전쟁이 종결함에 따라 1816년 동 소득세제는

113) 木原 孜, “稅務會計 總論(-),-稅務會計の誕生とその發達-” 『福岡大學商學論叢』, 37(3) 1992. 12. (129), pp. 285-330.

114) 木原 孜, “上掲論文”, pp. 285-330.

115) 1805년에는 세율을 5%에서 6.25%로 인상하고, 또 1806년에는 10%로 인상했

다시 폐지하도록 결정되었다. 그 후 계속재원으로서의 소득세제는, 1842년의 필(Robert Peel)에 의하여 재시행되었다. 그 후 개정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골격은, Pitt의 소득세제를 기초로 하고 Addington의 수정세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영국의 소득세제도는, 각 스케줄(Schedule)에 기초한 개별과세가 특징이지만, 이는 소득의 원천과세에만 과세하는 기본적 사고에 따른 것이다. 법인과세는, 본래 Schedule C 및 D(기타 다른 Schedule A의 예외 소득)에서 은행 및 주식회사의 이자 및 배당금의 지불에 관한 과세로서 이는 담세자로서의 소득수령자에 대한 원천과세이며 법인(주식회사)과 소득수령자(주주)와의 이중과세의 문제는 단순화하여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서서 주식회사가 발달하면서 법인세가 과세되었고 이때의 법인세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독립사업체로서 과세하는 것인지 또는 주주의 집합체로서 과세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했다. 즉,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된 것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스케줄과세의 취지(원천소득과세)를 계승하면서도 법인세를 또한 과세함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와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조정으로 영국에서는 imputation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수취배당금에 과세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영국의 경우는 일부)를 주주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합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에서 가산된 법인세(선불법인세)를 공제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¹¹⁶⁾

다) 現行 稅法上 計算規定

영국의 세법에서 세무회계의 근거는 법인의 소득에 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Section 18 Schedule D라고 할 수 있다. Section 18 (1)(a)에서 법인과세의 대상을 “발생하는 (arising or accruing) 각년도 이익(profits) 또는 이득(gains)에 대해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18 (3)에서 Case I 에 “영국 또는 그 외 지역에서 수행된 영업에 대한 조세”로 규정하고 있다.¹¹⁷⁾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계산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것은 일상적인 상업실무에서는 포함시키는 특정의 공제항목을 강행규정에서는 제외시킨다는 규정 정도였다.

이처럼 기업이익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소득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고 특히 회계관행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다. 결국 이와 관련한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관행이 100여년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¹¹⁸⁾

다. 또 1806년에는 과세를 원천과세로 정지하는 사고를 확대하고, 또 경감세 또는 공제액을 압축했다(Seligman, E. R. A., *ibid.*, p. 102).

116) 영국에서는 이 imputation 방식에 의한 수취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스케줄 F에서 행한다(Buterworths UK Tax Guide 1984-85, p. 666).

117) KPMG Tax Advisers, *Tax Statutes and Statutory Instruments, 1994-95*, 1994 CCH Editions Limited, p. 311.

118) Jill C. Pagan, "Measurement of Commercial Profit for Tax Purposes", *British Tax Review*, pp. 75-87.

1988년 조세법 Section 74에서는 비용 또는 손금의 공제(deduction)에 관해 일반규칙을 제정하고 Schedule D case I 또는 case II의 과세대상이윤 또는 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공제를 허용치 아니하는 일반규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Section 74를 무시하는 특정 조항이 많이 있어 기업회계와의 관계가 매우 혼란스럽다.

별표 Schedule D의 Case I 목적을 위한 과세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적인 절차는 당해 년도 이익과 손실 계정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세법에서 허용치 않았던 그런 항목을 다시 가산하고 그 후에 법규정 총당금을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과 회계방법의 복잡성은 증가하고 있어 기업회계방법이 세법과 상충되는 모든 항목은 더욱 많아지고 있고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 더 이상 간단한 업무가 아닐 정도로 복잡하게 난해하고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판례법 체계에 더욱 의존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보험회사의 미수수익 과세와 어음 매매에 있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즉 당시 견해는 “이익은 실현되기 전에는 과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는 것이었고 BSC Footwear Case에서 “회계원칙 적용은 법정원칙은 아니지만 확고한 기반을 따른 것이다. 이익이든 손실이든 예상치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그후에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¹¹⁹⁾ 중국적인 문제의 귀결은 Schedule D Case I의 이득기준에 있어서 연간이득을 확인할 때 어떤 경우 기업회계처리를 수용하고 어떤 경우에 이를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¹²⁰⁾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과세와 회계 양측에서 접충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성(욕구)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입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반면에 회계처리는 더욱 더 유연해지고 있다. 현재 입장은 회계 원칙과 감사절차는 너무 유연하거나 정교하지 못해서 회계처리 자체로 과세의 측정척도로 사용될 수가 없다. 그러나 1980년대의 과다한 창조적 회계기법은 결과적으로 전문회계기준 위원(ASB)을 설립하여, 규칙을 엄하게 하였고 제기된 첫 번째 분야중 하나가 이익, 손실 계정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양회계의 간격은 좁히지 않은 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¹²¹⁾

119) (1912)6 T.C. 59. (Sun Insurance Office vs. Clarke)
(1926)12 T.C. 813. (Scottish case Whimster Co vs. C.I.R.)
(1961)39 T.C. 537. (Duple Motor Bodies vs. Ostime)
(1971)47 T.C. 495. (BSC Footwear Ltd. vs. Ridgeway)
(1978)52 T.C. 242. (Willingale vs.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Ltd.)
120) Jill C. Pagan, op. cit., pp. 75-87.
121) ibd.,

2) 稅法規定의 特徵

(1) 支出稅적 性格의 混合

영국의 세법에서 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기업회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가 매우 애매하게 전개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영국의 소득세법은 최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소비세적 성격을 띤 지출측면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소득세적인 성격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하여 소득세 과세체계가 제정과 폐지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스케줄에 의한 과세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출측면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이익의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을 대응시키는데 불일치되는 관점이 많다. 그래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득의 인식상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적인 문제의 귀결은 Schedule D Case I의 이득기준에 있어서 연간이득을 확인할 때 어떤 경우 기업회계처리를 수용하고 어떤 경우에 이를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 이처럼 영국의 세법이 지출제적 성격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를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점이 회계와 관련한 영국의 세법규정의 특징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2) 增價되는 稅法의 複雜性

영국의 직접세 제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세법이 복잡해질수록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므로 납세자, 조세당국, 세무대리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세무전문가들은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 한다. 이는 곧 회계기준과 과세소득의 산정에서 양자의 관계가 시급히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세법규정이 복잡하게 될수록 이에 맞추어 재무보고를 복잡하게 한다면 세무대리인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한편 영국에서 과세소득은 중국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인식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은 과세기초를 기업이익의 산정기준인 재무회계기준에 접근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판사들과 국세청이 과세소득의 결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계기준 제정단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원과 국세청의 입장은 기업회계의 입장과 다른 관점에서 과세소득을 인식하려고 한다. 특히 국세청은 거래로부터 징수하는 세수입을 항상 최대화하려는 편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회계와는 일치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법원이나 국세청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모두 ASB를 압박하여 기준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집중적인 로비에 의해 고유의 회계기준제정이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¹²²⁾

122) Sue Green,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Complexity, Dynamism and Divergence", *British Tax Review*, No. 5 1995, pp. 446-447

나. 課稅標準 算定과 企業會計 適用에 관한 論議

1) 稅法 規定上 企業會計 關係의 不明確性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국의 세법에서는 법인의 과세소득과 그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매우 불명확한 양태를 띠고 있다. 영업소득과 법인조세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 자체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애매한 상태이다.¹²³⁾ 즉 법인과세의 대상을 “발생하는 (arising or accruing) 각년도 이익(profits) 또는 이득(gains)에 대해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18 (3)에서 Case I 에 “영국 또는 그 외 지역에서 수행된 사업에 대한 조세”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¹²⁴⁾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기업회계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유일한 것은 일상적인 상사실무에서는 포함시키는 특정의 공제항목을 강행규정에서는 제외시킨다는 규정 정도이다.

2)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關係 論議의 混亂

영국에서 기업회계에 대한 세법규정이 애매한 만큼이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매우 다양하고 분분하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세법에서 기업회계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하고 그의 적용에 관한 정의나 규정이 없어 과세소득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특히 회계관행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다. 결국 이와 관련한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관행이 100여년간을 지속하고 있다.¹²⁵⁾

3) 複雜한 課稅所得 計算 規定

세법에서 기업회계에 대한 태도가 애매한 상태에서 기업회계를 고려하지 않는 세법 고유의 규정들이 계속 신설됨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도 있다. 1988년 조세법 Section 74에서는 비용 또는 손금의 공제(deduction)에 관해 일반규칙을 제정하고 Schedule D case I 또는 case II의 과세대상이윤 또는 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공제를 허용치 아니하는 일반규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Section 74를 무시하는 특정 조항이 많이 있어 기업회계와의 관계가 매우 혼란스럽다.

별표 Schedule D의 Case I 목적을 위한 과세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적인 절차는 당해년도 이익과 손실 계정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세법에서 허용치 않았던 그런 항목을

123) KPMG Tax Advisers, *Tax Statutes and Statutory Instruments, 1994-95*, 1994 CCH Editions Limited, p. 311.

124) *Ibid.*, p. 311.

125) *Ibid.*, pp. 75-87.

다시 가산하고 그 후에 법규정 충당금을 계상한다. 세법과 회계방법의 복잡성은 증가하고 있어 기업회계방법이 세법과 상충되는 모든 항목은 더욱 많아지고 있고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 더 이상 간단한 업무가 아닐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복잡성을 관례법 체계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난해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¹²⁶⁾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과세와 회계 양측에서 점증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성(욕구)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입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엄격해지고 있는 반면에 회계처리에 있어서 회계 원칙과 감사절차는 너무 유연하거나 정교하지 못해서 회계처리 자체가 과세의 측정척도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간 전문회계기준 위원(ASB)을 설립하여 규칙을 엄하게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아직도 양회계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은 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세무전문가들은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 한다. 이는 곧 회계기준과 과세소득의 산정에서 양자의 관계가 시급히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¹²⁷⁾

3. 獨逸

가.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와의 관계

1) 稅法規定の 변천

가) 商法上 正規簿記原則의 基準性

독일은 전형적인 실정법 국가로서 商人 즉 法人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商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문제도 상인에 관한 계산문제로서 일찍이 상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모든 상인에 대한 회계업무를 통괄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의 경우와 특히 다르다.

독일의 상법에서는 상업을 영위하는 자를 商人이라 하고 (상법전제1조제1항) 소득세법 제 5조에서는 完全商人(Volokaufleute)이라 하여 소재지 관할법원의 상업등기부에 상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일체의 자연인, 인적상사회사(OHG, KG) 및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완전상인에 속하는 주식회사(AG),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등기된 조합은 形式商人(Formkaufleute)이 된다 (상법전 제6조제2항).

상법전제 264조에 의하면 일체의 상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그의 장부상에 상거래나 재산상태를 正規簿記의 原則(Grundsätze ordnungsmässiger Buchführung: GoB)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할 의무가 있다. 즉 상법전 제264조 제1항에서는 「자본회사¹²⁸⁾의 법

126) Jill C. Pagan, "Measurement of Commercial Profit for Tax Purposes", *British Tax Review*, 1995, pp. 75-87.

127) *Ibid.*, pp. 75-87.

정대표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일체를 이루는 부속명세서를 추가하여 연도결산서를 확정하고 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이어 동법 제2항에서는 「자본회사의 연도결산서는 正規의 簿記의 原則을 준수하여 자본회사의 재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의 실질적 관계에 합치하는 상황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들은 과세소득의 산정시 상법상 회계규정의 基準性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나) 課稅所得의 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

독일의 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조문에 근거하고 있다.

① 법인세법 제 8조는 總所得金額(Das Einkommen)의 산정에 대하여

「총소득금액 및 그의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및 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소득세법 제4조는

「순이익이란 당해 사업연도 말의 사업용재산¹²⁹⁾과 전 사업연도말의 사업용재산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불출가액¹³⁰⁾은 이를 가산하고 불입가액은 이를 감산한다.»¹³¹⁾

③ 소득세법 제5조는 제1항에서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기장 및 정기로 결산을 행하는 의무가 있는, 영업자, 또는 법률상의 의무는 없지만, 기장 및 정기로 결산을 행하는 영업자는, 사업연도 말에 상법상 正規簿記의 原則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업용재산을 계상해야 한다.」

④ 상법전제 264조

제1항, 「자본회사의 법정대표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일체를 이루는 부속명세서를 추가하여 연도결산서를 확정하고 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항, 「자본회사의 연도결산서는 正規의 簿記의 原則을 준수하여 자본회사의 재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의 실질적 관계에 합치하는 상황을 전달하여야 한다.

상기의 규정을 분석하여 보면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그의 장부상에 상거래나 재산상태를 正規簿記의 原則(Grundsätze ordnungsmässiger Buchführung: GoB)에 따라 계상하고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여기서 正規

128)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를 말한다.

129) 여기서 사업용재산이란 正味財産 즉 自己資本이 된다.

130) 불출(Entnahme)이란 납세의무자가 당해 사업연도중에 사업에서 자기를 위하여 그의 세대를 위하여 또는 다른 사업 외의 목적을 위하여 불출한 일체의 경제재(현금인출, 상품, 제품, 용역 및 급부)를 말한다.

131) 법조문상 순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면 형식적으로는 회계학상의 재산법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재산법이란 손익법의 결과와 일치하는 의미의 재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 또는 일본에 있어서 과세총소득금액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은 손익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簿記의 原則이란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계규준으로서 미국의 GAAP에 가름되는 회계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독일의 상법에서는 미국의 GAAP에 버금갈 수 있도록 소득계산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¹³²⁾

여기서 사업용재산이란 正味財産 즉 자기자본이 된다. 순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는 회계학상의 재산법이 된다. 여기서 재산법이란 손익법의 결과와 일치하는 의미의 재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 또는 일본에 있어서 과세총소득금액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은 손익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또 소득세법 제5조는 「(1)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기장 및 정기로 결산을 행하는 의무가 있는, 영업자, 또는 법률상의 의무는 없지만, 기장 및 정기로 결산을 행하는 영업자는, 사업연도 말에 상법상 정규 부기의 원칙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업용재산(제4조 제1항 제1단)을 계상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규정이, 상사대차대조표의 세무대차대조표에 대한 기준성의 원칙이 되는 근거법조문이다. 여기에서 정규의 부기의 원칙이란 미국의 GAAP에 상당하는 것이다.

한편 조세통칙법(AO) 제140조는 「조세법률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에 대하여 중요한 기장 및 기록을 해야 하는 자는 동 다른 법률에 의한 의무를 과세를 위하여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을 영위하는 자본회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장 및 정기적으로 결산을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사업용재산비교법에 의하여 순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본회사는 그의 사업용재산비교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사업연도말에 상법상의 정규의 부기의 원칙에 따라 표시되는 사업용재산을 계상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제5조, 제8조).

나.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適用에 관한 論議

독일의 회계는 실정법국가답게 상법에서 계산규정을 두고 기업회계가 전개되어 왔으며 따라서 상법이 주도하는 기업회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상법회계는 다른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버금가도록 철저하고 세밀하다. 이러한 상법회계는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수주의적 원리와 정규의 부기의 원칙에 의하여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자연발생적인 회계로서의 GAAP회계가 아닌 상법회계로서의 정규부기의 원리 즉 GoB로 불려지는 것이다. 독일의 세무회계는 일찍이 이러한 상법상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된 商事貸借對照表上의 利益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회계로서 전개되어 왔고 그래서 독일의 과세소득의 산정방법을 基準性的의 原則이라고 불려 왔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과세소득 산정에 따른 기업회계의 적용은 엄격한 상법상의 회계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소위 기준성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 왔고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세법상의 영업자는 상

132)1985년 12월 19일에 공포된 貸借對照表指針法(BilanzrichtlinienGesetz)에 의하여 獨逸商法(Handelsgesetzbuch) 第3編에 도입된 것이다.(李炯珪, 『獨逸會社法』, 한국조세연구소, 1996, p. 233.

법상의 규정에 따른 상인으로서 상인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회계기준을 정규부기의 원칙(GoB)에 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작성된 상사대차대조표가 세무대차대조표의 작성기초가 되어 과세소득 산정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만일 상사대차대조표가 GoB에 반한다면 그 한도 내에서 세무대차대조표에 대한 기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1항에서 말하는 기준성의 원칙은 기업회계에 의한 상사대차대조표 그 자체가 아니고 상법상 정규의 부기의 제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상사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¹³³⁾ 따라서, 기준성원칙의 전개과정에서도 상사대차대조표가 상법상의 강행규정에 「고려되는 범위」를 넘어 위반한 경우 그 상사대차대조표의 기준성은 부정되므로 기업의 회계기준은 상법상의 회계기준이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상 그 계상의무를 부여할 수 있던 준비금을 상사대차대조표에 전혀 계상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기준성은 인정되지 않고 상법에서만 용인되고 있는 준비금이나 기업비 등 이연자산은 세무상 계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기준성은 제한된다.

이러한 상사대차대조표 기준성의 원칙은 1914년부터 1924년간의 제1차 세계대전 대전기중 전비조달에 따른 재정수요증가를 담당하여야 하는 당시 상황에서 전비조달을 위한 각종의 조세징수방법이 강구되면서 이미 정규부기의 원칙에 의한 당기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1934년부터 1939년 전쟁발발전, 그리고 전후 1945년 8월 패전 이후를 거치면서 전시 재정부족과 패전 후의 경제복구를 위하여 상사대차대조표와 별도의 세무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했고 이때부터 상사대차대조표와 세무대차대조표가 별개로 작성되기도 하여 세무회계의 독자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그후의 경제불황과 경제재건을 위한 경제정책은 조세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따라서 세무회계는 상사대차대조표에 의한 기업이익을 산정하는 기업회계보다 더 강력한 회계규범으로서 그 기능을 하게 되었다.¹³⁴⁾

결국 세무대차대조표는 상사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나 세법상 상사대차대조표와 다른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사대차대조표의 기준성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세무대차대조표를 따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한 가감사항을 상사대차대조표에 고려하여 수정된 상사대차대조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¹³⁵⁾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세무회계는 미국의 세무회계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왔고 이러한 차이가 우리나라의 세무회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¹³⁶⁾

(133) 『상계서』, pp. 21-22.

134) 齊藤明, 『シュトイエルピランツの研究』 稅務經理協會, 1983, pp. 43~50.

135) 김광수, 이성봉, 『독일세법론』,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7, pp. 130-137.

136) 독일에서 세무조정은 상사대차대조표상의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세법적 측면에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회계적 수정, 예를 들면 감가상각, 재고평가, 충당금 등에 대하여 제1차적으로 수정을 한다. 그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 예를 들면 접대비한도초과액, 지급이자, 기부금, 비과세소득, 은익된 소득의 처분, 등 비회계적 측면에서의 상사대차대조표를 다시 수정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우선적으로 회계적 측면에서 상사대차대조표를 수정하고 제2차적으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다시 수정을 하

4. 日本

가.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와의 관계

1) 稅法 規定의 變遷

가) 商法 依存主義 및 稅法の 獨自的 計算 規定

일본은 독일과 같이 전형적인 대륙법계국가로서 회사의 회계처리는 당초부터 상법의 계산규정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1899년(명치 32년) 제1종 소득세를 창설하고 과세소득은 각사업연도의 총익금에서 동년도 총손금, 전년도 이월금 및 보험 책임준비금을 공제한 것에 의한다고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때의 과세액은 납세자가 상법상의 결산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등(명치31 소규31, 대정2 소법7)의 결산이익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정태론적 시가주의의 이익원리에 입각하여 상법결산을 그대로 의존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¹³⁷⁾

과세소득 계산으로 독자적인 기준이 도입된 경우는 1918년(대정 7년) 재무부 내규로서의 감가상각 보합표의 내용년수에 의한 감가상각액의 손금산입으로 이는 성과계산원리를 세법에 도입한 세법독자의 상징적 계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행정판결을 통해 개별항목의 정비가 이루어 졌고 1939년(소화 14년) 제정된 임시 조세조치법에 의하여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벌금의 손금불산입, 국고보조금·기업정비 등의 압축기장, 설비보수준비금의 손금산입, 고정자산의 단기상각 등 여러가지 전시특례가 규정하고 이들에 의하여 과세소득 계산기준의 기초를 구축함으로써 세법 독자적인 회계기준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어 1940년(소화 15년) 제정된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나) 現行 稅法 規定

과세 소득의 산정에 관해서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의 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22조①)
- ② 당해사업연도의 익금의 액에 산입해야 할 금액은 「別段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자산의 판매, 유상 또는 무상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역무제공, 무상에 의한 자산의 양수 그 외의 거래에서 자본등 거래 이외의 것에 관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으로 한다.」(법 22 ②)

는 2단계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한범주에 넣어 세무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37) 井上久彌, 「企業課稅原理と會計基準の交錯」, 『企業會計』, '90 vol. 42 No. 5, pp. 14-25.

- ③ 당해사업연도의 손급에 산입해야 할 금액은 「別段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서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법22 ③)
- 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에 관계되는 매출원가, 완성공사원가, 그 외 다른 이와 준하는 원가의 액
- ㉕ 전호에 계기하는 것 외 당해 사업연도의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외의 비용 (상각비 이외의 비용으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에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의 액
- ㉖ 당해 사업연도의 손실의 액으로 자본 등 거래 이외의 거래와 관련되는 것

④ 그 수익의 금액 및 손비의 금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것으로 한다.
(법 22 ④)라고 규정하고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자본 등 거래란 법인의 자본 등의 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 및 법인이 행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상법 제293조의5 제1항(중간배당)에 규정하는 금전의 분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을 요약하면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세법고유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따로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독일과 같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독일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正規의 會計處理基準 (GoB)」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2) 課稅所得 算定에 관한 稅法規定의 特徵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기업회계의 존중에 관하여 법인세법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 1967년(소화 42년)의 법인세법 개정에서 기업회계의 처리기준을 법조문화하여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에 법조문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법개정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당시의 主稅 局長이었던 塩崎潤은 「稅制는, 세제 이전에 존재하는 기업이나 기업이익을 전제로 하여 구성된다」고 하여, 소득계산의 전제로 기업이이익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설정에 따라 ① 기업의 회계처리의 존중, ② 세무 당국의 획일적 취급의 감소, ③ 세제의 간소화를 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¹³⁸⁾

이는 곧 세법은 될 수 있는 한 일반의 회계실무를 존중하여 회계관행에 위임하고 세법규정에서 제외하고, 세법규정은 과세소득 계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세제의 자연스런 논리라는 것으로¹³⁹⁾세법이 기업의 회계처리를 존중하고 있음을

138) 塩崎潤, 「稅制簡素化の實施にあたって」, 『稅經通信』, 第22卷 第5號, p. 5.

139) 武田隆二, 『法人稅法 精說』, 1996, 森山書店, pp. 35-38.

명확히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과 확정결산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조 동항은 형식적으로는 현행 세법에서 확정결산주의의 원칙을 측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회계처리방법의 전체적 획일성으로부터 개별적 타당성에의 중점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은 형식적으로는, 동법 제74조 제1항의 확인규정으로 세법이 상법 기타의 회계계산의 기준에 기초를 둔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규정은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고 기업의 자주적 판단에 기초한 회계처리 방법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 과세소득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을 기초로 하고(법22④), 상법상의 이익계산은 「공정한 회계관행」을 기초로 하도록(상법제32②)함으로써 세법은, 확정결산주의에 따라서, 상법결산에 원칙적으로 의존하는 취지를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과세소득계산이 상인의 건전한 실무관행을 기초로 성립하는 것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 2가지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① 과세소득계산은, 확정결산주의에 기초하여 상법을 매개로 「공정한 회계관행」에 연계한다는 규정체계

② 과세소득계산은 원칙적으로 「공정한 회계관행」을 기초로 완성되어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는 규정체계

앞에서 기술한 ① 독일형의 규정이고, ②는 미국형의 규정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확정결산주의에 의해 독일형을, 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소득계산의 총칙규정에 설치한 것에 의해 미국형을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그후 1974년(소화 4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은, ① 기업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자주적 판단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적용의 확대, ② 상법 제32조 제2항에 있는 「공정한 회계관행」을 따름으로써 세법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에 준거한다는 2가지의 실질적 의의가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⁴⁰⁾

나.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 適用에 관한 論議

1) 會計 差異의 區分 認識

가) 會計規範의 理念과 目的의 差異

기업회계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회계의 목적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회계행위의 목적이 여하한가에 따라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업회계가 전제되며 이때 기업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업회계원칙이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원칙을 생기게 하는 구조는 회계원칙이 가지는

140) 『상계서』, pp. 35-38.

이론적 구조의 인식과, 회계목적관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¹⁴¹⁾ 기업회계는 기업 활동의 결과에 관한 계산과약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技術은 회계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기업회계는 회계목적실현을 위한 計算技術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의 제도적 방법이 「공정 타당하다」한가 하는 것은 곧 회계목적실현의 수단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실천으로부터 회계원칙을 설정할 때, 논리상 무엇보다도, 기업회계의 계산목적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고 회계목적의 정립없이 회계원칙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을 둘러싼 각종의 회계에는, 각각의 회계목적 명백하게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목적관에 적응하는 계산적 질서 내지 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행위를 상법회계,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로 구분하는 경우 그 각각의 목적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企業會計의 會計目的과 特質

기업회계의 회계목적은 기업 그 실체의 계속유지와 운영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도움이 되는데 우선적 목적이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회계정보를 요구하는 단체들 때문에 회계는 다양한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단순히 수탁책임보고의 의무이행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회계정보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계는 단독회계가 아닌 전체적인 회계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고¹⁴²⁾ 자연히 공시의 확대로 이어진다. 고전적 재무회계는 공시목적과는 다른 수탁자와 위탁자와의 쌍방관계에서 수탁보고의 책임과 해제라는 단선적인 관계였다. 단순한 수탁책임의 보고는 과거지향적이지만 현대의 수탁책임보고는 미래지향적이라는데 특성이 있다.¹⁴³⁾ 활동과 자원에 대한 과거 전통적 역사적 측정방법은 복잡한 현대 기업조직의 활동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동일사건과 자원에 대하여도 다른 측정을 포함하게 된다.

(2) 商法 會計의 會計目的과 特質

상법계산 규정체계에서의 회계목적은 기업에 대한 출자자인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에 두고 채권자, 기업 및 주주 등 각각의 이해조정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업회계는 일정기간 자본증가를 가져온 경영활동 성과로서의 「기간이익」의 산정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법상의 회계규정은 「배당가능이익」의 측정에 중심을 두고 있고 기업회계가 중요시하는 기간이익에 대하여는 직접적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상 이익의 계산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으로

141) 山下勝治, 『會計原則の理論』, (昭和 26年 4月 初版), pp. 34-39.

142) Jacob G. Birnberg, "The Role of Accounting in Financial Disclosure",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5, No. 1, pp. 71-80.

143) Jacob G. Birnberg, *ibid.*, pp. 75-76.

서 이는 기업회계상 기간이익의 누적액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에서의 「시점이익」으로서의 관점이고 이는 기업회계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자본효율 또는 수익력의 측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기간이익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계속유지와 분배가능이익의 산정을 전제로 하는 데 대하여 상법에서는, 채권자 보호의 입장과 주주 출자자본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와 상법의 계산규정 사이에는 각각 다른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稅務會計의 會計目的과 特質

세무회계는 과세대상을 기업의 소득으로 하여 납세자 기업에 대한 공정타당·적정한 조세부담의 배분기준으로서 과세소득의 계산과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라는 회계규범은 강행규범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직접 앗아가는 회계규정 형태를 취하므로 법적 개념이 강화된 회계로서 그 규정은 매우 치밀하고 상세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기업회계는 행위규범으로서 규정 자체의 위반시 어떤 직접적인 징벌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회계기준도 단순하고 상세하지 않다. 한편 과세소득은 각 개별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에 맞도록 공평하게 계측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공평과세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회계는 조세법률주의원칙, 공평과세주의원칙, 실질과세원칙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제정되고 실행된다.

기업회계 영역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로 파악되고, 기업이익개념을 형성하는 항목이라도, 그것이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조세부담 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일 때 세무회계는 과세소득개념을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제외소득 또는 과세제외익금으로 다루기도 한다. 또한 이에 반하여, 기업회계상으로는 기업의 경영성과로서 생각될 수 없는 항목이라도 성격상 조세부담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과세가능소득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여 기업회계와 달리 취급한다. 따라서 세무회계는, 단지, 특정 납세자로서의 기업에 대한 과세소득의 계산과약을 당해 기업의 고유의 입장에서 당해기업만을 위해서만 행하지 않고, 조세부담능력의 계측에 관하여, 조세당국인 정부·지방공공단체의 이해와, 납세자인 국민·기업의 이해를 조정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의 목적관, 상법회계의 목적관, 또, 세무회계의 목적관 등 3자 사이에는 각각 그 회계목적을 달리하고 다른 사고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각각의 계산체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각각 다른 이론적 구조나 계산적 구조가 전개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4) 稅務會計特別委員會의 報告

기업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각각

의 목적이념과 그 원천에서 탐구하고, 그 양회계의 조정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념상의 차이를 중시하여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양회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하여 일본 회계연구학회의 세무회계특별위원회에서는 보고서를 내고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다.

- ① 세법 및 세무회계가 두고 있는 환경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
- ② 조세이론 또는 조세제도상의 구조에서의 이중부담 배제의 사고로부터 생기는 차이
- ③ 세무회계상의 기본원칙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
- ④ 세무회계상의 소득계산원칙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

그런데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가져오는 근원으로 보는 「세무회계상의 기본원칙」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들고 있다.

- ① 소득계산에서의 공평성의 원칙
- ② 소득계산에서의 조세부담력주의의 원칙
- ③ 소득계산에서의 명확성의 원칙
- ④ 소득계산에서의 간편성의 원칙

또, 기업이익과 과세소득, 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가져오는 「세무회계상의 소득계산원칙」으로, 다음 원칙을 들고 있다.

- ① 실질주의의 원칙=(a)실질소득자과세의 원칙, (b)실질소득과액의 원칙, (c)조세 회피부인의 원칙
- ② 기업의 자주적 판단억제의 원칙=(a)회계방법 선택성의 억제, (b)회계방법 변경 조건의 강화, (c)회계방법 적용조건의 규제, (d)중요성 판단의 억제
- ③ 조세지불능력 배려의 원칙(및 조세부담력 배려의 원칙)
- ④ 계산기준 명확성의 원칙=(a)법적 기준의 엄격한 적용, (b)확실적인 형식기준의 적용, (c)특정비용 손금공제 한도액의 확일적 규제
- ⑤ 계산간편성의 원칙=(a)확일성의 원칙, (b)계산경제의 원칙, (c)확정결산기준의 원칙

이와 같이 현실에는 기업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에, 여러가지의 관점으로 보아 분류 정리할 수 있는 각종의 태양을 가지고 나타내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나) 租稅政策으로 인한 差異

조세는 국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등과 같은 광의의 공공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세유인조치가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정책에 따라 특정사실에 대해 세법상의 특혜가 주어지고, 또 반대로 불이익인 차별대우가 주어지는 것은 모든 나라의 조세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세법상의 특혜로는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의 면제 또는 연기, 특정 수익의 과세익금에서의 제외 또는 공제 또는 세율의 경감 등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반면 세법

상 불이익적인 차별대우로는 특정항목의 비용공제 부인 또는 제한하는 방법에 의해 행해진다.

이와 같은 조세의 공공정책목적에 따른 과세소득은 기업이익의 계측과 차이가 있으면서 이는 조세고유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기업회계의 목적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회계논리가 된다. 따라서 조세의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조치가 입법정책상 필요한 이상 기업회계상의 기업이익과 세무상의 과세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 정책상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는 기업회계목적관과 세무회계목적관의 상위에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에 존재하는 괴리는 당연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 損益의 歸屬年度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차이는 수익과 비용의 귀속연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회계의 목적이 다른 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세무회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기업회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주의를 택하고 소득의 과대평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심되는 소득은 이연하고, 의심되는 비용은 산입하는 것을 요구하여 왔다. 반면 조세목적상의 보수주의는, 오히려 그 반대논리로서 당장의 세입을 극대화하고 이후의 세입의 일실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세법 및 세무행정에 있어서 조기에 소득을 인식하고 비용은 그 금액이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데까지 이연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이 양회계간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라) 資本剩餘金概念의 差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 자본잉여금의 본질 과 개념 및 범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양회계간의 차이를 초래한다. 기업회계원칙에서는 자본잉여금이란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 자본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부분을 자본잉여금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법인세법에서는 법인개인의 일체성을 전제로 하여 세무상의 자본잉여금의 원천을 이루는 자본 등 거래는 기업체인 법인과 그 자본주 사이에 발생하는 對 資本主關係에 기초하는 거래에 한정한다. 즉 세무상의 자본잉여금은 관념적으로 주주, 출자사원, 출자자 등 법인의 자본주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투하자본」(invested capital)이, 형식적인 의미의 자본에 불과한 「법정자본」(legal capital)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실체를 전제로 하면서 계속사업의 전제로 자본잉여금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기업회계와 자본주의 투하자본인 법정자본과 기타의 부분으로 구별하여 보려는 세무회계간에 현저한 입장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¹⁴⁴⁾

144) 富岡幸雄, 『稅務會計學』, 森山書店, 1978, pp. 111-113.

마) 差異發生에 관한 意見書-「第一次稅法調整意見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와 그 내용에 관하여 일본과 미국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의견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일본에서는 1952년 6월 기업회계기준심의회에서 「稅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소위원회 보고)」(이하 「제1차 稅法調整意見書」라고 약칭함)를 제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1952년 10월 미국 회계학회(AAA)의 「會計原則委員會(Committee on Concepts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에서 「會計原則과 課稅所得」(Accounting Principles and Taxable Income)이라고 하는 Supplementary statement 제4호를 발표하였다. 공교롭게도 이들 두 의견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도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제1차세법조정 의견서」는,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고 있는 제원인으로, 다음 6개의 원인을 열거하고 있다.

① 어떤 所得에 대한 稅法上的 免稅

기업 손익계산상 총수익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조세정책상 이유로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

② 非所得에 대한 稅法上的 課稅

기업 손익계산상 총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항목을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收益認識 時期의 差異

수익의 연도귀속에 관하여 기업목적에 위한 회계와 조세목적에 위한 회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즉, 기업의 손익계산상, 어느 회계 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받는 수익항목, 또는, 다음 회계기간에 이연된 수익 항목에 관하여, 세법상 이와 다른 연도귀속의 해석이 성립하는 경우

④ 損金控除의 稅務上 否認

기업회계 목적상으로는 총수익에 부담시켜야 할 비용항목을, 조세목적상, 총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

⑤ 非費用의 租稅政策上 損金計上 許容

기업 목적상 비용을 구성하지 않는 종류의 항목을, 조세목적상, 총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시인하는 경우.

⑥ 費用認識 時期의 差異

비용부담의 연도귀속의 해석에 있어서 기업목적에 위한 회계와, 조세목적에 위한 회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상에서 기업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로서 6개의 형태를 들고 있는 바 「조세정책상의 목적」이라고 하는 항목 이외에는 대부분 차이의 외형적인 차이를 분류한 것에 불과하여 각각 차이의 원인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¹⁴⁵⁾

145) 富岡幸雄, 『전계서』, p. 107.

2) 稅務會計와 企業會計 差異의 調整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업회계상 기업의 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 사이에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각국에서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주장들이 수없이 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여전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일본에서 전개되어 온 바 있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조정에 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가)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와의 調整에 관한 第一次 調整論議

(1) 企業會計 優位の 立場

기업회계상의 기업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과의 차이에 관하여 1952년 6월 16일 일본의 기업회계심의회 소위원회는 그 중간보고로서 「稅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이하 「第一次 稅法調整意見書」로 함)를 발표한 바 있다. 동 의견서의 기본적 입장으로서는 「세제상 또는 세무상의 이유에 의해 기업의 실제의 순이익과 실제의 과세소득과의 사이에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해도, 공정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라서 산정되는 기업의 순이익은 과세소득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세법상에 기업의 소득개념도, 이 의미에서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유도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 동 위원회의 기본적 주장으로 「세법상 소득계산의 기본개념도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근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목적을 위한 회계와 조세목적에 위한 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第一次 稅法調整意見書」에서는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관계를 「所得本質上の 合致」와 「實際上の 差異」로 보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양회계에 있어서 소득본질상 여러가지 점에서 실제상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때의 차이 역시 조세정책상에서 과세소득과 기업소득과의 실제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第一次 稅法調整意見書」는 「세법은, 순익계산의 원칙을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서 산정된 소득을 가지고 과세상에 있어서도 소득으로 인정하고, 다만 이것에 대해 조세정책의 견지에서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에 서서 기업회계 우위의 사고를 견지하고 있다.

(2) 課稅當局의 反論

기업회계의 입장에서 세무회계를 보고 단순히 그 차이를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하려는 기업회계의 입장에 대하여 세무당국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상법 및 기업회계원칙과 세법에서의 회계는 그 목적이 다르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 기업의 이익 내지 소

득을 계산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고, 「기업회계원칙이 유일절대인 것이고, 상법도 세법도 이것에 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전혀 독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여 세법상 소득계산의 근본이념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第一次 稅法調整意見書」의 견해에 대해 근본적인 반대논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와의 調整에 관한 第二次 調整論議

(1) 稅務會計의 意義를 認定하는 立場

앞의 제일차 세법조정논의에 이어 일본회계연구학회는 1964년-1965년 및 1965년-1966년도에 세무회계특별위원회를 통하여 1966년 5월 26일 동위원회의 보고로서 「企業利益과 課稅所得과의 差異 및 그 調整에 대해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일차 조정의견서에서의 내용과는 달리 기업회계상의 기업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근본원인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각각의 목적이념과 그 연원에서 탐구하고, 그 조정방법을 원리적인 측면에서 해명하려고 하였다.

상기 세무회계특별위원회보고에서는 세무회계는 세법이 처하고 있는 환경조건에 좌우되고, 그 시대의 조세이론 내지 조세제도상의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조세원칙에서 발단이 되는 세무회계상의 기본원칙 및 그로부터 유도되어 나오는 세무회계 특유의 구체적 제원칙에 지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로 인하여 과세소득과 기업이익의 차이가 초래되는 근본원인을 명백히 하고,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 세법의 개정을 요망해야 하는 것과, 세무재무제표 또는 신고조정방법에 의한 조화를 구별하여 추구해야 한다는 이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세무회계특별위원회보고는 이어서

「세법과 기업회계원칙과의 조정을 논의하려면 그 전제로, 세무회계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시키고, 세무회계 자체의 입각점, 세무회계를 지배하는 기본원칙 및 소득계산원칙을 같이 해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무엇보다 세법규정의 비판과 조정을 위한 제안이 가능한 신뢰되어야 한다.」¹⁴⁶⁾ 라는 입장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어서 세무회계특별위원회 보고는 다음과 같이 그 기본적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업회계를 지배하는 회계제원칙도, 세무회계를 지배하는 소득계산제원칙도 함께 생성 발전하고, 양자 사이에 있는 차이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차이는 작지 않다. 거기에는, 납세자(기업)사이에서의 조세부담의 공평성, 납세절차와 세무행정과의 쌍방의 간편성, 기업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관계상 및 세법의 산업정책 및 사회정책 참가의 관계상 발생하고 있는 차이로서 이는 배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차이가 있다. 또 세법이 별다른 지장 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의 제원칙에 따름으로서 소멸시킬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차이에 관해서는 기업회계를

146) 「企業會計と課稅所得の差異及び調整について」, (日本會計研究學會 1964-1965年度および1965-1966年度 稅務會計特別委員會) (1966년 5월 26日) 序言.

세법의 계산원칙에 따르게 하여 이것을 제거하는 방식이 취해져야 된다. 다만 차이의 존재를 용인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조화가 계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지금까지의 기업회계에 대한 세무회계의 의존성 주장에서 후퇴하여 세무회계의 독자적인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득이한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신고서에 의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세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양회계가 동시에 그의 목적을 위하여 건설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손금인정시 장부기장을 요건으로 하는 확정결산기준 원칙에 있어서, 「손금경리를 내용으로 하는 확정결산기준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적정한 비용항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세무회계상 손금경리를 요구하고, 확정결산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명백히 하여 「① 회계원칙상 비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의 비용항목의 금액중에, 회계원칙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넘는 금액」에 관해서는, 「손금경리를 요구하는 것은 고쳐져야 함」을 주장하고 부당한 기장요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때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3가지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 ① 이익처분에 의해 목적적립금을 설정하는 방법
- ② 세무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고, 여기에 조정 항목을 기재시키는 방법
- ③ 납세신고서에 조정항목을 기재시키는 방법

(2) 企業의 自主的 經理를 強調한 意見

상기 「세무회계특별 위원회보고」에 이어, 기업회계심의회특별부회는 1966년(소화 41년) 10월에 「稅法과 企業會計와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이하 「제2차 세법조정건의서」라고 함)를 발표하고 「세법이 과세소득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주적 경리를 존중해야 하는 주장을 기조로 한다.」라는 기본적 태도를 취하면서, ① 세법에서의 적정한 기업경리의 존중, ② 기업의 회계실무에서의 계속성의 중시를 제기하고, 구체적으로는, a) 회계방법 선택의 자주성, b) 중요성 판단의 탄력성, c) 획일적 기준의 완화, d) 사실인정의 자주성, e) 표시상의 조정 등을 제안하고 1967년(소화 42년)의 세법개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세법에 반영하려고 하였다.

제2차 세법조정건의서는 조정에 관한 의견에서 「세법과 기업회계원칙 사이의 차이라고 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세무행정인 기업의 회계실무의 현상에 유래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법과 기업회계원칙과의 조정문제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에 서서, 「조정의 대상을 세법과 기업회계원칙만에 한정하지 않고, 세법·세무행정과 기업회계원칙·기업회계실무 사이에 있는 차이도

받아들이고 있다。」로 하고 있다.

특히 동 조정의견서에서는 「세법은 기업의 적정한 자주적 경리를 존중하고, 자주적으로 계산한 기업이익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의 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라고 하여 「稅法에서의 企業의 自主的 經理의 容認」을 중요시하고 있다. 기업의 적정한 자주적 기업경리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양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¹⁴⁷⁾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기업회계에 대한 세법 규제의 완화, 적정한 자주적 경리의 용인을 표명하는 기본규정의 제정, 회계방법의 선택에서의 자주성의 용인, 중요성의 판단에서의 탄력성의 용인, 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확일적 기준의 완화, 사실 인정에서의 자주성의 용인, 확정결산에서의 표시상의 규제의 배제가 주장된 것이다.

3)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관계에 관한 論議

가) 稅務會計의 企業會計에 대한 相對的 依存關係

기업회계상 기업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 차이의 존재를 파악하고 양회계의 관계를 이론적 실무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양회계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① 완전동일설, ② 상호독자설 ③ 절대적 의존관계설, ④ 상대적의존관계설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많은 것은 상대적 의존관계설로 설명된다.

과세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확립된 기업회계원칙에 준거하여 결정된 기업이익을 기초로하여 여기에서 유도적 내지 조정적으로 계산파악하는 것

(2) 조세목적에 부합하는 조세의 기본이념 내지 세무회계공준 및 세무회계원칙에 照準된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기업이익과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과세소득의 계측체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과세소득의 개념구성 및 계측에서 기업회계에 의존하면 서도 한편으로는 세법 독자적인 세무회계공준 및 세무회계원칙하에 그 소득계산체계를 형성해야 하는 기능을 행해야 하므로 이는 곧 사회적 제도인 기업회계제도에 의존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계산규범을 가질 수 있다는 상대적인 의존관계로 보는 것이다.¹⁴⁸⁾

147) 番場嘉一郎, “稅法における企業の自主的經理の容認-稅務と企業會計との調整に関する新意見書の解説-”, 『企業會計』, 第18卷 第11號 (1966年11月號) p. 109.

148) 井上久彌, 「企業課稅原理と會計基準の交錯」, 『企業會計』, '90 vol. 42 No. 5, pp. 14-25.

나) 企業會計의 稅務會計에 대한 依存

세법상 과세소득의 결정은 조세목적(tax purpose)을 위한 회계절차로서 이는 기업회계상 「일반목적」인 기업의 순이익 결정으로서의 공표재무제표목적(purpose of published financial statement)과는 다른 것이며 세무회계는 기업회계 목적에 대한 「특수목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한 논리에 의하여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의존한다는 상대적 의존관계설이 주장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법에서 두고 있는 여러 가지 과세소득산정에 관한 회계규정은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처리의 절차를 채용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세법에서 조세특례를 주는 경우 「기장요구」(booking requirement)를 하는 특례계산 규정을 두고 특정의 회계처리방식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¹⁴⁹⁾ 이에 대한 규정은 특히 법인세법에서 확정결산기준원칙을 택함으로써 기장요구를 강제하고 있고 법인은 기장에 따른 손금정리를 하지 않으면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회계의 실천측면에서는 세법의 영향과 지배적 구속을 받고 있고, 현실의 기업회계에 관한 규칙으로서의 상법,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규칙의 기초가 되어 세법규정이 기업회계실천에 있어서 사실상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고, 말하자면 「세무회계규정의 기업회계운영에의 실질적 기준화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경우 기업회계는 순수하게 기업회계 원리와 기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세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외형적으로 과세소득은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된 이익을 확정적으로 파악한 후에 사후적으로 세무적 조정을 통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기업회계 그 자체가 사전적으로 세법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

다) 稅務會計가 다른 會計에 미치는 影響

(1) 商法規定의 形成·改定에 대한 稅法의 影響

조세목적상의 회계규정이 기업회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회계와 영역을 같이 하는 상법상의 회계규정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즉 결산재무제표에 세법의 규정이 영향을 받게 되면 상법상 회계규정의 형성 및 기업회계원칙의 형성·개변 및 해석운영면에서도 영향을 주어 상법회계가 세무회계에 규제를 받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상법 제287조의 2에 규정된 특정 지출 또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즉 특정충당금은 그 범위에 대해서, 기업회계상의 부채성 충당금보다 훨씬 넓은 이익성 충당금까지도 포함하는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에 실무계에 있어서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취해져 오고 있다.

149) 미국의 경우 LIFO법의 기장요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기업회계상 당연히 이익의 유보라고 본 가격변동준비금이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의 조세특별조치법상의 준비금 그리고 특별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이 조세상 특혜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현실적인 배려가 결국은 상법의 계산규정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정충당금은 그 입법취지에서 볼 때 세법상 인정하고 있는 특별규정도 회계실무의 입장과 통일시키기 위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 요망되기 때문이나 이는 기업회계이론이 의도하고 있는 본래적인 충당금과는 현저하게 성격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 동시에 상법자체의 정상인 논리에서도 일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¹⁵⁰⁾

(2) 企業會計原則의 形成·改正 미치는 稅法의 影響

세법규정이 「기업회계원칙」의 형성 및 개변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많은 사례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경향은 1974년(소화 49년) 8월에 이루어졌던 「기업회계원칙」의 일부 수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되었다.

상법상 인정하고 있는 시험연구비, 개발비 등의 일련의 특수한 이연자산에 관해서 원래는, 기업회계적 사고를 상법에 도입하는 것을 배경으로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으로 하는 상법상의 상각규정에 세법규정을 조화하게 하는 명목으로 세법규정도 임의의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 자유롭게 상각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 세법규정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조세특혜상의 효과(일시, 또는 조기 및 수시로 상각하여 손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를 최대한 향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곧 세법규정이 「기업회계원칙」을 수정하는 측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연자산의 상각에 관해서는 종래는 「일정의 상각방법에 의해 각사업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었으나 이를 수정하여 「이연자산에 관해서도, ……각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배분하여야 한다」(대차대조표원칙 「5」)로 고친 것은, 표견대상으로는, 상법상의 이연자산의 상각규정과 조정의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적인 의미로는, 실제로 세법이 허용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 개발비 등에 관한 수시·임의액 상각이라는 조세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회계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업권의 경우에도 「매기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으로 주해 「주25」가 창설된 의미와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이 제도회계영역에서 세무회계규정은 기업회계의 실질적 기준화 현상 뿐 아니라 세무회계규정이 기업회계원칙의 형성에도 작용하여 「세무회계규정의 기업회계기준에의 형성요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무회계는, 회계영역에 있어서는, 조세목적에 위한 특수목적의 회계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특정의 회계방식을 요구하고, 그것이 기업의 잠재적 내지 실질적인 조세특혜에 결합함에 따라 세제상 기업회계에 대한 영향이,

150) 富岡幸雄, 『전계서』, pp. 150~152.

현실적으로 기업회계분야에서의 회계적 개념을 변모하게 하고, 기업회계 원칙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세무회계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재무회계에의 기준화 역할을 하여 기업회계기준의 형성요인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무회계규정이 기업회계의 원칙의 형성에도 반대로 작용을 하는 「세무회계규정의 기업회계기준에의 형성요인화 현상」은 특히 근래에 보이는 현저한 특징으로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이기도 하다.¹⁵¹⁾

4)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一致論에 대한 批判

가)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無理한 一致論에 따른 問題點

(1) 租稅理念의 毀損

㉠ 課稅所得의 彈力化와 侵蝕化 現象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앗아가는 강행법규이면서 동시에 조세법규는 곧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다. 인류의 역사가 조세로부터의 핍박의 역사였고 이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피와 땀으로 얻어 낸 것이 국가는 법에 의하여만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이다. 즉 조세법률주의는 국가의 과세근거를 정한 측면보다는 과세권으로부터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문제에 있어서 가장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맞는 과세권의 행사여부에 있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의 결정과 관련되는 손익의 계측에 관한 세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과세표준의 계측규정은 마땅히 세법에 두고 있어야 하나 그 이전에 기업회계로서 발전한 회계이론과 기법이 선행되어 있으므로 굳이 세법에서 중복적으로 둘 필요가 없어 이를 기업회계로부터 차용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법은 기업회계에서 예상하지 않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세밀하고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과세소득의 계산은 조세목적상 기업의 이익계산 목적과 다른 부문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를 그대로 준용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목적상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하여 차이가 있다. 또한 과세의 공평성과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하여 기업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준과는 다른 측면이 많다.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성을 위하여 조세포탈이나 조세회피를 규제해야 하고 이에 맞는 세제와 세무회계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최근 세무회계의 동향은 세제간소화라는 구호에 밀려 「상법·기업의 회계관행 등과의 차이축소」를 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고 과세소득의 계측규정도 점점 기업회계의 탄력적인 계산규정을 도입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련의 세법 제규정의 개

151) 富岡幸雄, 『전계서』, pp. 152~154.

정 및 이를 계기로 하는 세무행정상의 취급의 완화는 1969년(소화44년) 7월로부터 시행된 신법인세 기본통달 등에 의해 영향을 주어 기업의 세무회계에 관한 모든 규정에 실질적인 변모를 가져와 「과세소득개념의 변모현상」이 현저하게 일고 있다. 이는 세제의 간소화와 상법·기업의 회계관행 등과 과세소득 계산의 조화를 지향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세소득 계산의 탄력화·과세소득의 계산자유화의 이름 하에, 사실은, 바로, 「과세소득의 침식화(erosion of taxable income)현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과세소득의 변모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바 이는 조세의 목적과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기업의 자주적 경리를 존중하고 기업의 회계관행이나 상법규정과의 조화의 실현을 위하여 세법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점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라든 바라지 않던 그로 인한 역작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관계 당사자의 입법, 형성과정에서의 순수한 선의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초래된 결과적 사실로, 「과세소득의 침식화현상」이 지극히 현저하게 초래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나) 課稅의 基本原則인 公平原理의 쇠퇴

과세소득계산의 간소화·탄력화는 현실적으로 소득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 그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에 있고 이것이 「과세소득의 침식화현상」으로 이어져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실질적으로 증대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세감면조치에 해당하는 각종의 준비금전입액, 특별상각 등이 정책적으로 세법에 도입되어 기업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 있지만 이들이 기업회계의 존중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공표재무제표에서 제외됨으로서 일반적인 관심을 피하고 통계적으로도 파악되지 않아 공평과세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시험연구비, 개발비 등의 이연자산이나 무형고정자산으로서의 영업권의 자유상각제도의 도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과세소득의 사실상의 축소를 나타내게 하고, 이들은, 기업경리에 숨겨지면서 일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 조세부담의 실질상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조세에서의 중요한 공평원리의 현저한 「쇠퇴한 현상」을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세제와 기업회계와의 조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조세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적정 타당한 세법·세무회계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세무회계규정의 개정이 야기하는 특징적 문제점을 명백히 하여 공평과세의 원리가 쇠퇴하는 현상에 대응하는 논리와 방법도 병행하면서 세제간소화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企業會計制度의 問題點에 대한 認識의 重要性

과세소득의 산정시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또는 존중한다는 기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를 세법상 회계기준으로 삼는 전제는 기업회계가 그 본래의 계산기능을 충분하고 필요하게 다 할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있다면 과세소득의 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본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회계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상 부족함이 있더라도 감사자 또는 회계작성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어 별로 문제가 안될 수 있다. 그러나 정교하고 엄격해야 하는 법회계로서의 세법체계에서는 그러한 결합이란 용납될 수 없다.¹⁵²⁾

현재의 회계환경은 일찍이 겪지 못한 격변을 마치고 있다. 우선 산업사회 그 자체의 문제에만 국한하여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비약적 진보, 기업규모의 질적·양적 확대, 기업활동의 국제화, 경영관리 기술의 변화무쌍한 발전, 컴퓨터의 보급과 그 이용의 고도화, 의사소통시스템의 경이적 발달, 정보혁명의 진행, 관련제과학의 학제적 연구개발의 진전 등,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혁의 크기나 질적인 고도에 있어서 경탄할 만하다. 이러한 현저한 변혁의 물결은 회계 및 회계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따라서 회계본래의 기능과 의의를 다시 조정하는 새로운 이론의 형성과 방향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또한 회계를 회계정보의 창출과 그의 「유용성」에 두고 있는 1969년에 공표된 AAA 외부 보고회계위원회보고서에서 외부보고회계의 목적을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가의 「표준적 투자평가모델」(normative investor's valuation model)을 설정하고 있다. 이 표준적 투자가의 주요한 관심은 기업의 순이익이나 배당가능이익이 아니고, 「투자에서 발생하는 기대현금유입의 유효수정현재가치(the utility adjusted present value of the expected cash flows)에 있다」에 두고 있다. 주주에게 기대현금수입은 기본적으로 (1) 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한 기대배당액(expected dividend stream)이고 (2) 보유기간 말에서의 주식의 최종 순매각가격(net sale price)과 같은 구성요소로부터 성립한다.¹⁵³⁾

이와 같이 ASOBAT의 외부보고회계영역에의 전개를 시사하여 AAA 외부보고회계위원회의 보고서는, 투자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입장에서 구성되고, 투자가의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변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보(여기에서는, cashflow의 기대액의 예측정보)의 제공이 중심적 과제가 되고, 전통적인 회계적 이익개념은, 완전히 후퇴하고 있는 점에 현저한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정보론은 기업행태를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 시스템과 결합시킴으로써 일종의 행동과학적 접근에 의해 논리화하고, 거기에서의 회계정보기준은, 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실용적 유용성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원

152) 富岡幸雄, 『전계서』, pp. 169-175.

15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 p. 8.

적인 정보의 개발과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회계는 종래의 입장 즉 충실한 기간손익의 산정에서 멀어지고 미래지향적인 정보유용성에 두고 있어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인 세법상의 과세소득의 산정과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나) 無理한 一致論에서의 脫皮

세법규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을 둘러싼 제2차 세법조정논쟁을 통하여 세법의 회계규정에 기업회계적 논리를 대폭적 도입하여 침투하게 하였고, 기업회계의 원칙이 세무회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에 있는 차이는 대폭적 축소되었다. 그 반면, 기업의 「자주적 경리의 용인」이나, 「사실인정의 자주성」을 존중하는데 치우치고, 또, 「중요성 판단의 탄력성」이나 「확일적 기준의 완화」의 면에 있어서도, 세법규정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세법규정의 완화화와 탄력화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법규정의 추세는 역작용이 일고 있다. 즉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주의, 실질과세주의 등에 있어서 조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과세소득의 침식화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기업회계 원칙을 준거해야 한다는 전통적 조정론을 반성하고 그 조정논의의 의의와 방법론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목적이념과 이에 대응하는 각각의 회계논리의 차이를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종래부터 취해져 온 세무회계에 대한 기업회계의 준거성을 주장하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고치고, 조정문제를 진행시켜, 바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154)

다) 企業會計에의 相對的 依存關係性和 稅務會計 獨自性과의 整合

세무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확립된 기업회계의 원칙에 준거하여 결정된 기업이익을 기초로 하고 그로부터 유도적 내지 조정적으로 과세소득의 계측을 행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목적에 위한 이념과, 확립된 기업회계원칙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하는 차이」, 즉 「타당성이 있는 논거에 기초한 차이」가 존재하는 분야에는 그 타당성이 수용되고 기업회계에 대한 세무회계의 독자성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얻어지는 그 독자성을 주장해야 한다.

기업회계와의 조화를 의도하는데 지나치게 기울어 세무회계규정의 탄력화·자유화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의 변모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무리한 일치로 인한 逆作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회계원칙에는 기업회계원칙 본래의 독자적논리와 정신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무회계 역시 그의 독자적 논리와 그 지향하고 있는 본래의 정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154) 富岡幸雄, 『전계서』, pp. 165-166.

이처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각각의 목적이념과 회계논리에 근본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자의 규정을 완전히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양자의 접근으로 조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 독자성의 논리를 무시하고 비논리적으로, 「편리적인 타협」을 시도한다면 결국은 새로운 모순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무회계에서의 과세소득의 변모현상」을 초래하고 또 반대로 세무회계측에서 상법·기업회계원칙에 반작용적으로 영향을 주어 기업회계기준의 형성에 세무회계규정이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소득개념의 명확화 및 과세소득 계측체계의 형성에 대처하고, 세무회계 독자의 논리로 특유의 세무회계이론을 개발하여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논거에 기초한 기업이익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지지하여 그 차이의 존재를 타당하다고 하는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아울러 오히려 그 차이의 존재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과세소득의 계산체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¹⁵⁵⁾

155) 『상계서』, pp. 168-169.

IV. 課稅所得 算定에 관한 우리나라 稅法規定과 企業會計와의 關係

1. 우리나라 企業會計의 生成 發展과 現況

가. 企業會計의 生成과 發展

1) 企業會計基準 制定 以前의 會計

가) 松都 治簿法(1899년 이전)

우리나라에서 會計에 관한 記錄으로 확인될 수 있는 최초의 것은 고려시대의 「松都 治簿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고려시대의 상인들은 松都(開城)를 중심으로 하여 상업과 무역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松都治簿法이 있었다. 이것은 현재의 복식부기의 구조적 형태를 갖춘 것으로 중세 「이태리」의 북부지방 도시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파치올리」식 장부기록법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한국의 회계역사도 서양의 복식부기의 역사와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고려시대의 수도 송도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사용한 「四介治簿法」은 이태리식 복식부기와 비교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기장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복식부기는 활발한 상공업의 발전과 함께 생성 발전하게 되는데 그동안 고려 이후 상공업의 발전이 미약하고 농업국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고려의 「四介治簿法」이 일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송도의 상인을 중심으로 일종의 秘法的 방법으로 전승됨으로써 공식적인 문헌이나 기록이 미약하여 그후의 발전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¹⁵⁶⁾

나) 複式簿記의 導入

우리나라 복식부기의 도입은 일본인 등의 외국상인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즉 1876년 강화조약의 체결로 개항을 하게 됨에 따라 商業資本主義를 추구하는 外國人 定住商人(Sedentary Merchant)이 대량 유입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¹⁵⁷⁾. 그러나 그것은 주로 일본국적의 商館이었기 때문에 조선 내의 보급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다가 1910년 한일합방 후에 와서 복식부기가 정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제는 조선진출을 위하여 日本系 大資本에 의한 회사를 조선 내에 설립하고 이에 적용할 일본

156) 具種泰, 『複式簿記의 生成史에 관한 研究』-이태리식 기장법과 송도치부법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1997,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114.

157) 金廷坤, “한국 近代會計의 發生史的 研究” 『會計』, 第19호, 한국공인회계사회, 1983, p. 52.

의 회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 일본식 複式簿記가 도입되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¹⁵⁸⁾

다) 現代的 企業會計의 導入

해방 이후 美軍政의 출범으로 남한에서 우선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기초 하에 일본식 통제관리정책에서 자유경쟁적 경제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회계사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미군정 시행 직후인 1945년 9월 28일 「朝鮮計理士會」가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이들의 업무는 주로 미군정청의 위촉을 받은 日本人 소유로부터 귀속된 사업체에 대한 會計監査였다.

그 당시 일반적 會計基準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었으나 미군정청이 발한 「管財令 第5號」가 회계기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미군정청은 1946년 7월 30일 과거 일본정부 및 일본인 소유인 사업체로서 그 소유권이 군정청에 귀속된 것에 대하여 「管財令 第5號」를 발하고 이에 따라 재무보고의 제출의무를 규제하였던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인 혼란이 극심하고 실무적으로도 複式簿記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회계규범의 마련이 매우 어려웠던 환경이었다. 그런데 美軍政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管財令 第5號」 및 관련 지령을 발하고 그에 따라 각종 귀속사업체에 대하여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한 財務諸表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라는 회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착근하는데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제 통치로부터 갑자기 타의에 의한 해방으로 해방의 충격을 정리할 틈도 없이 밀어닥친 국토분단, 군정시행, 인플레이션의 급속화, 북한으로부터의 送電의 제한과 단전, 생산위축, 정적들 간의 암살과 혼란 속의 정부수립, 여순반란사건(1948. 10. 19), 6.25동란, 농지개혁, 휴전협정 등으로 점철된 정치, 사회, 경제의 총체적 불안정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성격이 미처 제대로 비쳐질 겨를이 없었고 이에 따라 기업회계의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는 회계의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고 회계가 담당해야 할 기증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2) 企業會計原則의 制定

가)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의 制定

1950年代 중반까지는 해방에 따른 혼란과 6.25동란으로 인하여 회계제도가 사회적 제도로서 뿌리내릴 여유가 없었고 또한 실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욕구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경제발전을 국가의 지상과제로 삼아 정부 주도하에 각종 經濟開發

158) 조선질소비료(野國系-1927), 조선맥주(三井系-1933), 북조선제지(三井系-1935) 등 중공업 부문에서 日本 本國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複式簿記가 시행되었다.

政策과 더불어 外資導入, 企業의 育成 및 健全化 誘導, 租稅의 公正化, 金融의 適正化, 資本市場 基盤의 確立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하여는 기업회계의 확립과 발전이 그 전제조건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이상 기업의 재정상태와 영업실적을 파악하고 공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다. 자연히 기업의 회계를 정확한 이행하도록 하는 통일된 회계규범이 필요했던 것이다.

1953년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하고 1954년 부흥경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생산기업이 육성, 발전하게 되었고 韓國産業銀行은 우리나라 大企業의 시설자금 용자를 전담하게 되었다. 동 은행은 거래기업체의 財務諸表를 요구하고 동 銀行調査部에서는 선진 외국과 같이 同種 企業간 그리고 각 기업의 연도별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비교분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동 조사부가 거래기업체로부터 제출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會計處理에 일정한 회계원칙도 없었고 형식 및 계정과목이 각양각색이었다. 동종 기업간 재무제표 형식, 계정과목의 명칭 및 배열방법이 통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기업의 사업연도간에도 재무제표의 형식 및 계정과목이 매년 달라 기업체의 재무제표분석 내지 경영분석지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로 인해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財務部에 우리나라 企業會計準則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¹⁵⁹⁾ 재무부는 「韓國計理士會」에 그 초안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1958년 우리나라 최초로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을 제정되었다. 이는 기업회계가 사회제도로써 성문화되고 우리나라 會計史의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기업회계원칙은 학문적 견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리원칙을 규정하는 것이고, 재무제표규칙은 “원칙”의 뒷받침에 따라 재무제표의 표준양식과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초안하는데 그 기초로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기업회계준칙에 해당하는 기준·준칙·원칙 등을 번역하여 작성자료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사회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장래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이상적 규범의 제시로 그쳤다.¹⁶⁰⁾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우리나라의 회계실무 속에서 발달된 제원칙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바를 요약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인 제기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당시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전반적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선진 제국에서 주식회사의 발전은 개인적 회계에서 제3자적 회계로 발전적 변천을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주식회사제도가 자본주의 초기적 발전 단계의 기업형태인 동족회사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회계기록과 공시에 대한 필요성이 거의 없었고 출자자 개인의 인격에 예속되는 개인적 회계 또는 계산적 회계에서 침체 방황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세수확보위주의 징세행정과 세무부조리로 인하여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기업회계는 발전할 수 없는 상황 등 사회적 현실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수용성이 없었던 것이다.¹⁶¹⁾

159) 韓國公認會計士會, 『韓國公認會計士會 三十年史』, 1992, p. 294.

160) 김정곤, “韓國原價計算制度의 發生史的 研究”, 『會計』, 第2號, 한국공인회계사, pp. 35-36.

나) 會計原則의 擴張 및 法制化

(1) 「企業公開促進法」의 制定과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 등의 制定

1958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회계원칙」은 15년간의 시행을 거치면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법의 근거없이 재무부 장관의 고시로서 제정되어 실시되어 왔던 재무제표규칙은 1962년 이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회계감사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준수되어 왔다. 그리고 1968년의 세제개혁시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신고시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폭넓게 확산되고 있었다. 동시에 1968년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방법을 지향하기 위하여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고 1972년에는 「企業公開促進法」을 제정하는 등 종래의 가족회사 형태의 주식회사에서 벗어나 투자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개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부터 기업공개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게 이르렀다. 이를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상장법인,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상장하려는 법인, 증권회사, 지정받은 등록법인 등이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첨부되는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업공개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상장회사수의 급진적 증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행에 따른 수출 증대, 외국과의 투자 규모의 증대 및 그에 따른 자본조달 문제, 기업의 사회적 및 공공성 제고, 기업이해관계자 들의 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 국내외의 회계이론 및 실무의 발전등 기업경영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기업의 올바른 재무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회계제도의 개선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등 회계환경이 급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회계환경의 변화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73년 초를 전후하여 관계당국에 기업회계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심의위원회」에 의하여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과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¹⁶²⁾ 등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들은 197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2) 株式會社の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의 制定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기업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짧은 기간의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기업의 체질은 약화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됨으로

161) 김정곤, “韓國近代會計의 發生史的 研究”, 『會計』, 第19號, 한국공인회계사회, 1983, pp. 58-59.

162) 재무부령 제1098호

써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대두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그간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정책이 대내외적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 일어나고 수출지향의 경제도 하향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9월 27일 당시 제5공화국의 개혁입법을 주도하던 국가보위입법회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전체에 혁신적인 바람을 불어넣고자 「企業體質強化對策」을 공표하고 여기에서 특히 外部監査制度의 擴大實施를 표창하고 나섰다.¹⁶³⁾ 이러한 개혁입법의 하나인 「株式會社の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이하 ‘외감법’이라 함)이 정부의 기업체질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1980년 12월 31일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198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내부감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적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3) 企業會計基準의 制定

1980년 12월 3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상장법인인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모두 외부감사인 회계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경우 회사에 적용될 회계처리기준과 그 제정에 관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경원장관(당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되었다. 그 동안 내용이 동일하면서도 형식상 二元化되어 있던 「상장법인들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기업회계원칙 및 규칙」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하여 「企業會計基準」을 제정한 것이다.¹⁶⁴⁾

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으로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물론 그 이외의 모든 기업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정착,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회계기준의 일원화로 기업회계기준의 체계도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4) 聯結財務諸表基準

우리나라에서 연결재무제표가 제도화된 것은 1976년 「상장법인들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상장법인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하고서 부터이다. 그후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에도 동규정이 포함되게 되었고 종전의 회계기준을 통폐합

163) 당시 내세웠던 대책은 다음의 8가지이다. 즉 ① 기업의 부동산 소유 제한, ② 재벌기업의 계열기업정리, ③ 각종협회 및 조합 정리, ④ 회사정리제도 악용방지, ⑤ 구제금융의 최대한 억제, ⑥ 여신관리기능의 강화, ⑦ 外部監査制度의 확대실시, ⑧ 기업세제지원의 확대강화 등.

164)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계서』, p. 334.

하여 단일화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그대로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연결범위의 판정기준이 持分比率基準(過半數持分所有基準)으로만 되어 있어 지분분산이 심한 우리나라 기업실정으로는 사실상 연결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어 이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그룹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자본자유화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분비율기준으로만 되어 있던 종전의 연결범위에 實質支配力基準을 추가하고 연결방법과 절차의 규정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별도의 연결재무제표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연결재무제표기준은 그후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1987년 4월 개정을 하게 되었고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세부지침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준칙」을 제정하여 연결실무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연결재무제표기준과 준칙에 의하여 기업실무계가 자발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호응이 미약하여 연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5) 業種別 會計處理基準과 細部 施行事項의 新設

종래에는 판매, 제조 이외 업종의 財務諸表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기업회계기준 범주에 흡수하기 위하여 동 조문을 삭제하고, 새로이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증권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1983. 10. 20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을, 1985. 1. 1 「리스회계처리기준」을 각각 제정하였다.

그 외 기업회계기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企業會計에 관한 準則과 기업회계에 관한 例規로 會計制度諮問委員에서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제정된 기업회계에 관한 준칙과 예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준칙 1-110 企業會計基準에 관한 準則 制定 및 運用 指針	1982. 8. 4
준칙 2-130 半期財務諸表 作成 指針	1986. 12. 26
준칙 3-920 合併會計 準則	1986. 12. 26
준칙 4-700 聯結財務諸表 準則	1987. 4. 28
준칙 5-340 研究開發에 관한 會計 準則	1987. 7. 10

(6) 企業會計基準의 改正 및 補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3년여 동안 시행되어 오던 중 기업회계기준과 관련이 있는 상법 등의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회계실무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1984년 9월1일 기업회계기준의 일차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기업회계기준이 1차 개정된 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 실무 적용상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1985년 12월 27일에 2차 개정을 하게 되었다.

나. 우리나라 企業會計의 特性과 問題點

1) 環境的 特徵

(1) 激變과 混亂의 會計環境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도 松都治簿法이 발전하여 이태리식의 복식부기에 못지 않은 구조와 체계를 갖춘 적이 있어 우리나라의 회계역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본래 농경사회에서 계속된 농업위주의 산업구조와 상공업발전의 지체로 그 이상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밀려드는 西勢東漸의 물결속에 모처럼의 회계진전이 좌초되고 말아 매우 아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20세기 들어서서 현대문물을 접하면서 현대화과정에 들어섰던 당시 조선조는 주체적인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日帝의 식민정책에 함몰되고 말았다. 일제는 식민정책을 위한 산업정책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찍이 서양에서 전수된 복식부기가 우리나라의 회계로서 전수되었다.

1945년 8.15해방을 맞아 착실하게 독립국가로서의 사회건설에 초석을 깔고 현대적인 국가로서의 제반 경제·사회제도와 함께 회계제도도 제대로 갖추어 모처럼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계관행이나 회계 규범을 모색하여 정립할 겨를도 없었고 우선 미군정청이 발한 「管財令 第5號」에 의한 敵産事業體에 대한 회계규범이 시행됨으로써 아직까지 우리고유의 회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식의 회계가 도입되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日本의 敗亡으로 그간 일본식이나마 자리잡던 회계는 다시 어정쩡한 위치에서 관례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고, 타율적인 해방으로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이 거듭되어 독립국가로서의 사회제도를 정립할 겨를이 없이 정쟁의 연속속에서 6·25 동란을 맞게 되었고, 그후 휴전과 전후 전후 복구 속에서 기업회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업환경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고달픈 역사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격동의 세월이 계속되면서 사회제도의 정비는 뒤로 쳐졌고 따라서 회계제도의 성숙이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후 5·16군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경제개발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기업의 숫자도 늘어났고 국제적인 대기업을 출현하여 기업회계의 필요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6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지속되면서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이해조정적 기능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본래 기업회계의 기능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으로서 이는 곧 分配論理에 기인하는 것이나 당시 成長論理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하여 그 경영성과를 배분하는데 따른 논리개발은 자연히

뒷전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업회계는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하였다.

(2) 企業會計의 發展에 대한 社會的 壓力의 不足

기업회계의 발전은 본래 자생적인 것이다. 즉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회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으로 작용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영국이나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굳이 관계당국이나 기타 제도권에서 회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와 이에 대응해야 하는 회계전문가들의 권위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회계가 생성발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과 격변 속에서 기업회계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거의 없었고 특히 기업의 발전이 뒤쳐 있었기 때문에 회계발전에 대한 자극이 없었다. 해방 이후 거의 14년이 경과한 1958년에야 우리나라 최초의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이 제정된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회계의 기능은 회계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따라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회계보고책임의 이행과 해제라는 회계책임보고기능에서 미래투자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의 산출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그간의 우리나라의 회계는 우선 초기단계의 위수탁책임보고 회계기능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야 경제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기업다운 기업이 생성하기 시작하여 회계의 사회적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가족회사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회사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경영의 위수탁에 따른 보고책임회계의 이행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폐쇄적 가족회사의 경우 경영자는 곧 소유자이기 때문에 회계출발의 근간이 되는 위수탁회계의 보고책임(accountability)마저 제대로 자리잡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회계의 기능은 기껏 자기가 출자한 회사의 이익계산에 필요한 도구로서 만족할 수 있고 관계법령 특히 세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회계기록으로 그치려고 하였다.

(3) 우리나라 實質(reality)에 맞지 않는 外國 會計의 直導入

회계는 기업의 발전과 함께 하고 企業의 發展은 그 나라의 政治·經濟·社會의 環境的 要因과 연계되어 설명된다. 그래서 한 나라의 회계는 그 나라의 회계관습 또는 관행으로부터 출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회계는 우리나라에서 확립된 회계관행으로부터 일반화되어 성립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그것들을 대부분 모방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30여년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되었고 이에 따른 會計歷史 역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기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70년대에 들어서서 확장되었고 80년대부터는 기업의 대형화 국제화 단계로 확장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회

계관행이 무엇이든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업의 역사가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는 初期 生成期에는 日本의 회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성숙기에 들어서서는 美國의 회계를 받아들이는 등 외국의 회계를 모방하며 발전하여 왔다. 미국의 회계이론과 기법은 장구한 세월을 걸쳐 연마된 정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이 회계를 확고하게 받치고 있다. 독일은 실정법 국가의 모범국가답게 상법에서 정규의 부기의 원리(GoB)를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회계의 발전이 미국과 다름없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독일의 상법체계위주의 상법회계(GoB)를 패전 이후 미국식의 회계제도 즉 GAAP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회계연구와 제도개정으로 대처하여 왔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법회계(GoB)와 미국식의 회계원칙(GAAP)이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독일로부터 전수 받은 일본의 商法會計(GoB)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의 패망, 6.25전쟁, 전후복구 등의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치·사회적 급변과 짧은 기업의 역사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회계관행과 실무에 대한 정비나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식의 회계이론과 기법이 직도입되었다. 미국의 회계이론과 기법은 미국 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회계관습 및 실무를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발전과 정치·경제·사회가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미국 회계는 그대로 도입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기업환경과 회계 및 사회제도, 의식구조와 관행 더욱이 회계에 대한 연구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회계를 그대로 도입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회계환경의 실질(reality)에 맞지 않는 외국의 회계이론이나 제도를 직도입하여 기업회계가 매우 불안정한 예를 들면 합병회계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 합병회계는 합병의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일찍이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이 발전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합병은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만 인정되기 때문에 합병회계는 법률적 개념인 상법상 합병본질론으로부터 유도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의 매수법합병회계와 지분풀링합병회계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합병회계는 미국식의 합병회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회계 실체를 도외시한 외국 회계의 직도입의 전형적인 사례로서¹⁶⁵⁾ 이러한 현상은 각종의 회계기준이나 준칙에서도 비슷하여 실제 受用性(acceptability)이 적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4) 事實에 대한 記錄과 公開를 꺼려하는 國民意識과 經營觀

회계의 생명은 透明性에 있다. 모든 경제적 거래를 투명하게 내보여 이와 관련된 이

165) 이에 대하여는 李愚澤, “合併本質論과 合併會計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세무학 연구』, 제4호, 1993, pp. 131-149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 투명성의 전제는 會計記錄이다. 따라서 기록을 하지 않고 회계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유난히 기록을 싫어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종류의 조직체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인 일반적인 공감대이기도 하다. 기록은 곧 공개를 전제로 한다. 기록이 없으니 공개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연히 폐쇄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일이 처리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과거 개발년대의 경제정책은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에 따른 특혜와 정경유착의 연속 속에서 경영을 하였고 경영효율성을 전제로 한 경영 고유의 기법은 무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企業家精神(entrepreneurship)에 의한 경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층에서 한탕주의식의 특혜와 비리를 통한 경영에 익숙하였고 이는 자연히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제대로 공표하는 것을 태만히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방만한 차입경영과 정경유착에 의한 기업경영은 회계자료에 근거한 철저한 경영이론과 기법상의 경영의사결정이 아닌 비재무적 정보나 원인에 의한 경영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회계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진실되고 공정한 회계정보의 산출에 기본적 전제가 되는 眞實性의 原則과 正規簿記의 原則이 삭제된 것도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계정보는 정확한 會計帳簿를 통하여 산출될 수 있는데 회계기준에서 이러한 중요한 원칙이 삭제됨으로써 진실되고 공정한 회계정보의 산출에 대한 인식을 적게 하는 분위기를 더욱 촉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부분의 회계 연구와 관심은 회계의 社會的 義務를 달성하기 위한 진실되고 공정한 財務報告會計보다는 個人的 利害에 우선을 둔 意思決定會計에 치중함으로써 회계의 “非社會的 個人主義化”현상을 가져왔다.¹⁶⁶⁾ 앞으로 회계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하고 회계기준의 제정에 많은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만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2) 企業會計를 무시하려는 諸般 經濟法規와 經濟政策

(1) 經濟成長 論理에 排斥된 會計機能의 重要性

일반적으로 경제관계는 成長論理와 分配論理로 구분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그런데 성장과 분배는 서로 상충되는 비교선택의 관계(trade-off)로서 배타적인 관계에 선다. 회계의 사회적 기능인 기업회계는 이해관계의 조정 즉 분배의 논리를 제공하는 측면에 선다. 회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성장의 논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성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경우 회계는 장애요인으로 배척된다. 결국 성장을 앞세운 경제사회에서는 회계의 기능은 기를 펴지 못하고 도외시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계속되는 경제성장위주의 정치·사회적인 환경에서

166) 정기숙, “現代社會에 있어서 會計役割의 增大”, 『經營學研究』, 제 24권 2호(1995), pp. 1-34.

대부분의 經濟法規과 政策은 성장논리에 무장되어 왔고 그것은 최근까지도 자주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지속적인 성장논리에 의한 제반 법규와 정책으로 본래적으로 분배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회계의 기능은 무시되기 일쑤였으며 그 결과로 회계에 대한 관심은 항상 뒷전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었다.¹⁶⁷⁾

회계기준을 통한 회계규제가 재무보고 작성자나 경영자는 물론 정보 이용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규제의 효과적 방법, 담당규제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회적 효율성의 분석이 없이 각 정부 부처의 필요에 따라 각종의 법률이 적절한 상호 연계나 조정 없이 제정되고, 이미 존재하는 법적 규정에 의한 제한된 범주 안에서 회계기준 및 제도가 수립, 개정 또는 폐지되어 왔다. 자본주의 경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공정성, 독립성 등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발전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수용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타 관련 법규들이 회계제도에 우선하거나 회계기준과 독립적인 위치를 갖게 됨으로써 회계기준과 제도의 바른 정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¹⁶⁸⁾ 더욱이 실정법 국가체제하에서는 실정법규의 효력이 앞서기 때문에 처음 실정법적 체계를 갖지 못하고 출발한 기업회계기준은 상법과 세법의 권위에 눌려 독자성을 잃게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¹⁶⁹⁾

(2) 強力한 租稅政策과 稅務會計의 主導

우리나라에서 기업회계의 규범으로서 기업회계원칙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58년도의 일이어서 그전까지는 객관적인 회계기준이 없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회계가 이루어져 왔다. 그후 1960년 이후부터 강력하게 진행된 경제성장정책이 계속되었고 이를 위한 제반 특례조항 등이 세법에 개입되기 시작하여 세법의 중요 계산규정을 기업회계가 아닌 세법논리에 의하여 규제되어 왔다. 그간에는 아직 기업회계의 이론이나 기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회계의 관행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산발적으로 운용되었으나 계속되는 경제성장위주의 정부정책에 따라 다양한 產業政策이 稅法에 투영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무시하고 회계를 주도하였다.

이처럼 법률적 회계사고가 강한 상황에서 중요한 경제정책이 세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법의 규정을 우선시하는 법률주의에 입각한 稅法優先主義的 思考는¹⁷⁰⁾ 기업회계의 독자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 시대적 배경에서도 企業會計情報에 대한 사회일반의 요구수준이 낮아 기업의 회계실무가 대부분 세무회계

167) 최근까지도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 등과 같은 회계공시문제와 관련하여 성장논리 즉 경제회복에 장해가 된다고 하여 기업공시라는 사회적 기능을 회피하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168) 신준용, 『자본시장국제화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3, pp. 32-34.

169) 金亨柱, “會計制度的 改善方案”, 『上場協』, 1991, 秋季號, 한국상장회사협의회, pp. 4-6.

170) “상계논문”, pp. 42-53.

또는 세법상의 계산원리를 따랐고 세법을 따르는 기업의 관행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¹⁷¹⁾

다) 會計研究의 不足

(1) 會計學界의 研究不足과 方法論的 誤謬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회계는 급격한 정치·사회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 자체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격동속을 지나쳐 왔다. 그 후 급속한 경제성장 정책과 사회변동의 연속속에서 회계문제를 정리하고 자리잡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會計學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극복하면서 회계고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학계의 노력은 매우 미진하고 이를 임시방편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외국의 회계환경을 배경으로 성숙된 회계이론과 기법을 직도입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¹⁷²⁾

회계문제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를 주도해야 할 會計學會가 회계학계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려는 체제가 미약하고 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시 회계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¹⁷³⁾ 회계학계에서의 회계연구도 대부분 미국식의 沒價值的, 計量的, 立證主義的인 연구 방법으로서¹⁷⁴⁾ 사적목표추구 위주의 의사결정 또는 행동회계에 치중되었고 특히 기업회계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가치규범으로서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회계전문연구원을 두고 문제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설득력이 있는 의견의 개진이 필요한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상근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하여 회계기준 제정 또는 개정시 깊이 있는 전문의견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상태이고 연구투자에 매우 인색한 상황이다. 회계이론과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회계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연구가 불충분하다는 인식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적은 곧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가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회계학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회계의 사회적 측면에서부터 시작되어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기본적으로 회계의 선행적 기능은 회계의 사회적 책임(social accountability)을 이행하는데 있으

171) 林 采柱,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相互關係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p. 2

172)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은 물론 각종의 회계회계기준에 관한 준칙, 즉 연결재무제표 기준·준칙, 리스회계기준, 건설업회계처리기준, 합병회계준칙 등 회계처리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각 회계기준이나 준칙의 수용성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 있다.

173) 장영, 『우리나라 企業會計制度의 發展過程에 관한 考察』,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7, pp. 64-74.

174) 이러한 미국식 연구방법의 폐해에 대하여는 김정길, 「歐美의 方法論的 思考의 限界」, 『경기행정논집』 (제8집), pp. 37-52 참조 요.

며 이를 위하여 재무회계는 기업회계의 기본이 되고 있다.¹⁷⁵⁾ 기업회계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이를 이용한 투자자나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이론과 모델을 개발하여 사적목표달성을 위한 회계의 사적부문이 활발하게 접근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계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회계기준의 제정과 그의 着根을 위한 기업회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이미 이러한 회계발전을 전제로 한 회계정보의 응용 측면에 치중하고 있어 기업회계 즉 재무회계 측면은 매우 뒤져 있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에는 회계의 정확한 기록과 표시를 요구하는 정규의 부기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전반적인 회계계의 분위기는 기업회계의 발전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의 응용단계인 의사결정회계 또는 행동회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회계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정확한 기장에 의한 회계의 사회적 보고책임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회계의 본원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¹⁷⁶⁾

(2) 會計 專門團體의 研究 不足

회계의 출발은 실무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회계에 있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단체야말로 회계발전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고 회계실행자가 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미국공인회계사협회는 미국의 회계학회와 함께 회계발전에 있어서 양바퀴와 같은 존재이다. 회계학회는 회계이론과 개념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전체적이고 통일적으로 회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회계사단체는 개별적 실무적 문제들을 확인하여 문제해결식 해결과 함께 회계학계에 히드백함으로써 전체적이면서 구체적으로 회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938년 이후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CAP), Accounting Principle Board(APB) 등에 의하여 회계원칙과 방법 등을 정리·공표하여 옴으로써 전문회계사 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여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적었던 과거의 회계환경속에서 회계사의 회계발전을 위한 노력이 적었고 그러한 체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다 많은 회계전문연구원을 두고 문제를 심도있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설득력이 있는 의견의 개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연구투자에 매우 인색하고 있다. 기업회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의 하나이고 회계기준의 전문적 이용자 단체인 韓國公認會計士會도 상근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하여 회계기준 제정 또는 개정시 깊이 있는 전문의견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상태이다.¹⁷⁷⁾

175) 1973년 재무제표의 목적에서 사회적 환경관계를 고려한 재무제표의 목적이 추가된 것이다.

176) 정기숙, 전계논문, 1-34.

177)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공인회계사회가 회계기준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연구를 충분히 하고 있다.

(3) 概念的 構造(conceptual framework)에 대한 研究 不足

본래 우리나라의 사회제도는 大陸法國家의 實定法體系에 속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문제는 制定法(statutory law)의 형식을 통하여 해결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의 우리나라의 회계는 미국식 회계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회계문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회문제가 실정법이 아닌 慣習法에 의하여 해결하는 判例法 國家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습법 국가에 속하는 체제하에서는 각각의 관습과 판례를 통일성을 가지고 해석하고 집행하기 위한 概念構造(conceptual framework)를 필요로 한다. 특히 회계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용어가 의미하듯 실무와 관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와 관습을 해석하고 이끌어 갈 개념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에 관한 외국의 이론이나 기법을 도입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회계관행과 실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이 막연히 외국의 회계이론과 기법만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회계와 맞지 않아 수용성에 문제 많다. 미국의 GAAP는 미국의 기업에서 발생한 회계실무와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며 이러한 기업의 회계실무와 관습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이상 미국의 회계이론이나 기법 또는 GAAP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회계이론이나 기법 그리고 GAAP가 우리나라의 회계실무와 관행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개념적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적 구조의 연구는 회계학계에서 감당할 분야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회계기준의 설정과 개정, 그리고 회계정책등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구조에 대한 연구가 없이 외국의 회계제도와 사례들을 참고하여 條文形式을 갖춘 회계기준이 급조되었으나 실제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인 접근은 거의 공백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모든 회계기준이 그렇지만 특히 합병회계준칙이 가장 심한 예라고 할 수 있다.¹⁷⁸⁾

개념구조는 會計와 報告規準의 설정과 해석 및 적용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회계제도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적 자료와 근거가 된다. 특히 개념구조의 형성에는 「適正節次(Due Process)」를 거쳐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가와 합의, 타협 하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회계학 이외의 학문 영역에서는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 관한 기초개념을 개념구조로서 설정하려고 하는 경향 등을 볼 수 없다.¹⁷⁹⁾

회계개념구조는 이와 같은 「듀·프로세스」하에서 구축되므로 합의의 결과로 얻어진 내용은 문서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회계개념 구조는 사회적 행위규범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¹⁸⁰⁾

178) 이러한 예는 많이 있으나 그 가장 전형적인 회계분야가 합병회계분야이다.

179) 예를 들면 경제학이나 경영학 등의 사회과학 영역에서, 어떤 formal한 지식체계를 개념 framework로서 구축하려는 시도를 볼 수 없고, 또 회계 이외의 전문영역, 예를 들면 marketing 전문가나 재무분석가, 정신분석의 등에서도 같이, 통일된 어떤 개념후 레임웁을 요구하지 않는다.

180) 미국에서 많이 발표된 바 있는 회계연구연속(Accounting Research Series)등이 이

특히 회계실무는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회계기준으로 인정되므로 사회적으로 합의화 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그와 같은 사회적 합의화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법률의 규정에만 의지할 수 없고 회계전문인의 권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회계전문인의 권위 하에서만 회계실무에 신뢰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회계전문인은 회계기준을 설정하고, 그것 만으로 불충분하게 되면 또 그 회계기준을 지지하는 이론을 개념구조로서 설정하여야 한다. 회계기준의 설정은, 현실의 실무에 논리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승인시키는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기능을 회계기준 만으로 완수할 수 없다면, 또 그것을 지지하는 회계의 이론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개념구조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회계전문적으로 상호 유기적 해석과 적용이 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회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과 논의 전개가 어렵다. 회계실무와 관행은 우리나라의 것인데 미국의 회계이론과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모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¹⁸¹⁾

라) 會計基準 制定上의 問題點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우리나라의 회계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實質(reality)에 맞게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회계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條文은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 이론과 개념에 대한 정립이 없어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경우 어려움이 많다. 회계기준의 각 조문을 실행하기 위한 회계관행이 사전에 형성되거나 어느 정도라도 인식된 상태에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이론이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갑자기 제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기준은 조문은 그럴듯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受容性이 없어 회계기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 合併會計準則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조문이 실무에서 준용되고 있지 않아 수용성이 없는 상태이고¹⁸²⁾ 聯結財務諸表基準 역시 우리의 實體(reality)와 實務(practice)와 괴리되어 있어¹⁸³⁾ 회계기준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려면 심층적인 연구태세와 기구의 확립, 많은 전문가·실무가의 의견의 수렴,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기준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걱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어 회계정보 산출의 전

에 해당된다.

181)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양차대전을 겪고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까지 많은 정치·사회·경제적인 격변기를 맞이하였으나 일본적 환경에 맞고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의 회계를 일본적 관점에서 활발하게 진행하여 회계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일본의 회계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182) 李愚澤, “우리나라 合併會計의 混迷와 解決方案”, 『韓國租稅研究』, 제 11권, 1996, pp. 190-232 참조.

183) 蔡奎學, 崔昌淳, 『連結會計制度的 定着을 위한 改善方案 研究』,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2, p. 10.

제가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회계규범으로서의 회계기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은 財務的 情報보다는 환경정보라고 할 수 있는 政治·經濟 등 非財務的 情報에 의존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¹⁸⁴⁾ 그 원인과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制定 主體의 官僚的 硬直性和 會計研究의 不足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1976년에 설립된 증권관리위원회와 동 위원회 내의 회계제도자문위원회에 의하여 각종 회계기준이 수립, 개정되어 왔다. 현행 기준의 실제 수립 과정은 먼저 한국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관련업계 등에서 수집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하여 증권감독원에서 시안을 작성하고, 이러한 시안에 대한 학회, 공인회계사회,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회계제도자문위원회에서 회계기준(안)을 확정하고, 다시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재정원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회계발전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짐으로써 민간으로부터의 자생적인 토대를 가진 미국의 기업회계와는 다른 환경에서 회계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制定者 즉 政府의 의지에 따라 회계기준이 좌우되었고 이에 따른 民間部門이나 會計學界의 노력은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주도하의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증권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회계학 분야 전문 연구자의 숫자가 적고, 회계제도자문위원회도 회계학의 다양한 연구분야가 고려되어 선정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시안 마련의 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감독원의 경우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증권감독원의 경우 직원들의 빈번한 교체로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의 지속적 확보가 대단히 어렵고,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안 작성을 위하여 증권감독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와 의견의 검토작업은 한시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이고 계속적이며 세밀한 연구계획하에 기존의 회계기준 및 제도를 검토, 연구하거나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 가는 선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동기 등은 현재의 정부주도 하의 제도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는 회계기준이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특히 재경원의 인식이 대단히 후진적이며, 또한 증권감독원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⁸⁵⁾

사실상 회계를 산출하는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왔다기 보다는 자금조달이나 세금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충족시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기업들이 개발·활용하고 있는 회계방법 및 관행을 민간부문이 수렴하여 회계기준을 귀납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성숙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회계기

184) 尹桂燮·全春玉, 『企業內容公示制度의 效率化 方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0, p. 45.

185) 신준용, 전계서, pp. 25-29.

준의 설정은 충분한 조사연구로 뒷받침되어야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회계정책하에서 기준이 설정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조사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¹⁸⁶⁾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짧은 기간에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급속한 변화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외국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회계연구와 제도정비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會計制度 制定節次上の 問題

현행 기준의 실제 수립과정은 먼저 한국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관련업계 등에서 수집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하여 증권감독원에서 시안을 작성하고, 이러한 시안에 대한 학회, 공인회계사회,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회계제도자문위원회에서 회계기준(안)을 확정하고, 다시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재정원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회계발전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짐으로써 민간으로부터의 자생적인 토대를 가진 미국의 기업회계와는 다른 환경에서 회계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制定者 즉 政府의 의지에 따라 회계기준이 좌우되었고 이에 따른 民間部門이나 會計學界의 노력은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외형적으로는 적절하게 마련된 절차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수행과정을 보면 이는 매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계기준의 수립이나 개정은 경영의사결정자 뿐만이 아니라 자본·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회계기준은 전체 이해집단의 다양한 견해가 수렴될 수 있어야 하며 산업과 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검토되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회계기준의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관리위원회나 증권감독원의 업무처리에서 적절한 회계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절차가 충분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등 기업대표단체와 한국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 전문단체를 통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견 조성과 개선 및 수립을 위한 시간여유가 없고 형식적인 과정으로 그쳐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¹⁸⁷⁾

그러나 현재 정부주도하의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증권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회계학 분야 전문 연구

186) 이대선·장지인·나인철·이창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설정과정의 발전방향”, 『회계학연구』, 1994, 제 18호, pp. 378-431.

187) 試案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간이 통상 1, 2주내지는 한달 미만의 기간 안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안에 대한 근거나 시안작성 과정에서 검토된 대안 및 견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대부분 의견 제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준용, 전거서, pp. 25-29)

자의 숫자가 적고, 회계제도자문위원회도 회계학의 다양한 연구분야가 고려되어 선정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시안 마련의 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감독원의 경우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증권감독원의 경우 직원들의 빈번한 교체로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의 지속적 확보가 대단히 어렵고,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안 작성을 위하여 증권감독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와 의견의 검토작업은 한시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이고 계속적이며 세밀한 연구계획하에 기존의 회계기준 및 제도를 검토, 연구하거나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 가는 선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동기 등은 현재의 정부주도 하의 제도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는 회계기준이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특히 재경원의 인식이 대단히 후진적이며, 또한 증권감독원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⁸⁸⁾

마) 外部監査制度上の 問題

회계감사제도는 외부의 독립된 회계전문가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는 제도로서 회계의 사회적 기능은 결국 외부감사제도가 얼마나 내실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계사업무중 이러한 외부감사제도는 감사자와 피감사자간의 당사자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업무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점검으로서의 監理制度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감리업무를 공인회계사회의 자율로 위임하였으나 감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권감독원의 증권감리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감사에 대한 규제가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규제이든 증권감독원에 의한 공적 규제이든 규정상의 과목이나 내용 또는 형식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별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감사의 질을 확보하고 감사인에 대한 신뢰를 고양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리제도에는 감사수입제도, 감리제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¹⁸⁹⁾

188) 신준용, 전계서, pp. 27-28.

189)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신준용, 전계논문, pp. 48-68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2. 課稅所得 算定에 관한 稅法規定

가. 法人稅 課稅體系의 發展과 現況

1) 解放 前까지

1894년 10월부터 세금금납제가 실시됨으로써 근대적 조세도입의 시효가 된 이후 연속된 일제의 강요로 조선이 1910년 합병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식민통치시대가 시작되었다. 한반도는 농업중심의 봉건사회로부터 일본에 의하여 예속된 식민지사회로 전환을 강요당하였으며 모든 사회제도는 식민통치를 위한 체제로 정비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수탈적인 징세제도도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한민족의 이익이나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반도를 일본의 식량기지로 삼고 일본본토의 원료공급지 및 일본제품의 소비시장으로 육성시키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법인소득세는 1916년 8월부터 일본의 소득세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한국에 依用실시함으로써 소득세의 일종으로 과세하여 왔다. 1920년부터는 朝鮮所得稅 令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 오다가 그후 1927년의 제1차 세제정리에서 법인에 대한 소득과세방법이 대폭 개편되면서 소득과세에 대한 근간이 구축되었다.¹⁹⁰⁾ 1934년 一般所得稅를 창설하면서 법인소득을 「第1種所得」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1940년에는 特別法人稅를 창설하여 金融組合, 工業組合 및 農 聯合會 등에 대하여서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8·15 해방 이후에도 美軍政法令에 의거 일본의 戰時稅制를 이어 받아 부분적 개정을 거쳐 법인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인세체계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는 체제로서 본국의 체제를 이식한 것으로 엄격히 말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에 적합한 세법체계일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는 그후에도 세수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변형된 과세체계를 가지면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2) 法人稅法의 制定

1949년 11월 정부가 수립된 후 몇 년이 지나고서야 법인세법이 제정되었다. 그때까지는 依用法이라 하여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일제의 법인세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동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제1종소득세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의 계산과 관련한 기업회계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동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규정을 두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소득금액명세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서류¹⁹¹⁾를 정부에 신고토록

190) 재무부, 『전계서』, p. 54.

191) 여기에서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세무회계상 사용되던 계정과목과 양식을 참조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명시하고 있다. 당시 기업회계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중요 회계서류를 신고토록 규정함으로써 기업회계의 생성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⁹²⁾

1950년 6·25사변 이후 1951년부터 戰時體制로서 조세임시증정법 및 조세특례법을 시행하여 세율을 비례세율에서 최저 25% 최고 45%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하고 단기납부제도와 정부조사에 의한 추정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는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소득금액조사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법인의 계산서를 무시하고 정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회계장부의 비치와 사용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1958년 12월 29일 법인세법 개정에서는 법인으로 하여금 재무제표규칙에 의거한 장부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성실기장과 회계치리의 명확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업회계가 뚜렷이 자리잡지도 못하였고 회계규범으로서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인은 납세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세법의 규정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3) 資産再評價法의 制定

1958년 1월 2일 자산재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논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동 자산재평가법은 법인이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와 그 권리, 감가상각자산, 주식과 출자 및 입목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재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재평가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의 세율¹⁹³⁾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인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개인에 대하여는 임의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 자산재평가법은 임시적 한시법으로 1962년에 제2차 개정된 후 1965년 제3차 개정시 영구법으로 되었다. 이후 자산재평가제도는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와 관련되어 많은 논란과 정책적인 현안으로 지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산재평가법은 기업회계 논리로서는 맞지 않는 회계특례적 규정으로 불가변동회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현저한 차이를 시가로 수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비록 회계논리에 반드시 맞지 않은

192) 기업회계의 성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1950년대 후반에야 이르러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받아들임도 당시의 세법과 상법으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승희, “우리나라 會計原則의 展開過程과 理論構造에 관한 研究”, 經營學研究 第 17卷 第2號, 1988. 5. 참조 요.

193) 1958년 제정시에는 재평가세율을 1%, 재평가대상을 자산으로 하였으나 1962년의 자산재평가특별조치법(2차개정)에서는 재평가대상을 자산과 부채로 변경하였고 세율도 자산에 대해서는 0.5%, 부채에 대해서는 1%가 적용되었다. 1965년 제3차 개정 이후 평가대상은 자산으로, 세율은 3%로 변경되어 최근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1983년 개정법에서는 평가대상으로서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이를 제외하였다.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장기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막대한 차이를 조정하는 재산재평가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회계기준과 맞지 않는 세법상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용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회계를 무시한 세무상 평가방법인 자산재평가는 기업실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회계처리가 되었고 이를 기업회계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세무상의 자산평가방법은 1976년의 기업회계원칙 개정시 비로소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회계와 맞지 않는 세무상의 자산평가방법이 1958년의 자산재평가법 이후 계속됨으로써 기업회계는 이를 엄연한 회계기준으로 받아들였고 사실상 회계관행이 되다 시피 한점에서 당시의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사실상 주도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후에도 자산재평가법은 계속실행되어 1962년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¹⁹⁴⁾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65년에 다시 자산재평가법으로 개정되는 등 많은 변천 속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綠色申告制度의 實施와 誠實申告法人制度의 導入

녹색신고제도는 그간 지도·분석·조사로 이어지는 타율적 세무관리 방법을 탈피하고 납세자 스스로 정직한 기장을 통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세자와 정부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납세풍토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녹색신고제도는 국세청이 발족한 직후인 1966년 5월 「녹색신고운영요강」의 제정으로 최초 출발을 보게 되었으나 1969년 7월31일 법제화되었다. 녹색신고제도는 다음해인 1970년 6월 성실신고법인제도가 마련되어 법인세가 자기부과제도로 이행하는 모태가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의 법인과세는 기업회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1949년 이래 세법에 의해 기업회계실무 및 관행이 대행되었고 그간 몇 번의 법인세법 개정에서 기업회계를 존중하려는 조항이 삽입되어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의 보급사용이 확대되고 있었다. 한편 60년대 중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달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경제현상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회계적 대처는 이제 세법위주의 회계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경제개발정책의 결과 경제규모의 양적 질적 팽창은 기업회계의 기능을 더욱 필요로 하였고 더욱이 모든 기업을 일일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시키는 것도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의 발전을 근거로 하여 세법이 기업회계의 계산원리를 인정하고 기업회계원리에 의한 기장과 결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의한 자기부과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기업회계의 존재를 더욱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욱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업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업회계정보의 공시와 규제 등은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기업회계제도의 위상을 차츰 높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녹색신고제도 및 성실신고법인제

194)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법률 제1076호. 1962. 5. 24.

도는 기업회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번의 세법개정에서도 기업의 공개를 위하여 공개요건을 더욱 강화하면서 공개를 촉진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였는바 이러한 지속적인 기업공개정책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企業會計 尊重」에 관한 國稅基本法 規定

계속되는 해외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내경기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74년 1월14일 긴급조치 제3호인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大統領 緊急措置」가 발동되었고 동년 12월 21일 대대적인 세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국세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논의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의있는 세법이었다. 그 외 종합소득세제의 강화, 법인세법의 개정, 자산재평가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⁹⁵⁾

1974년 12월 21일 공포되고 1975년 1월 1일 시행된 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법의 일반법적 또는 통칙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동 법에서는 기업회계원칙을 존중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최초의 규정을 두었는데 의의가 있다. 동 기본법 제20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회계의 존중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법상의 회계규범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를 거의 무시하면서 집행하여 왔었는데 기본법에서 명확하게 기업회계의 존중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회계를 무시하려는 세법의 회계관행에 차츰 제동이 걸리게 되었으며 이로써 기업회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법적으로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6) 申告納稅制度의 도입

1979년 12월 개정 법인세법에서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법인과세제도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가산세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려고 하였다. 즉 종전에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발생한 과소신고소득에 대해서도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여 청산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청산소득과세를 하도록 하였고 청산소득 법인세에 대하여도 무신고, 과소신고, 무납부가산세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밖에 접대비의 한도액을 축소하고 과세표준신고서의 필수적 첨부서류에 세무조정계산에

195) 재무부, 전계서, 1979. 12, p. 464.

를 추가하였다.

1982년에 개정되고 1983회계년도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1979년 이래의 경기심체를 부양키 위한 세부담의 대폭 완화와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품매입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년도를 종전의 중도금 기준에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 전등기일로 전환하였으며 세법상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상각방법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납세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2년의 법인세개정시에는 그 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중2사항의 폐지가 사실상 결정된 상황이어서 그 여파로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더욱 따르도록 촉구한 분위기였다. 유가증권처분손익의 발생기준에 의한 인식이나 고정자산처분손익에 대한 귀속년도 결정기준의 변경, 이연자산의 상각처리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등은 이와 같은 세무회계의 불일치 해소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1982년의 세법개정을 계기로 1983년 이후부터는 세무회계가 종래 기업회계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세를 벗고 양 회계가 대등한 상황에서 공존의 인식을 깊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 企業會計基準의 優先適用

1994년 12월 개정하고 1995년부터 시행하는 법인세법의 개정은 우리나라의 종래의 세무회계 우위의 회계규정을 완전히 포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세법개정이었다. 조세당국에서는 기업회계와 회계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소위 Negative system을 도입하였다.¹⁹⁶⁾ 즉 법인세법 제17조에서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우선 인정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법에서 독자적인 회계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열거한 7가지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세법개정이 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난폭한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과세주체를 저버린 세법개정은 일찍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회계규정이다. 이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나. 課稅所得 算定에 관한 우리나라 稅法規定의 特徵

상기와 같은 우리나라의 조세역사를 개관하고 세무회계와 관련되는 특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 재정경제원, 『94간추린개정세법』, 1995. 5. pp. 231-238.

(1) 短期間에 外國 稅制의 導入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근대적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이고 그간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오늘의 경제상황에 이른 것은 50여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에 맞는 근대적 개념의 조세제도를 생성 발전시키지 못하고 일본과 미국 등으로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세정과 세제상의 급속한 변화가 있었고 후진국의 조세제도 형태를 많이 지니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세정과 세제는 장기적인 안정기반 위에서 자생적으로 생성, 축적되면서 발전되었다기 보다는 시대별 상황에 따라 외국의 제도를 도입·모방하였다는 역사적 특징을 갖는다. 韓末期, 日帝植民治下期, 美軍政期, 政府樹立과 混亂期, 6·25動亂期, 6차에 걸친 經濟開發期, 石油危機와 景氣好·不況의 교차 등 짧은 기간동안 급격하고 중대한 시대변화를 겪었으며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경제사회정책이나 이에 따른 조세정책을 세울 수 없어 자연히 세무회계도 체계적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더구나 정부수립 이후 상당 기간까지도 근대적 조세개념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았고 소위 依用稅法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日帝의 세법체계가 계속 실행되어 왔다. 그래서 정부수립 이후 세정과 세제의 개혁이나 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체질에 맞는 제도를 구상할 겨를이 없이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모방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세제의 도입수용은 주로 일본세제로부터 이루어졌고 해방 이후 미국세제가 UN 및 IMF의 조세전문가나 미국인 학자의 건의에 의해 일부 도입·수용되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세정과 세제는 일본의 모델을 도입하여 골격을 이루어 왔다. 해방 이후 1945년 11월 2일 美軍政法令 제21호에 의하여 제정된 미군정 하의 세제는 일제하의 일본세제를 그대로 이어 받았고, 정부수립 후 1949년에 제정된 각종 세법도 일본세제를 그대로 이어 받고 있었다.

일본의 세제는 일제의 수탈세제로서 특징을 가진데 대하여 정상적인 미국의 세제가 미국조세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입·수용될 수 있었다. 1953년 8월 25일 UN의 조세전문가인 H.P. Wald가 제출한 "한국세제에 관한 보고서"에 의해 1954년의 세제개혁시 국민소득을 기초로 한 조세수입액의 책정 등이 행해졌으며¹⁹⁷⁾, 1968년부터 1969년의 2개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Richard A. Musgrave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조세부담률의 상승을 건의하였다. 또 1970년대 초에는 James C. Duignon의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미국형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제의 한국에의 도입타당성에 관한 보고서"¹⁹⁸⁾를 발표하였으며, 1975년과 1976년에는 Alan A. Tait가 "한국형 부가가치세제모형에 관한 검토보고서"¹⁹⁹⁾와 "한국형 부가가치세의 모형제안에 관한 보

197) 재무부, 『한국세제사, 상권』, 1979. 12. p. 283.

198) 최진배, 『韓國의 附加價値稅』, 도서출판 삼문사, 1984, pp. 52-63, James C. Duignon, *Report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tion of United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in Korea*, 1972.

고서”²⁰⁰)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6년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었다.

(2) 稅務會計가 主導하는 會計制度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일제시 1916년에 도입되었고 해방 이후 1949년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회계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은 1958년 제정되었으므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세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되어 10여년간 뚜렷한 회계규범이 없어 대신 세무회계가 우리나라의 회계기능을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갑오경장 이후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金納制라는 현대적 조세체계를 갖춘 이후 일제시대에는 조세가 일제의 대륙진출을 위한 착취를 위하여 조세가 활용되었고, 정부수립 이후 6·25동란의 발발과 전비조달 및 전후복구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조세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수확보를 위한 회계규정이 우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업회계는 회계규범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미약하였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기업회계보다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만들고 이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는 회계관행이 일반화되었고 상대적으로 기업회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거의 없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 우리나라의 기업회계는 회계기준도 아직 제정되지 못하였고 또 사회적으로도 회계에 대한 욕구가 적어 기업회계의 발전은 매우 저조한 것이었다.

해방을 전후한 몇 차례의 전쟁과 경제피폐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은 약 20년간(1933-1952)에 걸쳐 무려 2만배 이상의 물가고를 초래하였고 계산 단위로서의 화폐의 동질성을 상실하여 화폐를 단위로 하는 회계기능은 마비 또는 파괴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처럼 화폐가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회계의 기능은 상실되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무회계는 회계의 도입시부터 그 기능을 부정받는 불행을 맛보게 되었다.

천정부지의 물가고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주고 자본축적에 따른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인플레이션에 의한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현저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법」이 1958년 1월 2일 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관계가 연계되게 되었다. 즉 당시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감가상각을 적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에 필요한 재취득 자금을 유보하기 위한 감가상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자기금융기능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세법에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의 자산재평가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업이 재평가를 하고 재평가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199) Alan A. Tait, *A Report on the Possible Korean Value Added Tax*, " 1975.

200) Alan A. Tait, *Report on the Proposed Korean Value Added Tax with Retail Price Index and on the Household Expenditure*, 1976.

(3) 間接稅 中心의 租稅構造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의 조달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특히 소득재분배, 제반 경제지원 등의 목적으로 실행되며 당해 국가의 사회와 경제 및 정치의 성숙도, 사회관습 등 국가별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다. 그래서 조세의 체계도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많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 수록 조세부담률이 높고 조세구조도 직접세 중심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유경쟁원리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富의 偏在化가 사회경제적으로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가 주요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즉 자본과 기술의 집적으로 왕성한 소득창출을 인정하되 고액의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의 소득탄력성을 높여 안정적인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동시에 고액소득자에 대한 소득재분배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소득세제가 기간세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소비과세와 재산과세를 보완세로 하는 조세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율에 있어서 선진국의 그것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구조면에 있어서도 간접세를 기간세로 하고 있어 후진국의 조세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간접세중심체제로 된 이유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추진 및 공업화를 위한 성장드라이브 정책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조세가 고도경제성장을 위하여 수출지원, 저축 및 투자촉진 등 경제정책 추진을 위하여 많은 조세감면조치가 주어졌다. 지난 196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성장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여러가지 정책목표추구와 관련된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그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본축적을 중요시하고, 반면 조세저항이 적고 세수증대가 용이한 간접세위주의 조세정책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뿌리깊게 간접세 중심이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소득재분배 강화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90년대에 들어서 간접세중심에서 직접세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서구나 미·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간접세비율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소비과세중심, 간접세중심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래 기업의 과세소득은 복식부기에 의한 엄격한 회계이론과 기술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오랫동안의 조세감면이 직접세인 소득감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히 소득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것도 그간 기업회계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

V. 課稅所得의 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課稅所得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論議와 問題點

가. 課稅所得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論議

(1) 尹桂燮 教授의 研究

윤계섭 교수는 일찍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1985년 발표 논문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調整에 관한 研究」²⁰¹⁾에서 기업회계의 목적과 기능만을 중요시하고 기업회계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課稅所得의 侵蝕化” 현상이 발생하여 과세불공평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논하는 경우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 일치시키려는 논리가 제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에서 계산된 기업이익이 세무회계상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기준의 적용상의 문제와 함께 기업회계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며 이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주주와 미래의 주주가 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주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들은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징수당하는 방향으로 회계를 집행하기를 바라게 된다.²⁰²⁾ 그 결과 결국은 과세소득은 축소되는 방향에서 기업회계가 전개될 것이고 만일 이를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한다면 결국 과세소득의 침식화현상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조세당국에서는 과세소득의 침식화현상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일찍이 미국의 「아네트」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을 초래하여 결국은 건전한 기업회계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인용하고 지나친 기업회계에 의한 세무회계의 기준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윤 교수는 1987년 다시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調整”이라는 논문에서²⁰³⁾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첫째, 기업회계와 다른 세무회계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장요건을 채용하는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표시되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제표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수정하

201) 尹桂燮,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調整에 관한 研究”, 한국조세연구 제1권, 1985, pp. 353-382.

20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n Evaluation of External Reporting Practices”, Supplement to Volume XLIV of the *Accounting Review*.

203) 尹桂燮,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調整”, 한국조세연구 제 3권, 1987, pp. 359-383.

는데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세무회계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기업의 회계방침을 존중하고 상황에 맞는 회계방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러나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공평하게 산정하고 납세자들에게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재정수입의 근간이 되는 稅源을 확보해야 하는 정책적인 입장이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지향하는 목적과 수행하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회계는 그 본래의 성격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이가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무시하고 기업회계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양회계는 각자의 원칙에 따라 일치가 가능한 것은 가급적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金光潤 教授의 研究

김교수는 1992년 “法人課稅所得의 稅務調整方案에 관한 實證研究”²⁰⁴⁾를 발표한 바 있다. 동연구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요소를 현행 세법이 결산조정을 강요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왜곡표시하고 기업의 자본축적과 재무구조 건실화에 역행하며, 나아가 세무조정계산을 위해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해소 내지 축소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는 바 그 주요 연구내용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가 있는 항목들을 기준으로 세무회계를 기업회계로 접근시켜야 할 항목,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에 접근시켜야 할 항목, 양회계 모두를 조정해야 할 항목들로 구분하여 그 각각의 일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교수는 1993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合理的 調整에 관한 研究』를 수행하고 동 연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한 바 있다.²⁰⁵⁾

(3) 姜南彦 會計士의 研究

姜회계사는 그의 연구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즉 ① 세무회계에 대한 결산조정을 강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왜곡표시를 초래하고, ② 조세의 조기징수를 위한 세법의 규정은 결국 기업의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가로막아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며, ③ 세무조정계산을 위한 노력과 비용의 소요로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²⁰⁶⁾

204)金光潤, “法人課稅所得의 稅務調整方案에 관한 實證的 研究”, 한국조세연구, 제 8권 1992, pp. 336-378.

205) 대한상공회의소,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合理的 調整에 관한 研究』, 대한상공회의소, 1993.

206) 姜南彦,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調整에 관한 小考”, 『上場協』春季號, 제28號,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3, pp. 102-115.

姜 회계사는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세법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특별히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기업회계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4) 申瓚秀 會計士의 研究

申 회계사는 그의 “企業會計와 稅法의 差異解消를 위한 提言”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① 세무회계 사항을 결산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왜곡표시, ② 재무정보의 유용성의 결여, ③ 재무구조의 악화, ④ 세무조정계산을 위해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의 과다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²⁰⁷⁾ 본 연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가 있는 사항들을 망라하여 각각의 문제점과 일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조정 방법은 개별적 사례별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념적 논리적 체계를 두어 언급하기가 매우 어렵다.

(5) 李成柱 教授의 研究

李 교수는 그의 “稅法과의 調和를 위한 企業會計基準調整方案”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간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며 다만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양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법에서 기업회계를 받아들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점과 동시에 기업회계 측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기업회계의 독자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세무회계의 입장을 인정하고 기업회계가 세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일부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²⁰⁸⁾

(6) 柳時權 博士 외 3인의 研究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일기업회계가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되어야 하며 따라서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

207) 申瓚秀, “企業會計와 稅法의 差異解消를 위한 提言”, 『上場協』 春季號, 제29號,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 pp. 124-155.

208) 李成柱, “稅法과의 調和를 위한 企業會計基準調整方案”, 『上場協』 秋季號, 제30號,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 pp. 89-103.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일반적으로 회계학자와 회계사단체에서 주장하는 견해로서 이에 대한 문헌도 매우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논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양자의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우 세무회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불일치는 물론 당연히 일치시켜야 하겠지만 일치시킬 수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일치시키려고 하지 말고 별도의 계산을 하도록 하고 다만 그 차이로 인한 재무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회계의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세효과회계를 발전시킨다. 이처럼 두 가지의 견해가 각국에서 오랫동안 제시되어 왔고 그 각각의 논리도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경향은 양회계의 일치만을 주장하였던 첫 번째의 논리는 후퇴하고 대부분 두 번째의 방법을 택하고 무리한 일치보다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의 논리를 주로 택하고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최대한 일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무리한 일치화에 따른 역효과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편이다. 즉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조정에 관한 연구와 문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첫 번째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⁹⁾ 그러나 이러한 논리들은 초기 즉 1950년대에 주로 제기된 논리로서 최근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다른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세무회계를 무리하게 기업회계에 일치시킬 경우 발생하는 역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논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무리하게 일치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동 연구의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7) 筆者의 研究

필자는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一致論에 관한 批判的 研究”에서 지금까지 다른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²¹⁰⁾

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는 단순히 양회계의 외형적 개념만의 비교분석으로서는 부적합하므로 양회계관계에 관한 이론적 개념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에서 일찍이 논의되어 왔던 이론과 개념구조에 대한 섭렵이 폭넓게 실행되어야 한다.

② 세무회계의 대부분은 사실상 기업회계이므로 먼저 기업회계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것들이 세무회계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

209) 유시권, 이노창, 유재권, 오엽록,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pp. 42-57.

210) 李愚澤,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一致論에 대한 批判的 研究”, 『회계학연구』, Vol. 22, No. 2, pp. 129-162.

석이 앞서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의 특성과 기능은 일단 세무회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무회계의 특성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며 기업회계 본래의 기능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③ 외국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그것들과 일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업회계의 발전역사가 다르고 회계제도가 다른 이상, 그리고 조세법규의 내용과 그 배경이 다른데 이를 우리나라와 같은 것으로 전제하고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역사적 발전과 회계환경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금까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불편성 또는 비효율성을 들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거의 일률적으로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세무조정 실태를 조사하고 세무조정사항의 양과 내용을 분석하여 세무조정으로 인한 불편성과 비효율성의 정도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⑤ 특히 동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무리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제 자료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무리한 일치론의 허구성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나. 課稅所得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規定의 問題點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또 이에 적용할 기업회계와 세법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려는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문제는 본래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本質的 問題이고 그 다른 하나는 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에서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環境的 問題이다. 이 양자의 측면은 각각 엄격하게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를 논하면서 우리나라 특유한 요인이 섞여지면 본질에 대한 논리가 애매하게 되고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를 본질적 문제에 섞어 놓으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쾌한 해답을 구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로 인한 本質的인 問題點

세법상 과세표준의 산정을 기초할 회계기준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본래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각국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고 현재에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가) 會計機能의 差異

회계의 기능은 利害調整機能과 情報提供機能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기도 한다.²¹¹⁾ 이해조정기능이란 기업과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해, 즉 이익을 둘러싼 대립 또는 줄다리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회계가 본래적으로 가진 기능이기도 하다.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재산 및 재산권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해 온 복식부기는 이해조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안된 것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단순히 위수탁자간 만이 아닌 多者間의 이해조정기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²¹²⁾ 최근 이러한 이해조정을 위한 수탁책임보고 이행을 위한 회계보고책임의 보고대상과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²¹³⁾

이해조정기능의 전형은 회계기준설정을 위한 시점으로서 처분가능이익의 산정기능이고,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회계의 중심이념인 이익측정 특히 배당가능이익 및 과세가능소득의 엄밀한 측정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범형식이 중시된다. 또 이 목적을 중시하면, 신뢰성, 검증가능성, 객관성, 확실성, 보수주의성 등의 정보특성을 갖는 취득원가의 평가가 채용되고 이것을 베이스로 한 회계기준이 설정된다.

이에 대하여 정보제공기능은 투자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의 기능을 말한다. 정보제공기능에는 기업의 경제활동 및 경제사상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다.²¹⁴⁾ 투자 의사결정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의 보고가 중심이 되고 범형식보다도 실질우선주의에 기초한 경제적 실태의 개시가 중시된다. 또 이 목적을 중시하면 목적적합성, 유용성, 적시성, 표현충실성 등의 정보특성을 갖는 시가 또는 공정가치평가가 제창되고 이것을 베이스로 한 회계기준이 설정된다.

이와 같이 회계의 기능을 분류할 때 그 각각의 회계기준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귀속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하는 이해조정형 회계기준과 투자 의사결

211) 廣瀨義州, “「企業會計原則」の見直しに伴う課題”, 『商事法務』, No. 1446, 1997, 1. 25. pp. 2-8.

212) 예전부터 본래 열거하고 있는 기능이다. 이 점은, 리틀톤의 『회계발달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213) 최근에 들어서서 회계보고책임(accountability)에 대한 압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공무원, 제품생산업자, 의료시술자 등은 의심을 품는 대중들에게 예의 주시를 받고 있다. 대중은 기업의 책임을 추궁할 많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¹⁾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들이 과연 수탁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게 되며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회계보고책임에 대한 공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Ernest J. Pavlock, Frank S. Sato and James A. Yardley, "Accountability Standards for Corporate Reporting", *Journal of Accountancy*, May 1990, pp. 94-100. 참조 요.

214) 현대적인 정보제공기능은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소법에 기초하는 SEC 제도에서 단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정정보의 제공을 증시하는 정보제공형 회계기준은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등은 지금까지 이해조정기능을 중시한 귀속소득의 산정이 중요시되었고 여기에서부터 점차 확대되어 투자의사결정정보의 확충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공정가치평가의 도입과 재고자산의 시가평가 경향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회계의 기능이 아무리 투자의사결정정보제공 기능으로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이해조정정보제공기능이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²¹⁵⁾ 어떤 경우에도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귀속소득에 대한 이해는 철저히 대립되어 있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회계정보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會計目的의 差異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만족시키려면 이용자별로 각각의 입장과 필요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각 이해당사자들의 이용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利害關係者群의 이해를 선택·정리하여 주요부분을 간추리고 목적을 어느 정도 한정하고 그 목적에 최대한 적합한 내용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²¹⁶⁾ 따라서 가급적 공통되지 않거나 비교성이 어려운 것들은 제외할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정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교성은 결국 회계기준이 복잡하면 할수록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회계기준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이하고 예외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범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의 회계기준은 과세소득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이때 과세소득은 조세법률주의원칙의 대전제 아래 實質課稅原則과 公平課稅原則을 추구해야 하므로 각납세세의 개별적인 사정에 적합하도록 최대한 細密하게 計算基準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특히 납세자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취하지 않고 不自然스럽고 異常한 회계처리를 택하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추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서로의 목적이 다른 이상 이를 같은 척도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회계기준은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영국의 판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법과 회계실무의 관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된다. 첫째는 법원은 먼저 회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찾도록 하고 나서 세법

215)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조정정보기능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회계기능이 마치 정보제공기능만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회계관심이 투자의사결정정보제공회계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우려될만한 현실이다. 이해조정정보제공을 위한 회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의사결정정보라는 회계기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6) 井上久彌, 「企業課稅原理と會計基準の交錯」, 『企業會計』, '90 vol. 42 No. 5, p. 12.

규정이 여기에 충돌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법원은 당해 문제를 우선 법률문제로 정의하고 난 후 회계가 다른 해답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나서 어떤 것이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²¹⁷⁾

이상의 논리를 살펴보면 회계문제와 세법의 문제는 전혀 다른 범주에서 접근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양회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이 회계기준을 계속사용하였다는 것만을 가지고 세법상의 회계기준으로 삼으려는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성격과 내용 및 방법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업회계기준을 과세소득산정에 있어서 우선적용하도록 한 세법의 규정은 과세소득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 會計基準의 差異- 企業會計基準의 單純性과 稅務會計의 複雜性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이용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도 하고 이용목적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회계정보는 단순하고 비교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은 단순할 수밖에 없다. 회계기준이 단순하므로 이를 집행하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문제도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기준에 대한 예규나 해설 등이 매우 단순하여 실제 어떤 회계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하는 회계예규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그래도 기업회계에서는 감사의 견의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어 단순한 상태로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그러나 세무회계는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어떤 회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납세자에 알맞은 회계이론과 기법이 철저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또는 단순한 논리로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세무회계에서는 모든 상황 즉 일반적이든 특수상황이든 불문하고 철저하게 회계문제를 가려야 하므로 회계기준이 세밀하여야 하고 다양한 例規와 通則이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세무회계의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세무회계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세무회계가 지금까지 축적해 온 다양한 회계처리 예를 능가할 회계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회계를 우선 적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恣意性이 개재되어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공평과세원칙이 무너지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 適法性과 適正性의 差異

과세소득의 산정은 특정의 주체가 부담해야 할 조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앗아가는 公法關係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엄격한 法的要件과 일정한 節次를 따라야 하는 強行法規로서 適法性이 중요 쟁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강행법규를

217) G. W. Radcliff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Judiciary",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 20. No. 80. pp. 329-336.

위반하면 직접적인 벌칙이 주어지며 그 위반효과는 세액의 추징이라는 재산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을 산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은 특정의 경영주체의 객관적인 수익력을 측정하여 이해당사자들에 보고하는 회계기준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行爲規範으로서 適正性의 문제로 그친다. 기업회계기준을 어기고 회계정보를 작성하였고 하여 직접적인 어떤 제재나 징벌이 가해지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을 不完全法規라고도 한다.²¹⁸⁾ 따라서 그 위반효과는 직접적인 재산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그 위반효과가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회계규범이 거의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適法的 權威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회계규범을 과세소득의 산정의 규범으로 준거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규범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신 租稅法律主義原則에 의하여 세법에서 책임을 지고 가급적 세밀하게 정하여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회계관행이 성숙되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회계를 감당할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세법에서 차차 풀어 주어야 하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소득을 산정할 회계규범이 여러 가지 실행상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세법에서 백지상태로 이에 따르도록 한다면 이는 곧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세요건의 중요한 사항인 課稅標準의 크기를 결정할 방법을 세법에서 자세히 규정하지 못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會計基準의 柔軟性과 確實性의 差異

기업회계기준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실체에 대한 과거 및 현재 상태에서의 회계정보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회계정보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 및 현재의 회계정보는 역사적원가주의에 의한 회계로 족하다. 그런 미래의 회계정보는 시가주의의 적용을 요구하게 되고 시가주의회계에서는 회계의 유연성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회계의 유연성은 결국 다양한 회계처리기준과 적용을 전제로 하며 여러 가지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을 수용하여야 가능하다. 특히 회계정보가 투자 의사결정정보로서 활용되고 그것이 더욱 국제경제활동에 적용되는 경우 회계의 유연성은 더욱 확대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최근 회계기준의 동향은 회계의 통일성(uniformity)에서 점점 이탈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세무회계는 조세법률주의원리와 공평과세를 준수해야 하므로 엄격한 기준과 객관성을 요한다. 따라서 세무회계는 확실성과 획일성을 전제로 하여 가급적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회계기준을 요구한다. 확실성과 획일성은 위하여 최대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일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한다면 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편의대로 대체적 회계방법을 선택할 수

218) 상업장부에 관한 상법상의 계산규정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인 제재가 없는 不完全法規(*lex imperfecta*)이므로 이와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이철송, 『商法總則·商行爲』, 박영사, 1996, p. 199)

있고 이 경우 과세의 불공평성이 심화되어 조세법률주의가 실현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바) 會計基準 役割의 差異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²¹⁹⁾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기준의 존재는 기업의 재무제표회계감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이때의 회계감사의 의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란 본질적으로 “企業의 經濟的 行爲와 事件에 관한 被監査人の 主張(assertion)이 제정되고 있는 基準(criteria)과의 符合·程度를 判定하고 그 결과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證據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組織的 過程”²²⁰⁾이다

상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의 존재이유는 회계감사의 기준을 정함에 있고 이때 회계감사란 피감사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주어진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여 그 처리의 적정여부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분석하면 『會計處理』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며 이는 곧 회계의 내용보다는 회계자료의 회계처리의 적정여부만을 밝히는 한정적인 기능으로 그친다.

따라서 피감사인이 회계부정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는 회계기준이다. 회계감사는 기본적으로 피감사인이 「감사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財務諸表와 資料는 意圖的인 不正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會計監査의 公準(The Postulates of Auditing)이 있기 때문이다.²²¹⁾ 따라서 회계감사인은 회계부정을 전제로 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더구나 일정량의 표본감사로 그치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무회계의 중요기능은 實質課稅原則과 公平課稅原則을 이행하는데 있고 이 경우 납세자가 소득을 은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시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에 적절한 여러 가지 회계기준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특히 稅務監査는 소득의 은폐나 누락 등 조세회피와 관련한 회계문제에 치중하게 되고 기업회계기준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이처럼 회계기준의 본질이 다른데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을 세무회계기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결국 實質課稅原則과 公平課稅原則이 지켜지기 어렵게 될 것이며 이는 세법의 운용에 있어서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219) 기업회계기준 제1조, 【기업회계기준의 목적】

220) AAA: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6,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p. 2.

221) 趙益淳, 『新會計監査論』, 1983, 박영사, pp. 8-9.

사) 會計監査와 稅務調査의 差異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자는 세법에 있어서의 탈세와 같은 위법사실을 조사할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고 또 조세회피를 조사할 조사질문권도 없다. 회계감사자가 조세회피와 같은 전문적인 문제를 조사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모든 회계감사자가 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감사의 기준은 회계감사자로 하여금 세무조사와 같은 기능을 요하지 않는다. 회계사는 회계적 능력을 가지고 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를 통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족하며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규명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회계감사자가 회계감사에 있어서 위법사실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회계기준서(Statement on Accounting Standards: SAS) No. 54에서도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란 특별히 위법사실을 조사하는 감사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그들은 감사과정에서 우연히 당면하게 되는 정보를 유의하여 평가할 책임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특정의 위법행위 예를 들면 조세법이나 연금법 같은 법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려면 이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감사자가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며 이것은 이미 일반의 회계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²²²⁾

그런데 세무감사는 직접적으로 부정을 캐내기 위한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세무조사자는 조세회피나 탈세를 찾아내어야 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받고 있다. 누구나 일단 세무조사에 임하면 당해 기업에 대한 일체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고 또 이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력이 주어진다. 만일 추후에 조세회피나 탈세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이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懲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자는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회계규범이 되는 각종의 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통칙 등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회계규범을 가지고 이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회계규범을 집행하는 조사자의 판단재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처럼 기업회계기준의 실제 실행과정인 회계감사는 세무조사와 같은 위법사실을 조사해 내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기업의 회계정보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회계기준은 세법기준과 비교하여 매우 단순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감사자의 회계적 전문성에 기초한 판단(judgement)에 의존하게 되며 회계감사자의 재량이 매우 넓은 편이다.

2) 立法體系上 우리나라 固有의 問題點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입법체계상의 문제는 크게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외국과 우리나라는 회계의 발전과 세법의 규정들이 다르고 각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그 實質(reality)과 正體(identity)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222) Donald L. Neebes, Dan M. Guy and O. Ray Whittington, "Illegal Acts: What are the auditor's Responsibilities?",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1991, pp. 82-9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란에서는 주로 외국의 세법규정의 현상적 차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세법의 입법상의 문제점에서 야기되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독특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의 외형상의 기업회계제도나 세법제도만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질에 맞지 않는 논의가 되고 말아 무의미한 談論으로 그칠 것이다.

가) 租稅의 基本과 獨立性을 無視한 「優先適用」의 問題

법인세법 제17조에서 손익의 귀속연도와 자산과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동 규정을 엄격히 분석하면 기업이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의미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租稅 基本原則의 毀損

조세법은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조세부담공평의 원칙 2가지가 있다. 이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회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여기에서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에 관한 사항을 모든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의 창설, 변경, 소멸에 관한 실체 규정은 물론 징세의 절차규정도 모두 「법률」에 의거해서 정해야 하는 것이다.²²³⁾ 이렇게 함으로써 세법의 집행기관인 세무관청이나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조세법률주의는 그 내용인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의하여 조세집행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률」에서 결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과세자 및 납세자에 있어서도, 조세의 인식 및 측정액 등에 대해서 「재산적 기능」을 통하여 상호 납득할 수 있는 조세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양자의 「이해조정」이 달성된다.

그런데 1994년 개정세법 당시 기업회계를 「우선적용」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세법에서 열거하지 않는 한 모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거의 해소하였고 또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세법의 회계와 관련한 자세를 네가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였다고 홍보·선전한 바 있다.²²⁴⁾ 네가티브시스템이란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223) 大城建夫, “規範的 稅務會計論의 課題”, 『産業經理』, 50 (4), '91. 1, pp. 110-111.

224) 재정경제원, 『'94간추린개정세법』, 1995. 5. pp. 231-238.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을 배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현존의 세법규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세표준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公平性의 原則과 效率性의 原則이 있다. 그리고 공평성과 효율성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도 기본 대전제는 모든 조세는 법에 따라 부과징수해야 한다는 엄격한 租稅法律主義 原則이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는 과세표준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회계를 위하여 고안되고 발전한 것은 아니다. 회계의 역사와 그의 기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회계는 초기의 위수탁관계의 責任報告會計로부터 출발하여 점점 다자간의 利害調整機能으로 확장되었고 그후 더욱 발전하여 情報提供機能으로서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어느 경우에도 회계의 발전은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원칙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

따라서 만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이러한 조세의 기본 원칙과 목적에 반한다면 이는 조세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정일 수밖에 없다. 세무회계는 기업회계가 오랜 세월을 걸쳐 이론적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계산기능을 원용하여 과세표준의 산정에 활용하면 되고 굳이 따로 세법에서 회계에 대하여 세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본래 기업회계는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에 반한다면 부득이 세법은 따로 규정을 두거나 기업회계의 일부를 제한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시에는 세무회계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조건적으로 붙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에서 열거한 이외는²²⁵⁾ 무조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하는 입법이 되고 말아 조세의 기본을 무시한 과세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미 외국의 세법규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세법에서는 이처럼 기업회계를 세법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배타적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은 하고 있지 않다.²²⁶⁾

(2) 一貫性 逸脫로 인한 課稅體系의 混亂

지금까지 모든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한 체계 즉 법·령·시행규칙·통칙·훈령·예규·훈령· 및 조세행정은 세법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가지고 세무회계가 집행되어 왔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회계는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교한 계산체계를 갖추고 회계문제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까지 세법의 회계규정이 주도하여 왔고 이에 따라 과세소득의 산정에 따른 모든 계산 규정체계는 세법독자적인 체계를 유지하며 시행하여 왔다. 그런데 갑자기 세법을 개정하여 모든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6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회계체

225)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배제규정]에서 6가지의 사항을 열거하고 이 규정만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 규정에서 정한 6가지 사항 이외는 모두 기업회계에 의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226) 이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각국의 예를 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계를 가지고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처리되어 온 기왕의 모든 세무회계나 관행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게 되었다.

(3) 企業會計의 機能과 우리나라 固有의 會計環境에 대한 認識不足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관계는 양회계의 본질을 고려하여 이를 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이러한 세법상의 규정은 단순히 외국의 회계제도를 형식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의 회계현실을 참작하여 세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한 바 있다. 설령 외국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나라 회계의 현황과 환경이 외국의 그것들과 어느 정도 같은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미 앞에서 외국의 회계발전과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외국의 경우 기업회계가 상당한 수준에서 발전하여 있기 때문에 세법의 회계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기업회계의 발전이 미숙하여 세법이 과세소득의 산정에 관한 회계규정을 완전히 기업회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4) 企業會計基準의 變更에 따른 稅法規定의 不確實性 問題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세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의 결정은 조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과세요건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납세자들로 하여금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만일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고 이에 의하여 납세자들이 회계처리하였다면 동 기준이 변경되기 전과 후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세법에 의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의하여 조세부담이 달라지게 됨으로 조세부담이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법률주의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면 조세당국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된 경우 즉각 이것이 과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거나 따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세법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조세부담이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의 공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과세체계의 지속성을 위하여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규정에 추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일일이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戲畫的 現象이 발생한다. 과연 일국의 과세체계가 이처럼 기업회계기준의 변경 또는 해석의

여하에 따라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좌우된다는 것은 일 국의 과세권위와 고유의 주체성을 저버린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예는 이미 1996. 12. 27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여 외화환산손실을 기간비용에서 이연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세법에서 받아들여 부랴부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외화자산·부채의 평가)규정을 개정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떤 변경이 있을 경우 세법규정이 따라다니면서 개정되어야 하는 한심스런 입법체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 企業會計基準 및 慣行의 適用에 따른 問題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우선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이때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상기의 조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1) 企業會計와 企業會計基準의 混同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企業會計와 企業會計基準을 혼동하고 있다. 본래 기업회계와 기업회계기준은 다른 것이다. 세무회계와 비교하여 말하는 경우의 企業會計란 企業會計基準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會計一般을 말한다. 즉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으로서 여기에는 GAAP) 이외에 ① AICPA 운영위원회가 발표하는 공표문, ② 적정절차를 따른 전문회계사들로 구성된 기구의 공표문, ③ 특정 산업 또는 특정 환경에 적용되는 知的인 적용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실무 또는 공표문, ④ 기타 회계문헌 등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들은 일정한 위계가 있어 GAAP가 가장 높은 수준의 회계기준이고, 그것이 특정한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 두 번째 범주로서 AICPA가 발표한 Statements of Position와 함께 AICPA Industry Audit and Accounting Guides에 의하여 한다. 세 번

제 범주는 FASB Technical Bulletins, AICPA Accounting Interpretations 그리고 현재의 유력한 산업계 실무가 된다.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도 명백한 지침이 될 수 없게 되면 다른 회계문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회계문헌을 출간한 저자나 기구가 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당해 문제에 특정지어 있을수록 그 회계문서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재무회계개념에 대한 FASB의 공표문, AICPA가 발표한 문서들, APB공표문등이 가장 이 범주에서 훌륭한 근거원천이 될 것이다. 네 번째 범주에서 지침을 강구(search)하려면 다른 세범주보다 더 많은 판단과 더 넓은 탐구(search)를 요한다.²²⁷⁾

독일의 경우 상법상의 정규의 부기의 원칙(Grundsätze ordnungsmässiger Buchführung, GoB)에 따른 상법의 계산규정과 함께 ① 훌륭한 상관습이 되어 계속 발전한 적정한 회계실무, ② 법률 및 판결(상법, 세법, 판결), ③ 관청의 제반 통칙, 민간의 전문가단체의 권고나 의견, ④ 회계문제에 관한 회계이론이나 과학적 논의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²²⁸⁾

이처럼 기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한 다른 회계규범도 포함된 넓은 의미를 갖고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를 구성하는 전체의 일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에서는 기업회계와 기업회계기준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함으로써 용어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2) 公正·妥當한 「企業會計基準」과 「慣行」의 混同

본래 회계규범체계로서의 회계제도인 기업회계기준은 회계관행이 축적된 상태에서 이를 요약하여 정비한 것으로 인식한다. 관행이 회계제도로 되는 결과로서 독일의 주식법, 영국의 회사법, 우리나라의 상법이 있고 미국의 경우 GAAP로 존재한다. 관행이 제도화되면 제도속에서 그 회계기능을 하게 되며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 밖에서 제도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대신하여 준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은 제도화된 것이고 관행은 이러한 제도권 밖에서 존재하는 회계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규정에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제도화된 회계기준 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의 회계기준에 한정함으로써 관행은 제도화된 회계기준에 함몰되고 말아 회계기준만 있지 회계관행은 없어진 셈이 되고 만다. 시행령의 규정방식으로 하면 굳이 관행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본래 회계제도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하나이므로 엄격한 사회적 규범이 필요로 하고 그것이 기업회계기준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일차적 존재형태를 가진다. 그런데 기업회계 본래의 복잡성과 기술성 등으로 제도화된 기업회계기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²²⁹⁾ 특수한 문제를 따로 해

227) Delaney, Patrick R., James R. Adler, Barry J. Epstein, and Michael F. Foran, *GAAP-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John Wiley & Sons, 1985, pp. 2-3

228) 井上康男, 『西ドイツ法人稅會計論』, 白桃書房, 1988, p. 21.,

결하기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보완하는 관계이므로 어떤 경우이든 기업 회계기준과 관행은 별개의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묶어서 5가지의 회계기준을 한정해 버림으로써 회계관행의 존재의의와 그 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고 말았다.

(3) 慣行의 法規性 問題

상법 제29조 제2항의 문언에서 결국 상인에게 관행을 따르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관행이 법이 되게 된다. 범일반론에서 보면 관행은 사실일 뿐 규범이 될 수는 없다. 관행이 법이 되려면 그 내용이 제정법에서 수용되든지 판결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야 한다. 문제는 상법 제29조가 관행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행에 白紙委任한데 있다.

관행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우선 상인에게 회계처리가 회계관행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모든 상인에 이를 적용함은 무리인 것이다.

또한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존재와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데 제정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법원에게 그러한 임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판례법 국가는 제정법국가에 비하여 관행에 친하다. 판례 그 자체가 관행과 유사한 형태로 형성된다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판례법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을 법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회계의 판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²²⁹⁾ 그러나 제정법국가에서는 법발견이 기본적으로 제정법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慣行 전체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法體系上 어색한 일이다.

(4)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한 會計慣行」과 「企業會計基準과의 關係」

상법상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관행이 기업회계기준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자는 다른 것이다. 상법상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은 그 적용범위를 달리 하고 있고 그 규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자를 같은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차이가 무의미하게 된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은 기업의 형태,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기업회계기준은 하나의 추정적 자료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²³¹⁾

229) 그래서 건설업회계처리기준 또는 합병회계준칙 등이 따로 규정되는 것이다.

230) Sidney, L. Simon, "Accounting Conventions in the Courts", *Accounting and the Law*, New Jersey: Gutgers-State University, 1965, p. 8.

231)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박영사, 1996), p. 206; 채이식, 상법강의(박영사, 1990);

(5) “의한다”의 의미

“의한다”는 규정이 법으로 본다는 것인지 축소해석하여 해석에 참작한다는 것인지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관행을 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난점이 있고 입법례로 보아도 수긍하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는 그 반대의 장단점을 가진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일본은 상법 제32조 제2항에서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한 해석에는 공정한 회계관행을 참작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상법 제238조 제1항에서 “상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정규의 부기의 원칙에 좇아 상행위 및 재산상태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모범회사법 제52조는 “모든 회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을 기초로 작성된 연도재무제표를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듯 회계처리의 원칙을 천명하거나 회계규범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그 자체를 법규범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따라서 “의한다”는 회계처리시 고려해야 할 지침으로 해석한다.²³²⁾

(6) 資産과 負債의 取得 및 評價 規定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不足

오랫동안 법인세법 제17조는 손익의 귀속연도에 관한 조문이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조항은 손익의 귀속연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관행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납세자나 전문가들마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1994. 12. 31 개정 세법에서 동조항에 자산과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되면서 이에 대하여도 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동조항에서 규정하여 왔던 손익의 귀속연도에 관한 인식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데 개정 세법조항에서는 동 규정에 「자산과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대하여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때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백지상태이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취득 및 평가는 손익의 귀속연도와는 별개의 성질을 가지면서 따로 다른 규정을 설정하여 규정되어야 할 중요한 회계문제이다. 손익의 귀속연도보다도 자산과 부채의 취득과 평가에 관한 규정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세법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중국적으로는 매출원가 또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급에 산입되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이 가공 또는 과대계상되는 경우

국세심판소 결정 90 서 924, 1990. 12. 27.(아파트 신축분양의 경우 아파트 부지의 취득원가 산입시기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 67조 제1항 제4호와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4조(공사진행기준)를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232) 吳守根, “會計規範體系論”, 『企業法の 行方』, 박영사, 1991, pp. 274-275.

조세부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한다. 부채 역시 과대계상 되면 부채의 반환시 자산이 부당하게 감소되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중요항목이 된다. 자산·부채의 평가 역시 손익을 좌우하는 중요 항목이 된다. 이처럼 중요한 자산과 부채의 취득 및 평가 문제를 단순히 손익의 귀속연도라는 항목에 추가하고 만 것은 입법체계상으로는 기술상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손익의 귀속문제는 자산과 부채의 취득가액의 여하에 의하여, 그리고 보유중의 평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자산·부채의 취득과 평가문제는 손익의 귀속연도 문제보다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인식되어 온 손익의 귀속연도에 추가한 것은 세법에서 회계규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중요한 자산부채의 취득과 평가문제를 손익의 귀속연도라는 규정에 삽입하므로써 지금까지 동조문이 손익의 귀속연도에 대한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자산과 부채의 취득과 평가에 관한 규정이 삽입된 것을 모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세법조문이 납세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적합한 세법조문이 되고 있다.²³³⁾

3) 無理한 一致化로 인한 逆效果

가) 租稅法律主義 原則과 公平課稅原則의 毀損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차이가 있어 이를 조정하는데 복잡하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무회계 그 자체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을 실질에 맞고 공평하게 계산하는데 복잡성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胎生的인 한계가 있다. 즉 과세표준의 계산을 간단하고 쉽게 한다는 것과 조세원칙의 기본인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와는 서로 排他的 選擇의 問題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간단하고 쉽게 계산하는 것을 추구하면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를 그 만큼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간단하고 쉽게 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어느 정도 복잡하고 어려운 과세표준계산방법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企業會計基準은 實質課稅와 公平課稅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會計基準이다. 이러한 회계기준과 세무회계를 무리하게 일치시킨다면 그만큼 공평과세와 실질과세는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²³⁴⁾ 이러한 현상을 「課稅所得의 侵蝕化現象(erosion of taxable income)」이라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세무회계가 맹목적으로 기업회계에 의존하는 것을 반대하고 세

233) 실제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 전문가들과 과세당국의 책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마저 법인세법 제17조는 손익의 귀속연도만 규정된 것이지 자산과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과 그것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34)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일찍이 尹桂燮 교수는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調整에 관한 研究-課稅所得의 侵蝕現象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 제1권, 1985, pp 363-382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무회계에 탄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²³⁵⁾이 각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나) 課稅者의 裁量權 濫用의 弊害

기업회계는 다양하게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무정보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그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또한 財務情報의 생명은 比較可能性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도 기업회계는 단순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단순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편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반면 그만큼 과세자에게는 재량의 폭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과세자에게 재량의 폭이 넓게 인정된다는 것은 결국은 납세자에게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재량권이란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면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후진적인 사회에서 과세자에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경우 납세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 따라서 천태만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단순한 기업회계기준에 의존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산정에 있어서 灰色地帶가 많이 생기게 되고 이는 곧 과세자의 재량권으로 작용하여 납세자에게는 건디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實務的 利害集團의 要求에 偏向

그간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일치논의는 대부분 기업체나 회계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실제 그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이 다소 정치적인 입장에서 주도되어 왔다.²³⁶⁾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로 인하여 기업이 세무조정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가진다는 업계의 요구를 일부 회계단체가 영합하여 지원하고 조세당국에서는 이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세법개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의 개정과정에서 양회계의 일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역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문제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무리한 입법이 되기도 하였다.

라) 實際 資料에 根據하지 않는 租稅立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일치는 최대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무리한 일치로 인하여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장해를 주는 여러 가지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²³⁷⁾ 따라서 이 문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일치하

235) 이에 대하여는 富岡幸雄, 『稅務會計學』, 森山書店, 1978, pp. 164-170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236) 1994년 12월 23일의 개정에서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 일치시킨 법인세법의 개정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단체들이 주장하는 일치요구를 회계단체에서 영합적 자세로 지원하여 세제당국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편과 이를 무리하게 일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역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접근해야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는 단순히 기업계나 회계관계인의 의견조사와 같은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자료에 의한 연구보다는 실제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세무조정사항을 엄정하게 수집분석하여 그 근거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 한 조사에서 1994년 12월 31일 현재 결산법인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외부감사법인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외감법인으로 구분하여 수집 분석한 결과 외부감사를 받는 외감법인과 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법인간에 세무조정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분석

집단 \ 변수	기업이익		과세소득		paired t-test		Wilcoxon순위검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t 값	p 값
외부감사법인	0.0634	0.135	0.0717	0.178	-1.89	0.060	-3.735	0.0000
비외부감사법인	0.0738	0.128	0.0727	0.113	0.22	0.826	6.988	0.0000
총 표 본	0.0684	0.132	0.0722	0.151	-1.19	0.234	-7.661	0.0000

자료: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일치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회계학연구』, 1997, p. 146.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감사법인의 경우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반면 비외부감사법인의 경우는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외부감사법인과 비외부감사법인간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있어서 집단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³⁷⁾

한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의 집단간 차이의 정도를 분석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237) 이에 대하여는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일치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회계학연구, 1997a, pp. 129-162)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238) 이러한 차이가 비외감법인이 세무조정 이전에 결산시부터 세법에 의한 결산을 한 이유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표5-2> 세무조정항목 및 금액 비교

단위: 건, 백만원, %

집단	변수	세 무 조 정 항 목 수		세 무 조 정 금 액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차이율
외부감사법인		13.45	7.28	697	1,581	35.3
비외부감사법인		4.70	2.78	24	51	17.3
총 표 본		9.27	7.10	375	1,189	26.7

* 세무조정금액 = | 기업이익 - 과세소득 | 으로 세무조정의 차이금액임.
 * 자료: 이우택, 상계 논문, p. 147.

상기와 같은 세무조정항목수와 세무조정금액의 집단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3> 세무조정항목수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

단위: 건수

집단	변수	세무조정항목수		K-S Test	
		평 균	표준편차	Z 값	p 값
외부감사법인		13.45	7.28	6.658	0.0000
비외부감사법인		4.70	2.78		

자료: 이우택, 상계 논문, p. 147.

<표5-3>의 세무조정항목수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결과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표5-4> 세무조정금액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

집단	변수	세무조정금액*		t-test	
		평 균	표준편차	t 값	p 값
외부감사법인		0.0157	0.0670	0.73	0.465
비외부감사법인		0.0111	0.0690		

* 세무조정금액 = | 가산항목 - 감산항목 | / 매출액
 * 자료: 이우택, 상계 논문, p. 147.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조정금액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세무조정항목수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표본기업의 세무조정율의 정도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표 5-5> 표본기업의 세무조정율

집단 세무조정율	외 부 감 사 법 인		비외부 감사 법인		합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50%이상	45	18.5	16	7.2	61	13.1
+50% - +40%	10	4.1	4	1.8	14	3.0
+40% - +30%	17	7.0	6	2.7	23	4.9
+30% - +20%	11	4.5	12	5.4	23	4.9
+20% - +10%	26	10.7	35	15.8	61	13.1
+10% - 0%	55	22.6	98	43.9	153	32.9
0% - -10%	27	11.1	33	14.9	60	12.9
-10% - -20%	14	5.8	5	2.2	19	4.1
-20% - -30%	17	7.0	5	2.2	22	4.7
-30% - -40%	12	5.0	7	3.1	19	4.1
-40% - -50%	1	0.4	1	0.4	2	0.4
-50%이상	8	3.3	1	0.4	9	1.9
계	243	100.0	223	100.0	466	100.0

자료: 이우택, 상계 논문, p. 148.

<표5-5>에 보는 바와 같이 표본기업 466개 중 세전순이익의 10% 상당액을 가산 조정한 법인이 외부감사의 경우 22.6%, 비외감의 경우 43.9%, 전체는 32.9%로서 가장 많다. 가장 많은 분포는 가산조정 20%-감산조정10%의 구간으로서 외감법인의 경우 44.4%, 비외감의 경우 74.6%, 전체는 58.9%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²³⁹⁾

23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中島茂幸, 企業會計に對する稅務會計の情報價値-稅務調整から見る企業行動の會計情報性の 検討について-, 『産業經理』, 1993年 7月, pp. 48-60을 참조 요.

<표 5-6> 일본상장기업의 세무조정률 분포상황

세무조정율	법인수	구성비	세무조정율	법인수	구성비
+50%이상	14	1.3	0% - -10%	203	19.6
+50% - +40%	14	1.3	-10% - -20%	69	6.7
+40% - +30%	42	4.1	-20% - -30%	26	2.5
+30% - +20%	92	8.9	-30% - -40%	14	1.3
+20% - +10%	193	18.7	-40% - -50%	10	1.0
+10% - 0%	339	32.8	-50%이상	19	1.8

* 1989년도 상장기업 1,035개를 대상으로 함.

<표5-6>의 1989년도 일본상장기업의 세무조정율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세무조정율 10%가산한 기업이 전체 표본 가운데 32.8%이고, 20%가산조정율-10%감산조정율의 분포가 전체 표본의 71.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실제자료로 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는 외부감사법인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일시적 차이에 있어서 외부감사법인이 비외부감사법인보다 더 유의적이다. 외부감사법인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업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무적·이론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외감법인의 경우에는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가 중요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세무조정의 항목도 4가지에 불과하여 본질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가 심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비외감법인은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흔히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년간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 평균 4가지의 세무조정을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하는 불만은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중소기업의 세무회계에 대한 불만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세법전체에 대한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외부감사를 받는 대법인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세무조정사항도 평균 13건에 해당되어 이러한 문제는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보통 대법인에 상당하고 대법인의 경우에는 전문 稅務會計팀이 상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외감법인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와 다르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법인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리법인의 90% 이상이 外部會計專門人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각 기업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논리는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외부감사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를 일치시키는 便益의 程度와 양회계를 무리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초래되는 逆效果 또는 不利益의 程度를 비교형량하여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다음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마) 稅務會計慣行의 離脫과 企業會計基準의 變更에 따른 混亂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회계가 그 독자적인 이론과 기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까지도 세무회계가 각종의 세법규정과 예규, 통칙 등을 통하여 주도하여 왔다. 반면 기업회계 측면에서는 세무회계처럼 다양한 예규나 통칙 등이 개발되지 못하고 매우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기업회계를 우선 적용하라고 하는 경우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세무회계의 관행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문제도 크게 대두된다. 더욱이 문제의 본질은 세무회계에 관한 문제들을 현재의 기업회계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을 정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있었느냐에 있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條文만 제정되어 있지 실제 그러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론적·기술적인 관행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²⁴⁰⁾

240) 예를 들면 연결재무제표, 건설업회계기준, 합병회계준칙 등 회계기준과 그의 적용 문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표5-7> 法人別 稅務調整 現況

(단위 : 개, %)

연도	구분	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합계	자기	외부	소계	자기	외부	소계	자기	외부
1983	법인수	33,775	18,390	15,385	26,100	11,422	14,678	7,675	6,968	707
	구성비	100	54.4	45.6	100	43.8	56.2	100	90.8	9.2
1984	법인수	37,185	20,323	16,862	28,836	12,800	16,036	8,349	7,523	826
	구성비	100	54.6	45.4	100	44.4	55.6	100	90.1	9.9
1985	법인수	39,406	22,286	17,120	30,885	14,676	16,209	8,521	7,610	911
	구성비	100	56.6	43.4	100	47.5	52.5	100	89.3	10.7
1986	법인수	41,284	23,363	17,921	32,592	15,563	17,029	8,692	7,800	892
	구성비	100	56.6	43.4	100	47.8	52.2	100	89.7	10.3
1987	법인수	44,677	23,814	20,863	36,019	16,170	19,849	8,658	7,344	1,014
	구성비	100	53.3	46.7	100	44.9	55.1	100	88.3	11.7
1988	법인수	48,437	16,772	31,665	39,753	9,278	30,475	8,684	7,494	1,190
	구성비	100	34.6	65.4	100	23.3	76.7	100	86.3	13.7
1989	법인수	54,453	16,051	38,402	45,587	8,461	37,126	8,866	7,590	1,276
	구성비	100	29.5	70.5	100	18.6	81.4	100	85.6	14.4
1990	법인수	63,080	15,541	47,539	54,125	8,018	46,107	8,955	7,523	1,432
	구성비	100	24.6	75.4	100	14.8	85.2	100	84.0	16.0
1991	법인수	73,522	15,354	58,168	64,344	7,700	56,644	9,178	7,654	1,524
	구성비	100	20.9	79.1	100	12.0	88.0	100	83.4	16.6
1992	법인수	85,454	15,665	69,789	76,362	8,129	68,233	9,092	7,536	1,556
	구성비	100	18.3	81.7	100	10.6	89.4	100	82.9	17.1
1993	법인수	96,629	16,636	79,993	87,226	8,877	78,349	9,403	7,759	1,644
	구성비	100	17.2	82.8	100	10.2	89.8	100	82.5	17.5
1994	법인수	103,869	16,652	87,217	94,056	8,706	85,350	9,813	7,946	1,867
	구성비	100	16.0	84.0	100	9.3	90.7	100	81.0	19.0

註)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國稅廳 30年史』, p. 375.

바) 稅法規定の 單純化의 限界

세법의 규정이 어렵고 복잡하므로 이를 단순화하라는 요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세법은 조세의 공평성과 실질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면 결국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과세의 공평성과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자인 국가보다는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요청되는 원칙이다. 국가에서는 누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하던 전체적으로 세무목표만 채우면 그만이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 특히 더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는 세법이 어렵게 되더라도 자기의 소득에 알맞은 공평하고 실질적인 과세가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공평과세와 실질과세를 위하여 필요한 세법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무작정 간단하고 쉽게 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납세자는 자기의 세금을 더 납부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간단하고 쉬운 세법의 규정이나

기준으로 과세자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과세자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져 납세자는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더 커 세법을 단순화함에 따라 얻어지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수가 얼마든지 있다. 결국 세법에서 자세히 규정하여 줌으로써 과세자가 납세자의 실질에 맞지 않는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무시하고 무작정 단순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납세자에 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課稅所得의 算定과 企業會計 適用의 改善 方案

가. 一般的 基本的인 改善 事項

1) 基礎的 概念構造(fundamental conceptual framework)의 開發과 整備

기업회계는 한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기초적 구조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회계의 발전 없이 대규모 자본조달이란 불가능하다. 또한 대규모적인 경영활동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며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을 기업경영에 참가시키는데는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회계기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기업회계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도 기업회계가 수행하는 목적과 그 기능은 과소평가될 수 없이 중요하다.

한편 조세는 국가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 조세의 역사는 기업회계의 역사보다 오래된 것이며 이러한 조세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세무회계는 그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각각 무엇과 대치할 수 없는 고유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규범으로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공통의 부분에 대한 상호 의존관계에 대한 규명은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더욱이 이러한 관계는 이미 외국에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이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연구결과도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각국의 회계환경에 따른 접근으로서 그들의 논의가 반드시 우리나라와 일치될 수 없다.

따라서 이처럼 기업회계나 세무회계 모두 중요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회계규범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상황에 있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들은 실무적 차원 또는 한정된 측면에서 전체적이고 균형있는 접근이 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외국의 많은 논의들을 충분히 섭렵하고 우리나라의 실지 자료를 징구하여 이론과 실무문제를 접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이론과 개념적 개발을 서둘러 이러한 논의들이 본 궤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초적 개념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會計의 社會的 役割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

기업회계는 초기 경영의 위·수탁자간 수탁책임보고회계(stewardship accountability)에서 출발하여 기업경영이 확대되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적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으로 확대되면서 회계는 하나의 社會制度로 변모되었다. 회계가 사회제도로서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회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가 확대된 것이다. 그래서 기업회계는 制度會計라고도 한다. 한편 세무회계 역시 조세의 부과와 징수와 관련한 회계로서 공공성을 가지며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는 制度會計이다. 이처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모두 制度會計로서 제도회계가 가지는 특성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회계는 개별적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용에만 유용성을 둘 수 없는 공적인 입장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회계를 단순한 개별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측면에서만 강조하면 기업회계의 본래의 사회적 기능은 후퇴되고 따라서 세무회계라는 공적인 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괴리되는 측면이 많이 있게 된다.

특히 최근 국제회계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현가회계나 각종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등은 제도회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확실성과 검증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와 관련을 갖는 경우에는 회계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적 의사결정회계에 집중되어 있어 회계연구에 불균형이 심하고 특히 회계의 기본인 기업회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기초 없는 회계가 남발됨으로써 회계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3) 會計環境 및 會計發展 程度의 認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관계에 대한 비교가 비록 세법의 규정양태를 외형적으로 비교하여 그의 차이를 논한다고 하더라도 기업회계의 발전의 정도가 다르다면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별도의 문제로 이어진다. 설령 외국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회계환경이 외국의 그것들과 다르다면 이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가 외국에 비하여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느냐에 대한 판단과 시각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생성발전하고 있는 회계실무와 관행에 대한 실질을 파악할 겨를이 없이 외국의 회계에 의존하여 왔다. 말하자면 속내용은 어떤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없이 외국의 現象的 모습만을 모방함으로써 회계의 출발이 되는 상법상의 계산규정, 기업회계기준, 세법회계 등에 있어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회계기준이 혼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짧은 기간동안 너무나 많은 변혁을 겪었기 때문에 점증적인 발전의 형태가 아닌 혁명적 발전의 패턴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 곳곳에는 국민의

의식과 관행이 고대·중세·현대적인 것이 혼재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융합하여 조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회계의 영역에 있어서도 고대적, 중세적, 현대적인 것이 혼재하고 아직도 기본적인 개념연구와 논리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회계의 본래의 이해조정기능과 정보제공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특히 세법상의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되는 회계의 기능은 이해조정기능으로서 이는 회계의 본래적 기능에 속한다. 회계의 고전적이면서 본래적 기능은 이해조정기능으로서 이해당자자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의 認識과 測定이라는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에 대한 체계들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회계의 출발이 되는 거래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기초들은 미국에서 확립된 이론과 기법을 그대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미국의 회계연구방법을 그대로 모방한 통계학과 계량경제학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1970년대 이후 주로 미국에서 도입된 경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방법론이 도입되어 회계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의 현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이 무비판적으로 試行되고 있다.²⁴¹⁾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들만의 고유성으로 인하여 미국의 그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회계이론이나 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회계는 회계의 기본적 기능인 인식과 측정의 문제를 정립하지 못하여 회계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²⁴²⁾

거래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것은 회계에 있어서 기본이며 이는 회계가 어떻게 변하든 건너 뛰거나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 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회계체계라면 그 회계제도는 회계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회계는 아직 회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기본이 충분히 갖추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세법상 과세표준의 산정기초로 무조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나라의 會計實質에 맞는 論議

회계는 역사적 산물이고 기업경영을 규제하는 필수적 도구이다. 이러한 회계는 時·所에 따라 달리 존재하고 전개되므로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회계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

241) 金石雄, 『會計學의 批判的 方法論』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pp. 2-3.

242) 그 단적인 예로서 합병회계준칙 하나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합병과 관련된 제반 개념에 대한 정립과 실무에 대한 확인검증이 없이 조문만 나열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합병을 수행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막연한 상황이다.(이우택, 1993, 合併本質論과 合併會計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稅務學研究』(제4호): 131-149; 1996a, 우리나라 合併會計의 混迷와 解決方案, 『韓國租稅研究』(제 11권): 189-232. 참조 요.)

요하다. 단순히 미국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제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논의하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의 실질을 파악하고 회계규범으로서 또는 세무회계의 규범으로서 어느 정도의 발전상태에 있고 어느 정도의 기능수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이 실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될려면 무엇보다 기업회계가 회계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실행하여 그 기준성 역할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의 석·박사 논문과 회계학자들의 연구는 개별적 의사결정회계 또는 행동회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 회계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업회계의 기능에 대하여는 연구가 매우 부진하다. 기업회계의 기능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전제되어야 이를 토대로 개별적 의사결정회계 또는 행동회계가 전개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회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응용회계측면인 의사결정회계나 행동회계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회계실질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있어 실제 대부분의 회계연구 수요자들(audiences)은 이를 외면함으로써 유용성(usefulness)이 없어 대부분 사장되는 사회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세무회계 역시 세법의 규정과 그의 입법과정 및 입법절차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입법기술 또는 입법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세무회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실제 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稅務調整事項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그 실태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추측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이 막연히 일반적인 개념적 수준에서 또는 근거가 희박한 이해단체들의 정치적 주장에 양회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맡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의 회계실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반 이론과 개념적 검증을 거쳐 우리나라의 실체에 맞는 연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개정 방안

1) 課稅所得 算定에 따른 企業會計 適用 規定의 改正

1994년 12월 22일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와 관련된 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세법 제17조에서는 손익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 企業會計 基準性 規定의 改正

이미 각국의 과세소득 산정에 따른 기업회계 적용과 세법의 규정 방식에 대한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회계를 적용하는 형태는 국가마다 똑 같지 않다. 미국은 회계관행에 기초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GAAP에 「따라」(under) 과세소득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실정법 국가로서 상법상의 회계규정인 「정규부기의 원칙」(GoB)에 「따르도록」(nach)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세법에서 「기업회계원칙」에 「따라」(從つて) 과세소득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기준성에 관한 세법규정은 명백하게 하지 않고 매우 애매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세법상 회계규정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이때의 「의하다」라는 의미가 법자체로 보느냐 아니면 축소해석하여 참작한다는 것인지 문제이다.²⁴³⁾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 기업회계를 「따르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따르다는 것은 「남이 하는 일을 본떠서 하다」, 「남의 뒤를 좇다」라는 의미로²⁴⁴⁾ 이것은 일단 선행자의 뒤를 따라 가는 것이며 따르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준을 두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한다」라는 의미는 「證據대로 하다」, 「의지하고 憑藉하다」²⁴⁵⁾라는 뜻으로 이는 그 것 자체로 100%의 증거력을 갖기 때문에 예외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봉쇄되어 있는 셈이다. 「따르다」고 할 때에는 재량의 여지가 전제되지만 「의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하다」는 규정을 벗어나는 행위는 곧바로 위법성이 추정될 수 있다.

결국 외국의 경우에는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존중하고 따르며 그것의 적합성 여부는 세법 독자적인 판단에 맞기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은 어떤 회계처리가 일단 기업회계기준에 해당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세법 규정의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기업회계를 직접적인 실정세법규정 차원의 법적효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세법 고유의 목적 즉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주의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은 외국의 예처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따르다」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나) 例外事項의 規定方式의 改正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한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기업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세법에서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세법 고유의 계산

243) 吳守根, “會計規範體系論”, 『企業法の 行方』, 박영사, 1991, pp. 260-277.

244)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74, p. 824.

245) 이희승, 『전계서』, p. 2281.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 ① GAAP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② 그러한 회계처리가 과세소득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GAAP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 미국보다 더 광범위하게 세법에서 GoB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세법의 독자적인 계산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업회계의 존중이라는 범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에서 자유롭게 세무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別段의 규정」을 두고 기업회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세법에서 6가지를 열거하고 여기에 열거하지 않는 모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는 소위 네가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열거한 극히 한정된 범위 이외는 무조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네가티브시스템은 외국의 「例外適用」규정에 대한 입법 방식과 전혀 다르다.

기업회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6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기업회계를 준용해야 하는 네가티브시스템 방식에 의하면 동 열거된 사항 이외에는 언제든지 기업회계에 따라야 하고 만일 기업회계가 변동되면 자동으로 세법의 적용도 변동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가 변동되면 이에 따라 세법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변동되거나 아니면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별도로 세법에서 일일이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곧 회계기준 설정기관이 조세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²⁴⁶⁾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준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당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의 예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입법방식은 분명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검토한 바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과는 다른 입법방식과 비교하면 곧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예외적 규정은 6가지로 한정하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세무회계의 독자성을 유보하고 기업회계의 변동에 관계없이 세무회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기업회계의 존중규정을 둬으로써 충분하고 계속하여 불필요하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구태여 세법에서 세무회계의 주체적 요건을 기업회계에 떠맡기면서까지 그로 인한 역작용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

다) 稅法規定の 主體性的의 認定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하면 미국이나 일본, 독일 그리고 영국 모두 세법에서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기업회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세법의 입장에서 항상 「따르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원칙에 맞게 세법에서 主體性

246) 이에 대한 문제점은 William L. Raby and Robert F. Richter, "Conformity of Tax and Financial Account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75), pp. 42~43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회계처리규정을 둘 수 있고 이러한 규정은 기업회계와는 별개로 유효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은 기업회계에 「의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6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처리가 기업회계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세법규정도 필요시 기업회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세무회계의 주체성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 예외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기업회계가 변경되면 그 즉시로 변경된 기업회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방지하려면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이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세법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가 변경되면 이에 따라 세법이 좌우되어 해당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²⁴⁷⁾ 세무회계의 주체성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세법의 개정이 없이 조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조세법률주의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또한 세법의 개정이 없이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조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세무회계처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여 과세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는 곧 일 국의 과세권위와 세법의 주체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된 세법규정의 주체성은 기업회계의 주체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 오히려 세법의 규정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기업회계보다 더욱 예민하고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세법규정의 주체성은 기업회계의 주체성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은 세법적 고려와는 상관없이 변경되는데도 세법이 이에 좌우되어 기업회계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거나 해석과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은 戲畫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1996. 12. 27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여 외화환산손실을 기간비용에서 이연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을 세법에서 받아들여 부랴부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외화자산·부채의 평가)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떤 변경이 있을 경우 세법규정이 따라다니면서 개정되어야 하는 한심스런 입법체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 企業會計基準과 會計慣行의 區分 使用

본래 기업회계와 기업회계기준, 그리고 회계관행은 그의 의미와 범위가 다른 것이다. 기업회계란 기업의 「자주적 판단에 기초한 적정한 회계처리」²⁴⁸⁾로서 당해 기업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선택된 방법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경영사정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247) 1996년 12월 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가 그 예이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248) 『稅法と企業會計との調整に關する意見書』(企業會計審議會中間報告)(1966年 10月 17日) 前文

로 인정된 회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회계는 특히 계속성을 중요시하며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를 객관적이고 비교가능하게 꾸며진 규범체계로서 기업회계와 엄격하게 동의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제정법 국가에서는 관행은 제정법의 하위개념으로 보며 관행 그 자체를 법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규정이다.²⁴⁹⁾

기업회계 내에서 기업회계기준은 얼마든지 변형되고 개폐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때 회계관행은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관행이 성숙하여 회계기준이 된다고 할 경우 慣習要約說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회계기준은 반드시 관습과 관련되는 것도 아닌 경우가 있고 또 관습은 자주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기준과 관습을 동일시하는 문제가 있다.²⁵⁰⁾ 관행은 법규 또는 기준이 되어 경우 아직 기업회계기준화되지 않은 관행은 기업회계기준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가적인 보조를 할 수 있는 하위개념으로 남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을 묶어서 그 범위를 총리령에서 열거함으로써 기업회계와 기업회계기준 그리고 회계관행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를 총리령에서 ①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②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④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⑤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등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좀더 이론적 연구와 현실의 우리나라의 회계현황을 검토하고 규정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보면 관행이란 기업회계기준의 보조적 또는 전단계적인 적용의 여지가 봉쇄되어 버렸다. 따라서 기업회계 또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에 대하여 세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탄력성을 부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249) 오수근, “전계논문”, pp. 266-269.

250) 忠佐 市, 『決算利益と課税所得』, 森山書店. 1973. pp. 229-234.

VI. 要約 및 結論

본래 기업회계와 세법규정과의 관계는 이론적 문제와 실무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좀처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아직도 확연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분분한 논의만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곧 단순한 논리나 한정된 접근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잡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 실무적인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발전적인 대안들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당연히 밟았어야 했던 이론적 문제들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고 외국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에 대하여 아직 초보적인 입장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 이제는 논의가 종결되고 있는 문제까지도 제대로 검색하지 않은 채 상식적 실무적인 수준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기업회계의 본질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회계란 용어 그 자체는 단순하고 명확하여 공통의 개념으로 언 듯 전달되는 용어일지 모르나 그 기업회계가 수행하는 기능의 정도는 時·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를 획일적 단일의 개념으로 보고 논의하는 경우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기 쉽다. 과세소득의 산정에 관한 세법의 계산규정 역시 세법 자체의 체계나 규정방법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세법규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이 단순히 외국의 이론이나 기법을 획일적 공통적인 것으로 전제하여 접근하는 것도 역시 문제의 본질을 오도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세법의 계산규정으로 기업회계를 얼마나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논제를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무엇보다 기업회계가 과연 세법상의 계산체계로서 얼마나 의존할 수 있겠는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본래의 기능과 현재의 상황들을 먼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외국의 예와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회계를 체계적·연혁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의 발전정도와 현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본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었고 그것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외국의 세법규정들과 비교검토하는 과정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진행하였다.

기업회계를 세법상 계산규정으로 삼는 경우 제기되는 기업회계의 계산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이론과 기법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은 우선 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기업회계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가 크게 미흡하고 이를 제도화한 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역시 외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의 우리나라의 회계발전과정과 회계연구들을 외국의 예와 비교하면서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이다. 동시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기업회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적어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회계의 발전이 크게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기업회계 고유의 영역에서 보면 현재의 기업회계의 미발전이 기업회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이 일단 세법의 계산체계에 들어와 대신 세법상의 계산기능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기업회계가 기업회계의 세계에서 사용되는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稅務會計 領域에 들어오면 세무회계의 영역에서 요구하는 조건 예를 들면 조세법률주의라는 대전제와 공평과세주의원칙, 실질과세주의 원칙,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企業會計 領域에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회계를 적용하는데 따른 세법의 규정은 실제 조세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으로 조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세요건이 된다. 그래서 그 규정 내용과 규정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다기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법의 계산규정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려면 외국의 세법체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세법규정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은 본질적으로 입법방식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은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역사적 발전단계와 현재의 기능수행에 관한 검증이 없이 무책임하게 기업회계에 의존시키는 안이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세법의 독자적인 계산원리로서의 세무회계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기업회계에서도 충분히 양해하고 있는 사항까지도 우리나라의 세법은 이를 포기하고 기업회계에 완전히 의존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업회계를 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정기준으로 삼는데 따른 현재의 세법 규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정책적 건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회계를 세법상의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체계로 삼으려면 무엇보다 기업회계 본래의 기능수행과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발전정도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기업회계기준이 기업회계의 영역에서 만족도가 충분하다고 하여 세무회계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만족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미 기업회계의 영역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전혀 전혀 다른 기능을 추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세법은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업회계에 관한 규정이 세법의 고유 원칙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입법되어 있다. 조세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입법이 되고 있고 이는 외국의 입법예와 비교할 때 바로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 제17조에서 기업회계에 「의한다」는 조항을 「기업회계에 따른다」라고 개정하고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사항 이외는 기업회계를 「우선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 외 「기업회계」와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그리고 「회계관행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처리」 등의 개념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하고 세법규정들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기업회계기준이 상당한 수준의 발전단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의 기업회계의 발

전 과정과 현황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회계연구는 매우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세법에서 기업회계에 대한 의존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필요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도 그에 의하도록 한다면 이는 조세당국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에서는 기업회계의 발전을 위하여 학계, 실무계, 정책 당국이 협력하여 많은 이론적 연구와 제도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한 무수한 발표문과 연구실적물은 공刊된 형태로 後學들이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단순히 회계기준의 조문은 있으나 그의 이론적 제도적 배경, 그리고 실무적 적용상의 문제점과 연구의견에 대한 권위적 견해가 거의 공표되지 않고 무시되거나 사장되어 있다. 학계, 회계전문단체, 실무계, 그리고 정책당국은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여 왔는지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南彦,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調整에 관한 小考”, 『上場協』 春季號, 제28號,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3, pp. 102-115.
- 姜仁崖, 『實學派의 租稅思想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고승희, “우리나라 會計原則의 展開過程과 理論構造에 관한 研究”, 『經營學研究』 第 17 卷 第2號, 1988. 5, pp. 21-62.
- 具種泰, 『複式簿記의 生成史에 관한 研究』-이태리식 기장법과 송도치부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權泰殷 譯, 『比較會計論-아시아諸國의 경우-』, 法文社, 1990.
- 김광수, 이성봉, 『독일세법론』,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7.
- 金光潤, “法人課稅所得의 稅務調整方案에 관한 實證的 研究”, 한국조세연구, 제 8권 1992, pp. 336-378.
- 金石雄, 「日本式 批判會計學에 관한 研究」, 『東義大學校 産經論集』 第13輯, pp. 201-248.
- , 『會計學의 批判的 方法論』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金廷坤, “한국 近代會計의 發生史的 研究” 『會計』, 第19호, 한국공인회계사회, 1983, pp. 52-67.
- 김정곤, “韓國原價計算制度의 發生史的 研究”, 『會計』, 第2號, 한국공인회계사, pp. 30-39.
- 김정길, 「歐美의 方法論的 思考의 限界」, 『경기행정논집』 (제8집), pp. 37-52.
- 金亨柱, “會計制度의 改善方案”, 『上場協』, 1991, 秋季號, 한국상장회사협의회, pp. 4-6.
- 대한상공회의소,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合理的 調整에 관한 研究』, 대한상공회의소, 1993.
-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1996.
- 신준용, 『자본시장국제화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3.
- 申瓚秀, “企業會計와 稅法의 差異解消를 위한 提言”, 『上場協』 春季號, 제29號,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 pp. 124-155.
- 吳守根, “會計規範體系論”, 『企業法の 行方』, 박영사, 1991.
- 유시권, 이노창, 유재권, 오엽록,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 尹桂燮,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調整”, 『한국조세연구』 제3권, 1987, pp. 359-383.
- 尹桂燮,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調整에 관한 研究-課稅所得의 侵蝕現象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 제1권, 1985, pp. 363-382.
- 尹桂燮·全春玉, 『企業內容公示制度의 效率化 方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0.
- 이대선·장지인·나인철·이창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설정과정의 발전방향”, 『회계학연구』, 한국회계학회, 1994, 제 18호, pp. 378-431.
- 李成柱, “稅法과의 調和를 위한 企業會計基準調整方案”, 『上場協』 秋季號, 제30號, 한국

- 상장회사협의회, 1994, pp. 89-103.
- 李成圭, “비관적 회계학 연구에 대한 고찰”, 『會計學論叢』 第5號, 1996, pp. 181-236.
-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일치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회계학연구』, 한국회계학회, 1997a, pp. 129-162.
- _____,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회계저널』, 1997, 한국회계학회, 1997b, pp. 199-233.
- _____, “우리나라 合併會計의 混迷와 解決方案”, 『韓國租稅研究』, 제 11권, 1996, pp. 190-232
- 이중대·황석하, 『회계원리』, 1996.
- 이철송, 『商法總則·商行為』, 박영사, 1996.
- 李恒寧, 『法哲學概論』, 박영사, 1994.
- 李炯珪, 『獨逸會社法』, 한국조세연구소, 1996.
-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74.
- 林采柱,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相互關係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장영,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7.
- 재무부, 『한국세제사』, 상권, 1979.
- 財政經濟院, 『94간추린 改正稅法』, 1995.
- 정기숙, “現代社會에 있어서 會計役割의 增大”, 『經營學研究』, 제 24권 2호, 1995, pp. 1-34.
- 정희철, 『상법학(상)』, 박영사, 1996.
- 趙益淳, 『新會計監查論』, 1983.
- 曹佐鎬, 『世界文化史』, 박영사, 1994.
- 蔡奎學, 崔昌淳, 『聯結會計制度의 定着을 위한 改善方案 研究』,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2.
- 최진배. 『韓國의 附加價值稅』, 도서출판 삼문사, 1984.
- 韓國公認會計士會, 『韓國公認會計士會 三十年史』, 1992.
- AAA,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able Income”, Supplementary Statements No. 4, August 1952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52, pp. 427~430).
- _____, “An Evaluation of External Reporting Practices”, Supplement to Volume XLIV of the *Accounting Review*.
- _____, Accounting for Land, Buildings, and Edueipment, Supplementary Statement No.1, *Accounting Review*, July 1964, pp. 693-699.
- _____, A Discussion of Various Approaches to Inventory Measurement, Supplementary Statement No.2, *Accounting Review*, July 1964, pp. 700-714.
- _____,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

- _____, Report of the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General, *The Accounting Review*, Apr. 1964, pp. 425-431.
- _____,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6,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 AIA, "Divergences Between Rules of Tax Accounting an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December 1953, *The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1954, pp. 93-101.
- AICPA, APB Opinion No.11, 1967.
- Arnett, H. E., Taxable Income vs Financial Accounting; How Much Uniformity Can We Stand?,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9, p. 483-494.
- Birnberg, Jacob G., "The Role of Accounting in Financial Disclosure",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5, No. 1, pp. 71-80.
- Brown, Richard, *A History of Accounting and Accountants*, Frank Cass & Co., Ltd., 1968.
- Zimmerman, Vernon. K., *British Backgrounds of American Accountancy*, 1954.
- Cannon, Arthur M., "Tax Pressures on Accounting Principles and on Accountants' Independence",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52, pp. 419-428.
- Chang, Young Ha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Accounting System of Five Countri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UMI dissertation Information Service, 1989, pp. 24-25.
- Chaterfield, Michal,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1985.
- Chua, Wai-Fong, and Pieter Degeling, "Interrogating an Accounting-Based Intervention on Three Axes: Instrumental, Moral and Aesthetic",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18, No. 4, 1993. pp. 291-318.
- Davidson, Sidney, "Accelerated Depreciation and the Allocation of Income Taxes", *The Accounting Review*, Apr., 1958 pp. 173-80.
- Delaney, Patrick R., James R. Adler, Barry J. Epstein, and Michael F. Foran, *GAAP-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John Wiley & Sons, 1985.
- Dillard, Jesse F., "Accounting as a Critical Social Science,"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Vol. 4, No. 1. 1991, pp. 8-28.
- Duignon, James C., *Report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tion of United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in Korea*, 1975.
- Edwards, John Richard, "Companies, Corporations and Accounting Change, 1835-1933: A Comparative Study",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 23, No. 89, 1992, pp. 59-73.
- Green, Su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Complexity, Dynamism and Divergence", *British Tax Review*, No. 5 1995, pp. 446-447
- Haller, Axel, "The Relationship of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in Germany: A Major Reason for Accounting Disharmony in Europ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1992, 27, pp. 310-323.

- Harvey, Lee, *Critical Social Research*, London: Unwin Hyman Ltd., 1990.
- Held, 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80.
- Hendriksen, Eldon S., *Accounting Theory*, rev. ed.,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1970.
- Holzer, H. P.,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In West-Germany," *The Accounting Review*, vol. 34, July 1959, pp. 399-423.
- Hongren, C. T., Accounting Principles : Private or Public Sector ?, *Journal of Accountancy*, May 1972, P. 39.
- Jones, R. H., Accounting in English Local Government from the Middle Ages to c.1835, in R. H. Parker and B. S. Yamey ed., *Accounting History- Some British Contributions-*, Clarendon Press(Oxford), 1994, pp. 376-403.
- Junichi Chiba, Japanese Experience of Corporate Accounting Control C. 1939-1945, *Accounting, Business and Financial History*, Vol. 6, No. 2, 1996, pp. 163-182.
- KPMG Tax Advisers, *Tax Statutes and Statutory Instruments, 1994-95*, 1994 CCH Editions Limited.
- Lasser, J. K. and Peloubet, M. E., Tax Accounting V. Commercial Account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 April, 1949, p. 281.
- Lent, George E.,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able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2. pp. 479-494.
- Leslie, M., The Tax Accounting v.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ocedure, *The Journal of Accountancy*, February, 1951, p. 221.
- Ligby, Paul H., *Conceptual Foundations of Business Research*, John Wiley & Sons, New York, 1965.
- Littleton, A. C., "The Antecedents of Double Entry", *The Accounting Review*, Vo. II, June, 1927, p. 141.
- Littleton, A.C., *Accounting Evolution to 1990*(New York: American Institute Publishing Company 1933.
- Maloney, David M., and Robert H. Sanborn, "Interactions Between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Caused by the Tax Reform Act of 1986", *Accounting Horizons*/December 1988, pp. 21-28.
- Moonitz, M., *Obtaining Agreement on Standards in the Accounting Profession, AAA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No. 8*, 1974.
- Most, Kenneth S., *International Conflict of Accounting Standards*, The Canadian Certified General Accountants' Research Foundation, August 1984.
- Neebes, Donald L. Dan M. Guy and O. Ray Whittington, "Illegal Acts: What are the auditor's Responsibilities?",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1991, pp. 82-93.
- Pagan, Jill C., "Measurement of Commercial Profit for Tax Purposes", *British*

- Tax Review*, pp. 75-87.
- Power, Michael and Richard Laughlin, "Harbermas, Law and Accounting",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21, No. 5, 1996, pp. 441-465.
- Previts, G. J. and Merino, B. D. *A History of Accounting in America*, John Wiley & Sons, Inc., 1979.
- Raby, William L. and Robert F. Richter, "Conformity of Tax and Financial Account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75, pp. 42-48.
- Sanders, Whitney B., "Tax Accounting vs. Management Accounting," *Miami Law Quaterly*, 1957, p. 239.
- Savoie, Leonard M., "The Objectives of Corporate Financial Accounting- The Firm's View, in James Don Edwards and Homer A. Black, et., *The Modern Accountant's Handbook*, Don Jones-Irwin, 1976.
- Seidler, Lee J., and D. R. Camichael, ed, "*Accountants Handbook*", 6th edition volume 2, Ronald Press, 1981.
- Sidney, L. Simon, "Accounting Conventions in the Courts", *Accounting and the Law*, New Jersey: Gutgers-State University, 1965.
- Storey, R. K., "Accounting Principles: AAA and AICPA", *Journal of Accountancy*, June 1964, pp. 47-55.
- Tait, Alan A., *A Report on the Possible Korean Value Added Tax*, " 1972.
- Tait, Alan A. *Reprt on the Proposed Korean Value Added Tax with Retail Price Index and on the Household Expenditure*, 1976.
- Townsend, Panela G., "Tax Accounting in an Era of Tax Reform", *Management Accounting*, March 1987, pp. 26-31.
- Zeff, Stephen A., *Forging Accounting Principles in Five Countries: A History and an Analysis of Trends*, Stipes Publishing Comapany, 1971.
- 日本會計研究學會, 「企業會計と課税所得の差異及び調整について」, (日本會計研究學會 1964-1965年度および1965-1966年度 税務會計特別委員會)
- 日本企業會計審議會, 『税法と企業會計との 調整に関する意見書』, 1966.
- 廣瀬義州, "「企業會計原則」の見直しに伴う課題", 『商事法務』, No. 1446, 1997, 1. 25. pp. 2-8.
- 大城建夫, "規範的 税務會計論の課題", 『産業經理』, 50 (4), '91. 1, pp. 110-111.
- 大雄令純, 『比較會計論』, 白桃書房, 1985, 권태은 역, 법문사, 1990.
- 嶋村剛雄, 『會計制度史料譯解』, 白桃書房, 1985.
- 木原 孜, "税務會計 總論(-)-税務會計の誕生とその發達-" 『福岡大學商學論叢』, 37(3) 1992, pp. 285-330.
- 武田隆二, 『法人税法 精說』, 森山書店, 1996.
- 武田昌輔, 「税制」 『會計ジャーナル』 第12卷 第2 號(1980.1, 臨時増刊「戦後會計制度史」), p. 28.
- 番場嘉一郎, "税法における企業の自主的經理の容認-税務と企業會計との調整に関する新意見書の解説-", 『企業會計』, 第18卷 第11號 (1966年11月號) p. 109.

- 富岡幸雄, 『税務會計學』, 森山書店, 1978.
- 小森瞭一 訳 『アメリカにおける 會計原則發達史』, 同文館, 1979.
- 小澤康人, 佐佐木重人 共譯, 『近代アメリカ會計の發達史 -イギリスの 影響力を中心に
-』, 同文館, 1993.
- 松尾憲橘, 鈴木義夫 共譯, (R. Borkowsky 著) 『ドイツ會計學說史』, 森山書店, 1981.
- 田中 弘, 『イギリスの會計制度-わが國會計制度との比較検討-』, 中央經濟社, 1996.
- 井上康南, 『西ドイツ法人税會計論』, 白桃書房, 1988.
- 井上久彌, 「企業課税原理と會計基準の交錯」, 『企業會計』, '90 vol. 42 No. 5, pp. 14-25.
- 齊藤明, 『シュトイエルピランツの研究』 税務經理協會, 1983.
- 中島茂幸, 「企業會計に對する税務會計の情報價値-税務調整から見る企業行動の會計情報
性の 検討について-」, 『産業經理』, 1993年 7月, pp. 48-60.
- 中瀬雄通, “連結財務諸表における税効果”, 『企業會計』, 1976, p. 59.
- 忠佐 市, 『決算利益と課税所得』, 森山書店. 1973.
- 黒澤清, “企業會計制度の發展と企業會計原則の役割”, 『企業會計』 第30卷 第12號,
1978.11, p.11.
- _____, 『日本會計制度發達史』, 財經詳報社, 1990.

<국문 요약>

課稅所得 算定과 企業會計의 適用에 관한 研究

기업회계가 아무리 잘 발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계정보의 比較可能性, 多樣性, 彈力性을 위하여 企業會計基準은 대략적인 것만 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족하거나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는 會計監査者의 專門的 判斷 즉 裁量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회계규정에 대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회계규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회계가 과세표준의 산정이라는 법적 과세요건을 대신하게 되면 기업회계는 租稅法律主義 原則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업회계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의 영역에 들어오면 회계규범으로서의 完全性에 있어서 必要·充分條件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을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곧 租稅法律主義 原則에 반하고 또한 公評課稅主義 原則에도 반하게 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공평과세주의 원칙은 租稅原則으로 매우 긴요하므로 이것이 훼손된다면 租稅體系 그 자체가 무너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회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의 기능이 세무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회계규범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는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가 외국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기업회계를 세무회계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세무회계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세무회계에 관한 租稅立法 方式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세법은 외국에 비하여 기업회계에 더욱 강한 依存關係로 규정되어 있는다는데 있다. 본래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 의존시키는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외국에서는 그 의존관계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과세주체의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낙후된 기업회계에 대하여 외국보다 더욱 강한 의존방법으로 입법화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공평과세 원칙이 심하게 훼손될 상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법은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업회계에 관한 규정이 세법의 固有 原則과 獨自性을 무시하고 입법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현행 법인세법 제17조에서 기업회계에 「의한다」는 조항을 「기업회계에 따른다」라고 개정하고 네거티브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의 회계용어 예를 들면 「企業會計」, 「企業會計基準」, 「會計慣行」 등의 개념이 혼동

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기업회계기준이 상당한 수준의 발전단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세법에서 기업회계에 대한 의존도를 조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회계는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필요·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정책 당국은 명확한 검증을 선행시키고 기업회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Study on the Application of Business Accounting for Computing Taxable Base

Rhee, Woo Taik

It is inevitable to set the standards of business accounting loosely for the comparability, various usefulness, flexi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even in the countries where the business accounting are well developed. However tax accounting must be well equipped to the extent satisfying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to compute the amount of taxes, because taxes are related to the rights of property for taxpayers. Thus the business accounting is being applied with some limited areas and with independence of tax codes from the business accounting, even if they are well developed. If statutory tax codes are totally dependent on the business accounting in calculating taxable income regardless of the imperfectness of business accounting, as described above, it will impai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Most countries have the tax codes independent of the business accounting and with some cushions to avoid the conflicts resulting from the non-conformity between the business and tax accounting. Thus every country keeps the tax codes with the exceptional tax clauses against the business accounting.

In short, tax accounting can be variously augmented because of the status of business accounting and the way of codifying tax clauses related with business accounting.

The business accounting are not developed necessarily and sufficiently in Korea i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degree of development with the key countries. Furthermore, tax codes related to calculating taxable income in Korea are rigidly dependent on the business accounting without independence of taxable authority. Thus the current tax codes are impairing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comparing with key n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forementioned reasoning, this study recommends to revise the clause of Corporate tax law, Sec. 17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term "by the business accounting" must be replaced by the term "under the business accounting" as in the examples of another countries.

Second, the way of "Negative system" must be repelled from the code, which is totally mis-codified and appears in those of the key nations'.